



HOMO MIGRANS

Vol.14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16

MAY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14 (May 2016)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김용우(교원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용일(대구교대)
학술이사 김유정(한국외대)
권윤경(서울여대)
나혜심(성균관대)
마은지(송실대)
재정이사 문종현(한양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오영인(성균관대)
편집위원 고유경(원광대)
김정욱(인천대)
신동규(창원대)
양재혁(성균관대)
이경일(경성대)
이선희(충북대)
이찬행(성균관대)
정용숙(대구대)
홍용진(고려대)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

회비 10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4호(2016년 5월)

발행일 2016년 5월 31일

지은이 이주사학회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16년 5월

ISSN: 2093-3061

<특집: 이주와 여성>

이주와 여성의 깨어나기	나혜심	05
프랑스 기업 내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평등 실태	최향란	35
광기와 통제: 20세기 초 미국의 정신이상 이민자 여성 추방 사례	신지혜	56

<일반논문>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권은혜	82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허부문	103

<서평>

『8시간 vs 6시간-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김용현	146
에번 오스노스, 『야망의 시대-새로운 중국의 부,진실,믿음』	박지혜	152

<연구회 회보>		157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60
<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163
<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167

이주사학회

Homo Migrant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May 2016
ISSN: 2093-3061

<Special: Migration and women>

Migration and Getting enlightened of immigrant women	Hye-Sim Na	05
Employment Inequality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the French enterprises	CHOI Hyang-Lan	35
Madness and Control: Deportation of Insane Immigrant Women from the U.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Shin Ji-Hye	56

<Article>

Between the Formation of Illegal Immigration and Legalization in Modern America: Focusing on the Policies of Mexican Immigration since 1920c	Kwon Eunhye	82
The Themes of Emigration and Dispersion in Korean Popular Songs: the beginnings~1980s	Heo Bu Moon	103

<Book Reviews>

Hunnicut, Benjamin Kline, Kellogg's Six-hour day	Kim Yong-hyun	146
Evab Osnos, Age of Ambition: Chasing fortune, truth and faith in the new China	Park Ji Hye	152

<Bulletin>	157
<Ethic Rules>	160
<Contribution Rules>	163
<Editing Rules>	167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특집 ■

이주와 여성의 깨어나기

나혜심

I. 머리말

오늘날 이주 현상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 중 하나로 “이주의 여성화”가 있다. 이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가 일상화 되는 상황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을 요약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주방식의 변화이다. 인류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는,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향한 가족 단위의 이민과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가족은 본국에 남겨두고 단독으로 노동력 제공을 위하여 국경을 넘는 노동이주가 진행되었다. 초기에 주로 이주 주체는 남성이었다. 대개 가장이었던 이들이 이주노동자 고용국의 기업과 단기적인 노동계약을 맺고 이주를 했고 고국에 있는 가족은 이주자가 송금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용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이주자들은 가족을 두고 혼자서 이주를 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초청이 가능해졌다. 초청된 가족 중에서 여성들은 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청소 등의 허드렛일에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고용되었으며 이런 종류의 노동력 역시 이주유입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곤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이주의 주체 중 다수는 남성노동자였다. 업종에 따라서는 여성이 이주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대략 1980년대에 이

르면 이 상황은 변화해 여성들이 이주의 주체가 되는 이주시기가 되는데 이런 전환적인 현상을 이주의 여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이주자 수는 이주자 중 과반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주로 아시아의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¹⁾

그러나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을 만들게 하는 이주와 관련된 또 하나의 현상이 있다. 주로 관습적으로 ‘여성이 전담했던 종류의 일을 하는 직업군’에 이주노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육아나 가사노동, 양로와 요양 분야 등의 서비스 일자리가 서구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대신 이런 육체적 서비스 업종에 대한 국내 구직자의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분야에 일손이 부족해졌다. 그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 여성들이 채우면서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이주의 여성화의 다른 부분이다. 고국에는 이주한 여성노동자를 제외한 가족이 남아있고 그들 사이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점은 남성 중심의 이주에서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의 초청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원거리에서 유지되는 가족의 삶은 지속되어진다.²⁾

외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다른 인종출신으로서 이주자 일반이 겪는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차별적이기 일쑤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차별은 다층적으로 오곤 한다. 이주한 여성의 인종적 특징과 그들이 여성이라는 특징, 그리고 대개 낮은 수준의 대우가 제공되는 일자리에 유입되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인종적, 젠더적, 계급적 차별의 양상은 중복되어 이 여성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추상되며 실제로 이런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 속에서 차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주노동이 주로 빈곤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서구 국가로, 글로벌한 남부 사이에서 북쪽으로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 안에는 역사적으로 제국과 식민, 서구우월과 그 상대

1) 스리랑카의 경우 2001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 중에 67.5%가 여성이며 2003년 필리핀 통계에 의하면 이 나라의 경우 73%가 여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2(4) (2006), 132쪽

2) 이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130쪽.

영역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편견들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경험은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기에다 여성이주자의 경우, 젠더적 차별은 그들이 여성노동자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종사하는 업종이 ‘여성들의 전업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더 차별의 대상이 된다. 1980년대 이후 ‘이주의 여성화’ 현상 증가 속에서 세계의 연구자들의 시선은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쏠리고 있고 전근대적인 사회계층인 ‘하인’으로 전락하는 이들의 실태가 많은 사회과학, 정치학, 인구학, 그리고 여성학과 연계된 주변학문분과에서 쏟아지고 있다.³⁾ 그들의 경험 이외에도 이주국에서의 그들이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⁴⁾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동시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입과 함께 이들과 연관된 교육 문제, 가족관계 문제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주에서 여성의 문제는 이주와 관련된 논의에서 단연 월등한 중심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정치학 등은 물론이고 여성학적 관심과 결합된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유입된 이주자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배출한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한인 여성들만의 단독 이주로는 최초로 할 만한 20세기 초 미국으로의 사진 신부에서부터 유학생들, 그리고 역사적 관계 속에서 중국, 일본, 구소련, 미국 등지로 이주한 여성 뿐만 아니라 독일로 갔던 간호업종의 이주여성 들에 대한 연구까지 이주연구에서 여성의 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 확대와 지구적 차원의 업종별 분업화 현상 속에서 특히 여성적 노동으로 규정되어온 돌봄 분야의 노동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와 여성의 문제는 더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3) 하인의 표현은 세계의 모든 하인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필리핀 여성이주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서술한 파레나스 사센의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에서 상징적으로 가져왔다.

4) 이에 대해서는 Beverly M. Weber, “Beyond the culture Trap: Immigrant women in Germany, Planet-Talk, and a politics of Listening”, *Women in German Yearbook* 21 (2005).

이주와 관련해서 주로 이주자의 이주와 정착이 이주민 유입국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까지 중심을 차지했다면 역으로 이주여성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시점이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권 여성이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주의 증가 속에서 주로 발생하는 계급적, 인종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의 현상이 이들 돌봄 노동 여성노동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매우 흥미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주하는 여성이주현상은 그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주의 진척과 젠더적 문제의식의 연관성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증한 것은 1990년대 경부터이다. 그런데 바로 이시기는 세계적으로 이주노동 선택자들 중 여성이 숫자적으로 증가한 때이며 여성의 전업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가사노동이나 연예, 그리고 성산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두 영역은 근대 이후 여성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활용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젠더적 차별과 억압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불리는 분야의 사회화가, 이 분야의 저임금 현상과 동시에 진행된 까닭에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센의 의견처럼 이 노동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주로, 제공되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게 된 제3세계 여성들이다.⁵⁾ 게다가 한국사회의 경우, 물론 이것이 한국만의 경우가 아니었지만, 이주여성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이주문제는 곧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문제에 대한 연구자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몰려있는 것은 이주사회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새로운 문제의 해결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5) 사센의 의견에 대해서는 Saskia Sassen,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1998), pp.121-130;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131쪽 참조.

그런 이유에서 한국 내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이주 현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목적은 적응과 갈등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는 연구 성과로 모아진다. 예를 들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과정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성들이 다층적 차별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의견을 펼친 연구가 그것이다.⁶⁾ 한국사회에 적응을 넘어 통합하는 것을 당위로 하는 사회적 요구들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한국사회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그들에 대한 시각으로 나타난다고 연구성과들은 드러낸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들이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질서 하에 있고 강도 높은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착한 며느리, 순정적 아내의 역할을 그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정형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물론 이런 문화적 요구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결혼이주과정에서 매매혼의 대상이 되고 결혼한 가정 내에서는 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되어있다는 것도 드러난다.⁷⁾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주류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규범과 생활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미디어의 담론을 드러냄으로써 소수문화인이며 자신의 원거주지를 떠난 이주여성들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이주사회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그럼으로써 기댈 곳이 없는 결혼여성의 상황을 드러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새로운 가족이나 남편 등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만이 여성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이 여성들의 어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이 출발하는 구조적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⁸⁾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문제나 또는 출산과정을 거치며 육아나 아동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인구학적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관

6)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2006), 147쪽. 이 글에서 이주여성들은 여성, 외국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로서의 다층적 구조를 강조한다.

7) 김수정, 김은이,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43호(2008).

8) 양정혜, 「소수민족 이주여성의 재현: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2007).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⁹⁾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해 이주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히 여성들이 갖는 고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지극히 사적인 관계인 결혼이라는 것이 국제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경제 질서와 결혼인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의 필요, 그리고 젠더적인 정치학이 작용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다.¹⁰⁾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방식으로는 물론, 주로 사회운동 단체와 연관한 한국사회의 행동에 대한 연구들도 봇물처럼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¹¹⁾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지구화와 여성노동의 문제, 이주와 젠더의 문제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들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런 논의들 속에서 앤서니 기든스의 『기로에 선 자본주의』(2000)¹²⁾,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2006)¹³⁾, 『장거리 사랑』(2012)¹⁴⁾ 등이 국내에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읽히고 인용되고 있다. 이주노동의 일상화 이후 많은 지역에 돌봄 노동자로 진출하는 아시

9) 예를 들면, 김영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2010)

10)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경제와사회』, 통권 제70호 (2006).

11) 예를 들면,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화」; 설동훈,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3 (2014); 이해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2005) 등

12) 특히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는 여성의 전적인 영역이었던 돌봄이 지구적 차원에서 사슬로 연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과 육아에 담긴 감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확장되고 왜곡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3) 이 글에서는 근대적인 성별 분업이 실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점차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면 성별로 전업적으로 보이던 고유영역의 규정이 해체되면서 가정의 불만이 야기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돌봄노동이 이주를 통해 해결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14) 여기서는 가정 내의 애정이 이주노동, 특히 돌봄 노동이나 대리모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구적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특히 결혼여성들의 피해자성이라는 일반적 담론과는 달리 결혼이주가 초래하는 결혼의 본질과 배치되는 모습의 출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 여성, 특히 필리핀 여성들의 이주사를 통하여 이주여성의 수 많은 경험들을 분석한 파레냐스의 『세계화의 하인들』은 이제 이 분야의 고전에 속한다.¹⁵⁾

이주국 사회에서 이주자 여성이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주와 여성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베스트팔(Manuela Westphal)의 경우, 독일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고정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로 터키 여성들의 그것에 기준을 두고, 그들이 희생자, 또는 색다른 여성(Exotic)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¹⁶⁾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은 이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다중적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주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와 성격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있는데 특히 여성의 이주자로서의 직업이 젠더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사실 이것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에 대한 집중이 개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 이주의 여성화 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다. 즉 필리핀이나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여성의 이주노동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이주의 여성성을 촉발시키는 정치적인 부분을 강조한 이예츠(Nicola Yeates)의 연구가 그러하다.¹⁷⁾ 여성들의 이주가 고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이주와 개발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 국가적, 국제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동기와 여성의 이주를 연결하는 연구도 있다.

15) 살라자르 파레냐스 (Rjazel Salazar Parrennas), 『세계화의 하인들』 (이연, 2009).

16)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Deutsches Institute für Menschenrechte, *Zwangsverheiratung in Deutschland*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p. 128.

17) N. Yeats, "Production for Export: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lobal Care Chain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5 (2009). 이 경우에서 한국의 경우, 간호여성들의 이주가 국가적 사업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1980년대 과독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담론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어긋나는 면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의 수정은 순전히 한국 역사가들의 몫이다.

문화의 상이함이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을 타자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다.¹⁸⁾ 이런 타자화의 경향이 그러나 나라마다의 차이에 의해서 문화적 적응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독일로 갔던 한인여성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¹⁹⁾ 그 중에서 두 문화, 특히 한인과 결혼한 남성들의 문화적 특성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특성이 만나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졌다.²⁰⁾

결혼이주여성 이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업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가사노동, 저임금 제조업, 성매매 관련 업종이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산업 등이다. 근대세계 이래로 여성의 전형적이고 고유한 일이라고 여겨져 왔던 가사영역과 여성의 젠더적 고유성을 상품화하는 영역, 그리고 낮은 임금의 생산직에 주로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젠더, 계급, 인종의 교차점에 처해 있는 전반적인 이주여성노동자의 범주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아서 주로 사회과학적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처하게 되는 작업장 내에서의 다양한 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이들의 인권과 모성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이주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²¹⁾

이주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고유함에도

18)Barbaras Stilwell u.a., “Migration of health-care workers form developing countries:strategic approaches to its management”,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ugust 2004).

19)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함. 이수안, 「이주여성의 타자성과 관용의 상호발현에 대한 이론적 모색:재독 한인여성의 이주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통권 제12집 (2008), 76쪽.

20)이수안의 연구에서는 독일 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하여 성찰성과 관용성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인의 정착과정에서 적응하는데 이런 부분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독일인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한국인의 순응적 합리성이 만나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다문화적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타자성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희석되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 받는 토양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앞의논문, 98쪽.

21)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0) (2007) 참조.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로서, 또는 결혼 이주자로서 이주국에서 만나는 문화혼성성이나 또는 타자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작용한다는 것은 좀 더 일반화된 여성이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 이미 제국주의 시절부터 진행되어왔던 지구적 차원의 성별분업현상이 지구화의 시대에 가속화되면서 국가가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여성들로 하여금 성별로 특화된 직업과 가치 절하된 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의 지속 속에서 진행되는 이주의 증가 현상 속에서 여성들의 타자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²²⁾ 이런 생각은 여성이주를 생산하는 지구화과정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타자화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가속화 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다양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자 집단이 이주국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주국의 다수 사회에서 타자화 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제이주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빈곤 심화, 그리고 그 이외 다양한 요인들, 젠더, 계급, 인종관계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이미 국민국가의 성립은 이들의 불리한 입장을 배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국민국가 내의 소속인들에게 다양한 법적 지위가 강화 될수록 그 영역에 유입된 비소속인의 위치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민권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가 소속원들이 다양한 시민권을 통해 정치,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면서 이주국에 소속되지 않는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²³⁾

게다가 시민권적, 그러니까 정치적 권역의 구분과 더불어 이주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급적 인종적 차이가 더해지고 더 나아가 젠더적 차별이 더해지면서 여성이주노동자의 트랜스내셔널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했던 수 많은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22) 이에 대해서는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 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2004) 참조.

23) 시민권의 배제와 차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한국여성학』, 22(4) (2006), 129쪽 참조.

측면들이 나타난다.

이주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한 측면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파편적으로나마 강조하는 연구성과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이 국제 결혼을 시도하는 것은 신분 상승 등의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²⁴⁾, 이주노동을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의 동기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선택 결정과정에서 그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중요시하는 시각이 그것인데, 그 결정과정을 해방의 의지로 연결하는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이주를 선택한 이유가 그의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 대한 반항의 차원인 경우가 많았던 점도 강조된다.²⁵⁾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이듯이 이 과정은 일반적 이주노동자의 경험에서 보이는 계급적, 인종적 차별 현상에 더하여 젠더적 차별이라는 내용이 더해지면서 그 길에 나선 여성들의 고통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상의 많은 연구들이나 더구나 여성이주자들의 이주행위에 담긴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과하는 것은 이주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 2차 대전 이후의 이주노동은 더구나 혼자서 국경을 넘는 것이기에 이들이 이주국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문화적 낯섬과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얻게되는 적응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사회와의 만남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든 것을 ‘이주’는 포함한다.²⁶⁾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이주는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었는지 하는 것은 이주가 초래한 이주국의 사회현상이나 또는 그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부분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는 이주노동자로서의 한인간호이주노동자들에게 독일 이주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4) 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150쪽 참조.

25)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p. 133.

26) 이주가 갖는 장기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나혜심, 「국경을 가로지르는 과정으로서의 이주」, 『사람』, 제 47호 (2014) 참조.

III. 이주와 이주여성의 깨어나기

캐나다의 유명 여성지 중 하나인 *Chatelaine*에 나타난 기사들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들이 잡지에서 읽기를 원하는 기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때 여성들이 이 잡지의 내용으로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유리천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였다고 한다. 하지만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기대하는 바는 달라졌다고 한다. 직장 내에서 평등한 진급을 위해 일을 하는 것과 아이돌보기 및 소위 가정에서 여성이 할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성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하도록 인식되어 있는 가사 일일 것이다.²⁷⁾ 약 10년간의 사이에서 변화한 것은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염려가 더 이상 고려할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직장에서의 젠더간 평등을 취하는 일, 그리고 동시에 직장을 나가느라 비운 집안의 일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가 2006년인 점을 생각하면 약 1996년 경의 상황과 그 뒤 10년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 유입국의 고용여성들은 이주노동자를 통하여 자신이 ‘원래 하게 되어있었던’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성별분업에 의한 노동의무를 해결하게 한 셈이다.

이런 양상은 유럽의 경우에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일부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사회에 공공연하게 비밀스런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학자는 헬마 루츠(Helma Lutz)인데, 그는 19세기 하녀노동자가 계급적 기원을 갖는 19세기 하녀노동자와는 달리 민족과 인종적 기원을 갖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문제가 지구화시대의 중요한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많은 돌봄 분야의 노동력은 독일

27)잡지에디터의 기술에 대해서는 Allison Weir, “The Global Universal Caregiver: Imaging Women’s Lib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Constellations* Volume 12, No.3 (2005), p. 308 참조.

28)Helma Lutz, “Gender, Ethnizitaet, Identitaet: Die neue Dienstmaedchenfrage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Diskurs Kindheits- und Jugendforschung* (2006), pp. 301-306.

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분야 노동력의 이주는 지구적 차원의 이주노동으로 채워질 전망이다.²⁹⁾

하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에 독일 사회는 독일 여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긴급하게 외국인 여성노동력을 채워 넣는 일이 발생했었다. 바로 사회 내에 돌봄 노동, 즉 병원이나 양로원, 요양원 등의 간호노동이었다. 앞서 캐나다의 여성들에 비하여 이 시기 독일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의 유리천정을 무너뜨리는 문제와 같이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고민하던 시기가 아니었다. 그 직장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고민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바로 1950년대 이후 독일 전후 사회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쟁기 동안 남성을 대신하여 일터에 나가 있던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 가정의 안온함을 지키게 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요양과 간호, 양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업적인 일이라는 편견과 대우의 문제로 젊은이들의 직업선택 선호도에서 밀려 있던 시기였다.³⁰⁾

이 시기에 한국, 홍콩,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독일로 간호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오늘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하는 돌봄노동자들과는 다른 이들이었고 자신의 국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으나 독일에서 또 다른 의미의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이들이었다. 비록 오늘날 돌봄노동력의 사회적 위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경제력과 인종, 민족, 그리고 젠더적 차원에서의 차별적 지위를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지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전형적인 그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이주가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물음의 한 조각을 이들에게서 얻으려고 한다.

29)Eva Senghaas-Knobloch에 의하면 1995-2000년 사이에 돌봄 분야 노동자의 자리가 50,000개 정도 없어졌으며 이에 반하여 돌봄을 받아야할 환자는 백만 명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va Senghaas-Knobloch, "Care-Arbeit und das Ethos fuersorglicher Praxis", *Berliner Journal fuer Soziologie* (2008), p. 229.

30)이에 대해서는 나혜심, 「과독 한인여성 이주노동자의 역사」, 『서양사론』, 제100호 (2009), 266쪽 이하 참조.

1. 이주, 하나의 기회?

이주민들, 특히 여성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계급적, 인종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과 폭력 상황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여성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³¹⁾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이주여성들이 가난이나 생존을 위한 이유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으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도 강조된다. 흔히 이주자의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회귀되는 것과는 다른 이해인 것이다. 경제적 동기에 대한 것은 물론 이주자들의 이주 동기에서 기본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이다. 독일로 갔던 간호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떠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보여지는 동기는 바로 그것이였다.

“나는 학교를 마친 후 서울의 병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 다른 직업에 비교하여 임금이 그리 낮지는 않아서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1949년생 면허 간호사로 1973년 독일로 감)

“빛에 허덕이는 우리 가족과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 남자동생들을 돕고 싶었다”.(1946년생으로 간호조무사로 1971년 독일로 감)

“나의 어머니는 홀로 나의 대학학비를 냈다.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3형제를 위하여 희생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다... (중략)...학교를 마친 다음에 나는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돕고 싶었다”³²⁾

그러나 당시 독일이 한국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것이나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사회적 분화가 되고 있던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빈곤의 여부와 관계 없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목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개선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아 더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인적인 삶을 교육이나 문화적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31) 예를 들면 김영란,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49쪽 참조.

32) 위의 세 개의 인용을 포함하여 Yoo Do-Jin, *Die Situation koreanischer Krankenpflege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hre sozialpädagogischen Probleme* (Kiel diss., 1975), pp. 162-163 인용.

이 이들에게 더 전반적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기대였다.

“ 내 계획은 우선 3년간 독일에서 돈을 벌어 집에 보내서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 다음에 어떻게든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생각이었다”³³⁾

“...그니까는 소매잡화상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봐서는 그리 가난한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풍부한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는 되었었거든요...(중략)... 한국에서 남존 여비사상이랄까. 너는 대학포기하고 그냥 직장, 다른 직업 같은 것을 배워라 배워라 자꾸 하시더라고...그래서 어떻게 길이 있었으면, 대학을 갈 수가 있으면 좋았는데 또 말을 너무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 쪽으로 독일로 공부도 할 겸 해서 나와버린 거예요”³⁴⁾

교육의 기회는 당시 여성들에게는 남자 가족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차선적인 수혜대상자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당시 한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많은 이주동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당연히 경제적 여건의 여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이루고 나면 다음에 원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의 기회였고 이는 결국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한 동기로 귀착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이들을 국경 너머의 삶으로 인도한 것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편견에 대한 저항이었다.

“ 내게는 돈을 벌기위한 신세계라기보다는 자유를 얻기 위한 신세계로 느껴졌다.” “유럽으로 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다”³⁵⁾

33)이영숙, 『누구나 가슴 속에 꿈이 있다』 (북스코프, 2009), 26쪽에서 인용.

34)1970년에 간호학교 학생 자격으로 독일로 갔고 간호학교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한 여성.“파독한인여성간호노동자들의 증언자료 2”, 2008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35)송금희 & 조국남, 이에 대해서는 김용출, 『독일아리랑』 (에세이, 2006), 116쪽 참조.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여성이주자들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주변국 여성들의 이주의 원인에는 그의 아버지나 또는 남편에 대한 반항의 차원인 경우가 많았다는 조사결과들이 있다.³⁶⁾ 1970년, 독일의 자동차부품 공장이었던 피어부르크(Pierburg) 자동차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 투쟁에 참여했던 그리스 여성 안나 사톨리아스(Anna Satolias)의 표현에 의하면 그 시기 지중해 지역 주변 국가 여성들에게 이주를 한다는 것은 해방을 찾기(to find emancipation)를 의미하였다고 한다.³⁷⁾ 또한 이주행위가 자신의 국가에서는 누리거나 꿈꾸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계층이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³⁸⁾

이주가 경제적 기회 이외에 해방이나 관습적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은 단순히 이주여성노동자가 쥐게 될 금전적인 부분이 그것을 담보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1950년대 이후 이주가 주로 이루어졌던 공간에 대한 관찰을 결합했을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2차 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후 복구과정과 사회변화 속에서 필요로 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유출되었던 곳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났거나 반식민지적 상태의 국가들이었다. 이른바 서구 국가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자신의 구분하는 타자의 영역이었고 그 국가들의 대부분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고 서구식 자본주의 길을 나서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서구식의 자본주의, 정치적 근대화, 문화적 서구화는 하나의 숙제였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시기에 서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통로는 공적 또는 사적인 개발원조 과정을 통하여 이주민 유출국들에 전달되는 서구에 대한 환상적 이미지가였다. 사실 이런 이미지는 이미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세기 말의 개항과 제국주의적 진출에 의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바였다.

36) 예를 들면 Manuela Westphal, "Geschlechterstereotype und Migration", p. 133 참조

37) Jennifer Miller, "Her Fight is Your fight: 'Guest Worker' Labor Activism in the Early 1970s West Germany",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84 (Fall 2013), p. 239

38) 이금순,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2006), 194쪽 참조.

그것은 일정하게는 근대 서구가 근대성을 기준으로 세계를 이분화하고 서구중심주의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세계작동의 방식을 다양한 인식과 역사사술, 문화비교 등의 내용으로 상대화하고 비교해 왔으며 제국주의적 확장 속에서 그 상대화된 비교의 틀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교육되고 이식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인지되어 왔다. 공교롭게도 이주는 그 거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 이분법적인 세계 속에서 이주가 주로 이루어졌던 비서구세계, 또는 제 3세계의 사람들에게 이주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1903년 최초의 한인이주자들이 하와이에 발을 들인 이후에 1905년까지 약 7800명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였고 이 때 남녀 성비가 6대 1이었던 상황은 곧 ‘사진신부’라는 독특한 이주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약 100명 정도의 여성이 미국으로 이런 방식의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일제 강점의 상황 등 정치적 요인 이외에 이주자들의 경제적 개선이라는 목적 등 다양한 동인들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개인들 중에서 발견되는 동기는 대부분, 자신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개선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13년과 1914년에 샌프란시스코 앞의 한 섬으로 사진신부로 간 여성들은 모두 일제 치하에서는 불가능한 더 많은 공부의 기회를 위하여 미국으로의 실재로는 매우 많은 위험요소를 가진 결혼을 선택했다.³⁹⁾

미국 선교사들의 유입과 그들이 알려준, 잘사는 나라 미국에 대한 환상이 당시 사회에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으로 꿈에서조차 그려지지 않은 낯선 땅으로의 이주를 택한 것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당시 한국 여성들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여성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욕구가 얼마나 강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적극적 개선의 목표는 그들이 은연중에 학습 받아온 서구 세계에 대한 이상향적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독일에 이주노동을 갔다가 다시 미국 등 제 3국으로 재이주한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미국으로의 이주를 원했

39) 정은귀, 「천사도와 사진신부-초기 재미 한인 이민 문학의 재구성」, 『외국문학연구』, 55 (2014), 228-229쪽.

었지만 차선책으로 독일을 택했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에서 보았던 사진신부의 경우를 비롯하여 항일 운동 시기의 지식인의 미국에서의 유학과 활동,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무상원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잘사는 곳, 꿈을 실현시켜줄 이상향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로 옛날에 가려고 했었는데 모든 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아 그걸 그만두고 있다가 이렇게 독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중략)...독일로 가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3년 계약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왔습니다.”⁴⁰⁾

이 구술자도 경제적으로 한국이 너무 못살아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결국 가난한 나라와 대비되는 외국, 특히 미국의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한국전쟁 후의 지원은 물론 그 이전부터 한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한국인들에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런 이미지는 삶의 개선을 위한 여성들의 시도에 선호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다른 이름, 독일의 경우도 많은 경우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편지는 나를 황홀의 경지로 몰았다. 이 친구가 사는 집에는 수영장이 있어 근무가 끝나면 언제나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스테레오 전축도 2개월 일한 월급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중략)..나는 당장 파독간호사 모집에 응했다. 그리고 70년 10월 커다란 희망을 안고 마치 천국으로 가는 양 들뜬 기분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도 별 관심조차 갖지 않은 채 비행기에 올랐다”⁴¹⁾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양분은 흔히 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양분

40) 뉴욕에서 열린 파독 뉴욕 동우회 정기 총회에서 진행한 재미 한인과의 면담 자료. 4명의 간호여성들을 면담하였고 그 중 구술자 1의 내용. 광부간호사를 통해 본 파독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 연구용역 자료집, 2013.1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30쪽.

41) “내가 왜 식사 준비나 하느냐” 파독간호사의 논문(39), 『시민의 신문』 (2002. 11. 11.).

을 이야기 하지만 이와 함께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이분화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주민 유입국과 유출국이었다. 물론 이 시기 서구세계들의 경제적 발전 상황과 이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나거나 근대화의 길을 나선 비 서구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는 명백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서구세계의 문화적, 학문적 선진성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는 이들의 이주에 개인적인 동기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만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이미지는 18세기 이래로 서구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었던 것이다.⁴²⁾

물론 이주를 결심하게 한 다양한 동기들이 독일에서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찌면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한국은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탈영토화 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해방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⁴³⁾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는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인종적, 계급적, 그리고 젠더적 차별 상황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너무나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차별과 배제의 역사만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이주자 삶 속에서의 자각

1960-1970년대 한국의 독일여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성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젠더적인 차별철폐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거나 또는 이주노동자로서 독일에서 누릴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이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동법이나 외국인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권리 등에 대한 정보는 주어진 바 거의 없었다. 경제적 상황은 물론이고 급속한 경제적 근대화 속에서 사회

42) 이주동기로 작용한 독일에 대한 문화적 동경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간호여성』 (산과글, 2012), 209쪽 참조.

43) 탈영토화가 해방의 기회라는 표현은 배옥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몰화된 몸」, 『한어문교육』, 28 (2013), 324쪽에서 인용

적 분화와 정치적 권리 찾기의 혼돈 속에 있던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권리라는 것에 대한 담론이 매우 부족하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주노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될 사회에서의 다양한 제도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독일로 갔던 광부의 다음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독일로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사전교육에서 반공과 해외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은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일반시민의 권리, 한국과 다른 장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혜택,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다.”⁴⁴⁾

1970년 경까지의 매우 개별적이고 모호하게 만들어진 노동계약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 한국 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사이에 협정을 맺고 이른바 이주노동의 경로를 단선화 했을 때조차도 이들 한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히 인지했다고 생각되는 모습은 실제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이 자신의 처지의 부당함을 언급하는 때에는 한국에서의 교육받은 것과 다른 간호생활에 대한 것이나 독일 동료들과의 일의 차이 등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⁴⁵⁾

독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그러나 일반 독일 노동자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았고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명백하게 차별적이었다. 1973년 독일 언론에서는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보도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피어부르크 자동차 공장은 독일 내 많은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제공하는 공장였고 이 공장에서 이 여성들은 독일 임금체계의 여성외국인 노동자에게 향하는 부당성에 대항한 파업을 하였다. 임금체계는 1-4까지 달랐고 체계 1의 경우는 “light”라고 하여 주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리고

44)조기상, 「파독 광부의 이주노동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독일의 이주정책과 한국인의 독일지주사례관련 포럼, 2007년 11월 6일 발표문, 8쪽 참조.

45)노인 환자의 몸을 씻어주며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나 청소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인터뷰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상위로 갈수록 남성이나 독일 노동자들에게 향하게 짜여 있었다. 원래 임금체계 1은 처음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향해진 것이었으나 외국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 5~6년이 넘도록 이 체계 하에 있었다. 또한 많은 공장의 임금은 성과급으로 계산되었지만 그것의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평가체계 역시 정확하지 않았다.⁴⁶⁾ 즉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 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체계는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조건들은 더 열악한 것이었고 이런 이유에서 다른 독일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적극성으로 앞서의 공장과업이 진행되어 여성들의 노동쟁의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의 불공평은 사실 독일에서의 외국인 고용정책 자체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젠더정치적인 고려였다는 마테스의 말을 빌리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⁷⁾ 젠더의 문제는 비단 남성이 여성에 대해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대우는 당시 독일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젠더적 차별의식의 발로이며 이런 과정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노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과 같이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던 곳에서와는 달리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인원이, 각기 다양한 종류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한국 여성들의 경우 그것을 의식할 기회가 없었다.⁴⁸⁾ 그런 가운데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며 애초에 그들이 독일로 이주노동 가는 선택을 하는데 동기가 되었던 것들이 현실에서

46) Jennifer Miller, "Her Fight is Your fight: 'Guest Worker' Labor Activism in the Early 1970s West Germany", pp. 230-231.

47) Monika Mattes, *Gastarbeiterinne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 a. M.: Campus, 2005), p. 11.

48) 고용된 규모가 노동쟁의를 일으키기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의 손님노동자, 그들의 문제와 해결방식」, 『서양사학연구』 제38집 (2016), 25쪽 참조.

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을 깨닫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국가에서의 체류경험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우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고정관념의 변화 등이 그것들이다.

“결혼 초기에 우리부부는 정치문제에서 의견충돌이 잦았다. 한국에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나는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도 반감을 느꼈고 남편이 군사독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중략)... 남편은 이런 나에게 정치의식을 불어넣어주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었다.”⁴⁹⁾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자극은 결국 그들이 한국사회에 방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였다. 예를 들면 한 한국인 간호사는 약 10년의 독일 체류 후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국가사랑을 촉구하는 표어 옆에 붙여있던 “쳐 죽이자 김일성을”이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반공표어 일색의 고향마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⁵⁰⁾ 심지어 실제로 그의 방문은 당시 시골 경찰의 의심을 샀고 그 의심은 경찰이 그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옆집에 오신 손님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표어에 대해서는 독일로 가기 이전에는 아마도 아무런 의식적 자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의 방문 속에서 이 표어는 이 여성의 눈에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직성, 더 구체적으로는 반공주의적 분위기를 드러내게 하였고 결국 이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한 자각이 이 여성에게 찾아왔던 것이다. 특히 독일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 반공이데올로기나 군사독재에 대한 시각이 더 급속하게 변화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바깥에서 접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목격은 여성들이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데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49) “한국인 며느리와 독일인 시부모” 과독간호사의 눈물(8), 『시민의신문』 (2002. 3. 18).

50) 재독한인여성모임 자료집, 베를린, 2003(미간행), 94쪽 참조

“1980년 5월 내게 어느 저녁에 뉴스를 통해 남한으로부터 아주 끔찍한 보도나 전해졌다. 내 고향나라 광주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화면을 통하여 보도되는 믿을 수 없는 그림들은 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중략)... 나의 정치의식,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공자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한국여자로서 반공주의적으로 교육을 받았었던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진행된 데모 대열에 대한 피땀 폭력적 탄압을 통해서 바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⁵¹⁾

“너무 끔찍했다, 보고 또 봐도 이들은 한국사람들이었다... 우선 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들었고 모두가 하나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빠른 시간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인가를 하자’는 것이었다...(중략)...11월 9일에는 ‘김대중을 구출하자’는 구호 아래 시위를 했고...(중략)...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와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⁵²⁾

한국이주노동자들의 의식 자각을 깨우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한 계기 중 하나는 독일에서 진행된 68운동과 그 결과가 구현된 사회적 실천들이었다. 68운동은 독일이 겪는 ‘근대성에 대한 재검토의 경험’이었다. 따라서 아직 전근대적인 세계에서 유입된 아시아인들에게 근대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사회와 교육환경에서의 진보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유와 이를 위한 여성운동의 재흥은 당시 한인여성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다.

다른 도시에서 베를린으로 이사 갔던 한 한인 여성은 68운동 이후에 베를린이 갖고 있던 좀 더 강력한 변화의 분위기를 경험하였다.

“낮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간호사로, 저녁에는 학생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좌익성향의 진보적 교사들과 학교 분위기, 수업방식에서 나는 3년

51) Kim-Morris Soon Im, “Fern der Heimat, doch für immer verbunden”,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Heike Berner, Sun-Ju Choi (hg.), *Zuhause* (Berlin: Assiziation A2006), pp. 41-42.

52) 김정숙, 「광주가 내게 남긴 정치의식」, 파독 간호사의 눈물(42), 『시민의 신문』 (2002. 12. 2.).

이주와 여성의 깨어나기

내내 자유로운 베를린 콜텍의 공기를 마셔가며 점차 자의식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익혔다...(중략)... 1975년을 전후로 곳곳에서 물결치던 ‘여성해방운동’은 여러 학과의 주제로 선택되어 우리는 수업시간이나 휴식시간이나 자나깨나 ‘여성운동의 이론과 현실, 3세계 여성운동’을 토론하며 흥분했고...”⁵³⁾

위에 대해 언급했던 여성은 이후에 여성의 지위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는 여성모임의 일원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근대를 넘어 근대를 점검하는 68의 가치는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더 강렬하게는 독일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강하게 다가왔다.

“ 어느 날 책을 빌리기 위해 그이 집을 들렀을 때, 그의 방 벽의 반을 차지하는 큰 모택동 사진을 보고 나는 놀랐다...(중략)... 뒷날 ‘68학생운동’ 때 이곳 사람들에게 모택동은 중국혁명을 한 영웅으로 상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모택동은 인간 역사에 남은 영웅이라 생각한다.”⁵⁴⁾

이 여성 역시 사회와 정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재독한인여성모임의 일원이다. 앞에서 남편으로 인해 반공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그 여성은 1990년 당시 새로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 본부에 가입하고 한국의 통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평양에서 위안부 여성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이후 독일의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 개최와 위안부의 증언 독일어 번역 등 활발하게 사회,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주노동에 나서도록 했던 동기에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있던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지

53) 조국남, 「결국 ‘뿌리가 끊어진 병’ 걸리고」, 파독간호사의 눈물(30), 『시민의신문』 (2002. 9. 2.).

54) 안차조, 「된장찌개 좋아하는 그와 20년」, 파독간호사의 눈물(15), 『시민의신문』 (2002. 5. 6.).

만 이주 후 그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의식의 자각을 이루어갔고 이런 변화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로 발전하였다.

3. 여성의 조직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이주와 젠더의 문제에서 이주의 성격 자체가 갖는 젠더 차별적 부분으로 인하여 매우 부정적인 조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것은 동시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회로 작용하였다. 제 3 세계로부터 제 1 세계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애초에 원했던 삶의 개선이라는 계획은, 그것이 경제적이든, 자유를 향한 것이든, 가부장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이든, 처음에 기대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시간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달성되어 갔다. 그것은 이주라는, 국경을 넘는 그 한 순간에 달성된 것이 아니라 이주자로서의 혼돈의 시간과 적응의 시간을 거치면서였다.

기본적으로 한인 간호여성들의 조직화가 쉬운 일을 아니었다. 학력별, 출신지역별, 이주할 때의 직업의 종류별로 그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고용의 규모 역시 일부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소수단위였다. 소규모의 불만 표출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⁵⁵⁾

이런 상황과 비교하면 1977-1978년 진행된 한인여성들의 체류권 투쟁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시작은 매우 단순하였다. 뮌헨지역에 사는 여성노동자들의 해고와 강제적인 귀국 증용으로 시작되었고 여성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문제를 논의할 모임이 만들어져 갔고 이 과정에서 교회 등 조직적 토대가 있는 기구의 도움은 필연적이었다. 이는 교회가 모임에 대한 어떤 의식적 토대가

55) 불만 표출의 예에 대해서는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 184쪽 이후 참조.

되어서이기보다는 한인 사회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의식의 결집가능성,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체류권 투쟁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여성들의, 이주 노동자로서의 자기 이해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1974년에 베를린에서 발족된 “스스로를 돕는 한국여성 모임”이다. 이 모임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3년간의 취업을 전제로 한 노동계약조건문제”, “체류와 노동이 함께 묶여 있는 외국인 법”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양로원에서의 업무를 병원 근무로 바꾸려고 할 때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었다. 또한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소외감과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는 목적도 있었다.⁵⁶⁾

독일에서 한인여성이주자들의 조직화는 비단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이주한 이들이 이주한 초보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든 지역적 모임들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에 있던 대한간호협회의 독일 지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에서 면허 간호사로서 갖고 있던 위상을 독일에서도 연장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면허간호사들로 이주한 이들이었다. 이런 지역에서의 요구에 의해 출발한 간호사들의 모임은 전국적인 모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재독한인간호협회였다. 물론 한국의 면허간호사들의 모임과 동일한 인정을 이 모임은 받지 못하였다. 간호사의 위상이 다름뿐더러 모임에는 간호보조원이나 또는 간호학생으로 갔다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딴 간호사들도 섞여 있어서였다. 이 모임은 그러나 한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친목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에 비하여 재독한인여성모임의 경우는 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77-1978년 “여성의 체류권 투쟁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들은 조직을 정비하고 이후 오늘날까지 다양한 노동, 사회, 정치 문제 등에 대해

56) 「재독한인여성모임 25년의 역사」, 재독한인여성모임 25년 자료집, 5쪽 참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74년에 재독한인 여성모임의 전신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여러 지역을 돌며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의식의 공유를 확인하던 이들은 1978년, 바이에른에서 한국인 간호사 추방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한인은 물론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이슈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각 연방정부에서 한국간호인력에 대한 무기한 체류 및 노동허가를 얻어내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하여 1978년 재독한인여성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이후 재독한인여성운동은 재독한인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그 내용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독일문화와 외국인 체류권과 관련된 문제,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 등에 대한 것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978년 통일방직 여성노동자, 1979년 YH사건, 독일 아틀러 그룹의 한국 의류 회사였던 후레아 패션 노동자들과의 연대(1986-88) 등 많은 노동자 운동과의 연대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 내의 정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운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비단 체류권 투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는 아니며 독일인들과의 교류, 독일인과의 결혼, 또는 직장에서의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통하여 여성들의 의식은 사회화되고 각성되었다. 이것이 비록 젠더적인 평등의 문제에만 집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이들의 이주라는 행위와 이주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이들의 여성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다른 인종과 문화소유자로서, 이주자로서의 자각은 하나의 조직화와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주의 여성화 현상 이래로 이주는 젠더차별이 이루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발현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의 복지자본주의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업의 증가,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동분업 현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이주를 추동하고 대개 제 3 세계 여성들의 국경 너머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 일 자체가 여성의 전업적인 것에 저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진다. 기본적으로 이주자가 계급 아래의 계급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는 또 여성을 계급 바깥의 계급으로 자리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도 지구적 차원의 빈부의 격차는 이 노동시장으로의 여성들을 끌어들였고 19세기 이래로 서구적 가치의 제 3세계로의 유입과정에서 형성된 서구중심적, 서구우월적 가치들은 이 과정을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주와 젠더의 일반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두 국가의 발전 상황, 민주주의와 제도의 제도적 정착, 68운동과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큰 운동, 이주유출국과의 외교적, 국제적 관계, 양 국가의 발전 정도차이 등은 삶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진 여성들에게 변화와 자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주를 결심하던 동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작용한다. 바로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들이다. 이 활동들이 즉각적으로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회의 일정하고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성균관대학교, hsn6642@naver.com

주제어(Key Words):

노동이주, 여성의 전적인 역할 영역, 긍정적 경험,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 젠더 차별

labor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positive experience, so-called women's area engagement in social movement

(투고일: 2016. 04. 25, 심사일: 2016. 04. 26, 게재확정일: 2016. 05. 16)

<국문초록>

이주와 이주여성의 깨어나기

나혜심

오늘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이주노동에서 여성노동은 그 숫자에서나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 등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눈에 띄이는 현상이 되었다. 이주의 주체로 여성이 증가하고 그들이 소위 여성의 전업적 영역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이주민이 주로 겪게 되는 인종적, 계급적 차별에 더하여 젠더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개인들에게로 분석의 시야를 축소하게 되면 이주가 이루어지는 두개 공간 사이의 이동은 이들에게는 비단 부정적 경험만이 아니라 긍정적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로 자신이 속했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억압 상황의 해소를 위한 발걸음이 이주물결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새로운 사회에서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오랜 동안 갖고 있던 고정된 의식이 깨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의식의 깨어남은 이들이 이주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부당한 대우를 스스로 타개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식자각은 그래서 이주가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랜 이주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현재의 이주민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Abstract>

Migrarion and Getting enlightened of immigrant women

Hye-Sim Na

The women labor migration became outstanding phenomenon because of numbers and the speciality of the kinds of occupation on which they work these days around the world. That means there's an increasing of immigrant women and they are working at an area so-called women's area. They are suffering gender discrimination added on racial, class distinction that immigrants usually go through. Despite these discriminations, it is found that moving to spaces between the two places where the emigrant takes place can be not only negative experiences but also positive opportunity when reducing the sight to each person of immigrant women. The steps for solving cultural, economical, political and social oppression are sometimes found in an immigrant flow and people experience that their old fixed sense is enlightened by other experiences in a new society. And these enlightening can be a move to break the unfair treatment from the immigrant society by themselves. Therefore, these enlightening like this means that it can be a factor that can explain the present immigrant traits which represents their experiences positively even in the long term of immigrants' lives, not that the emigration is actually helpful.

■ 특집 ■

프랑스 기업 내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평등 실태

최향란

I. 들어가며

북아프리카 마그레브계 이민자들은 프랑스 출신 및 유럽계 이민자 출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랍식 이름만으로도 취업을 원천적으로 거부당하는 고용차별 사례도 빈번하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소외, 배제 문제는 이들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세습되고 있다.¹⁾ 여기에 젠더 문제가 추가된다면, 북아프리카 마그레브계 이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마그레브계 출신 이주여성 노동의 불평등 상황을 전 세대를 아울러 점검해보려 한다.

사실 이주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시각 또는 사회적 시각에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된 관심 범위는 사회적

1) 김승민, 「프랑스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 불평등 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4집 1호(2011), 54쪽. 뒤게 엠마뉴엘 등이 2006년 실시한 취업지원자의 인종 출신에 따른 이력서 송부와 관련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같은 이력서를 내밀더라도 아랍계나 아프리카계 이름의 지원자는 프랑스계 이름의 지원자에 비해 취업이 훨씬 힘든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실험에서 입사 이력서의 내용이 똑같다하더라도 모로코 출신 이름을 기재한 구직자는 프랑스 이름을 기재한 구직자보다 면접 기회를 가질 확률이 2.8배~3.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민, 「프랑스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 불평등 문제」, 『국제정치연구』, 제14집 1호(2011), 56쪽 인용.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실질적 측면, 즉 노동의 현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사실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인 기업 내에서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 실체적 측면을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또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시대적으로 90년대 말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현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에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고찰해보려 한다. 이와 더불어 분석대상은 주로 호텔과 연관된 청소하청업체, 그리고 식품유통업체와 일부 레스토랑 부문이다. 이 직종들은 이주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대표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식 통합모델은 프랑스가 인종주의와 차별행위에 필요한 해답이나 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못했다. 반대로 프랑스식 모델은 민족 및 인종적 구분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차별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차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통합패러다임은 도전받기 시작했다.²⁾ 게다가 프랑스 사회의 변화, 수차례의 테러로 인한 프랑스인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아랍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프랑스 사회에는 위협의 상징이며, 테러에 노출되고 있다는 잠재적 위협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는³⁾ 부정적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이주자들의 취업은 여성들의 테러화가

2) Steven Vertovec, Susanne Wessendorf,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옮김, 『흔들리는 다문화주의』 (박영사, 2014), 196-197쪽.

3) 김민정, 「여성이민자는 이민의 수혜자인가?: 프랑스 내의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 『유럽연구』, 제28권 2호(2010), 54쪽. 2013년 초 취업현황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에 들어온 마그레브인 남성의 경우 45, 알제리 30퍼센트 이하, 튀니지 45퍼센트라면, 여성의 경우 모로코 여성은 10퍼센트 상회, 알제리 여성은 10퍼센트 미만, 튀니지 여성이 간신히 10퍼센트를 넘는 정도이다. 여성이민자는 전체적으로 시간제 고용과 같은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다. 공직을 제외한 임시직의 10퍼센트가 이민자들인데 여성이민자 세 명 중 한 명이 임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퍼센트, 전체 고용인 가운데 임시직은 28퍼센트). 특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민자 중의 37퍼센트가 임시직으로 상당히 불안한 고용상태이다. - 김민정, 「여성이민자는 이민의 수혜자인가?: 프랑스 내의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 『유럽연구』, 제28권 2호 (2010), 42쪽 인용.

진척되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II.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 여성의 직종별 노동 차별

프랑스에서 여성들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주로 세 번째 유입 시기인 1974년 이후 프랑스에 대거 유입된다.⁴⁾ 유입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2000년 중반부터 국제 이주 속에서 여성 비율은 50%라는 상징적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주의 여성화’로서 해석된다. 1990-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OECD국가로 들어온 여성의 85%가 프랑스에 정착하며, 이주 당시 평균 나이는 47.1세로서 여자는 46.3세이다. 그리고 이 나이는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수준의 이주 여성 비율은 1990-2000년도 1.8%에서 2000-2006년 2.7%로 증가하였다. 이는 능력있는 여성들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세대별 이주의 진화와 여성화는 이주민 정책재고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의 비율은 1990년 38%, 1999년 41% 그리고 2006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⁵⁾ 이와 더불어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전환기에 국제 이주흐름의 또 다른 특징을 형성하는 ‘지식인의 도피(*fuite des cerveaux*)’ 현상이다. 즉 소위 배운 여성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과학 분야에서 최근 여성화와 젠더를 통합하는 학문의 다양성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이러한 이주 경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⁶⁾

그러나 위의 경우는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고용불안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불황을 계기로 이주국의 국내 환경이 변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관용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고, 이주여성의 젠더차별, 이로 인한 이주여성의

4)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301쪽.

5) Rafik Boukli-Hassane, Fatiha Talahite, “une féminisation de l’immigration algérienne dans les pays de l’OCDE au tournant du XX I e siècle”, *homme & migrations*, n° 1311, pp. 66-67.

6) *Ibid.*, p. 63.

빈곤화 등 새로운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⁷⁾ 가족 부양자로서의 남성 중심 정책으로 인한 장벽도 있지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 또한 좁다. 여성의 노동 형태나 실업 상황에 근거하여 볼 때 ‘이주’와 ‘젠더’라는 요소가 투입되면 더욱더 복잡한 노동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이주 전에 전문직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가족 부양책임이나 언어의 문제를 마주하며 이주 이전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못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 여성들은 시간제로 고용되기 쉽고 또한 가장 싼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가사일의 연속인 가정부, 식당 보조, 의류공장 등에 취직될 수 있다.⁸⁾ 또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산업체에 취직을 하여 언어, 인종차별의 경험을 피하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이 접하는 근로유형을 보면, “육아”와 “가사노동”, 독거노인 보호 등 “간호, 보살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이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프랑스인 경제활동률보다 훨씬 낮다. 이주여성의 활동인구율은 2008년 기준 평균 56.32%이며 알제리 출신은 45%를 차지하며, 마그레브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낮은 경제활동률을 보여주었다.

2008년 출신국가에 따른 이주민들의 활동 비율

	남성	여성
프랑스에서 출생한자	74,2	66,3
스페인	66,3	63,2
이탈리아	60,2	56,9
포르투갈	81,5	74,7
알제리	79,3	45,9
튀니지	80,7	50,3
모로코	77,2	51,0
아프리카의 다른지역	82,0	65,4
터키	84,3	30,1
유럽경제공동체 국가	75,0	56,4

출처: 2008년 지속적인 직업에 대한 프랑스국립통계청 자료

7)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 (2007), 8쪽.

8) 같은 논문, 18쪽.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심각한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전체 이주여성 중 30% 이상이 단순사무직에 종사하는 반면, 전체 프랑스 여성 중 20%만이 단순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주로 직접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개인서비스업 직종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그들의 32%는 “청소, 관리”에, 그 다음으로 “개인 및 가정 내 일”(25%), “보안, 조사”(21%) 업종이 주요 퍼센트를 차지한다.⁹⁾ 위의 세 가지 업종이 이주여성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직업군이다.

한편 노동문제는 주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스튜디오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달 집세의 4배에 해당하는 봉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보통 2개의 일을 병행해야 한다. 아침에는 간호학교에서 식사담당의 일을, 저녁에는 세탁업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곤 한다.¹⁰⁾ 이와 더불어 경제적 상황에 반응하여 프랑스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적은 단기적인 고용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 여성을 포함하여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계약이 관행화되었다.¹¹⁾ 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직종에 분포한다. 통상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낮은 봉급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불평등한 고용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¹²⁾ 2010년에 프랑스국립통계청이 16~65세의 프랑스 출신 및 이주민 2세대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 2명 모두 마그레브 태생인 이주여성 2세의 65%가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프랑스출신 여성 고용률 86%에 비해 18%나 낮았다.¹³⁾

9) 임지영, 「프랑스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주민의 경제적 관계와 사회통합」, 『지중해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2011), 65-74쪽.

10) Caitlin Killian, *North African Women in Fr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72.

11) *Ibid.*, p. 174.

12) 임지영, 「프랑스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주민의 경제적 관계와 사회통합」, 76-77쪽.

13) 김승민, 「프랑스 노동시장에서의 이민자 불평등 문제」, 85쪽.

다시 말해 이주여성들은 프랑스 경제사회구조에서 계약직 고용형태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인들에 비해 두 배가 높으며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다. 이주민들의 높아진 교육수준도 고용의 불평등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상 특정 직업군에 이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현상은 사회경제 구조적으로 이들이 차별당하고 배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사회경제 구조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별과 배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Ⅲ. 기업 안에서의 노동불평등 사례

1. 청소하청업체

프랑스에는 2010년 기준 12,000개의 청소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40만 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청소업체들은 15년 전부터 특히 역, 공항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혹은 사립기관 등에서 2주에서 4주 정도의 많은 파업과 분규를 겪고 있다. 호텔업계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코르(Accor) 그룹과 그룹의 파리 지부 호텔 청소 75%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아르카드(Arcade)의 갈등을 시발점으로,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장기적인 파업, 2004년에는 아코르 그룹의 메르퀴르(Mercure) 호텔에서 단기적인 파업이 있었다. 또한 2005년 5달간의 파업이 작은 하청 체인 아스토르(Astor)의 한 업체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그룹은 용역업체의 하청 시행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¹⁴⁾ 아스토르는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인 앵테림(Interim)과 불법적인 하청계약을 맺음으로써 5만 유로를 파업자에게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¹⁵⁾

14) Odile Merckling, *Femmes de l'immigration dans le travail précaire* (L'Harmattan, 2011), p. 167.

15) *Ibid.*, p. 187.

2010년에는 콩코드-루브르(Concorde-Louvre) 그룹에 속하는 특급호텔인 콩코드 호텔 산하 콩코드 몽파르나스(Concorde-Montparnasse)호텔에서 하청업체 46명의 여성들이 2일 동안 파업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하청업체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을 정식 호텔 직원에 통합시켜주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의 요구는 당연히 무시되었고, 대신 1년이 지난 첫 번째 달 100유로의 임금 인상과 25개 대신 16개의 방청소를 7시간 내에 해야만 하는 아주 조금 가지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또한 콩코드 라파리에트에서는 계약직 직원과 방학 동안 일하는 여분의 엑스트라 근로자 사이에 임금 불평등을 강요하였다.

그렇다면 왜 하청이 발전하는가? 1985년부터 하청업이 상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가속화되었다. 10년 만에 하청업체 각 지점의 총매출은 52%가 상승했으며, 소속 근로자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관광업의 발전으로 인해 호텔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호텔규모의 몸집불리기라는 강한 열망에 부응하여 체인 호텔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3성, 4성급 호텔에는 준수해야 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업협약이 존재하는데, 호텔은 이러한 협약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청소업체의 외주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취해진 외주화는, 특히 청소 또는 경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경향으로 곧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확장은 특히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많은 안정적이고 법제적인 일들을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야는 초기에 남성적인 노동력을 대표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은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들의 몫으로 대변된다. 이들에게는 평등권이 보장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할 수 없는 여러 장치들과 근로자들의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L.1224) L. 122-12조항에 의거한 고용협약의 조건을 보면, 계약이 다른 회사에 의해 진행된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사회적 이득과 그들이 확보했던 기업에서 누리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3년마다 발주업체는 새로운 공급처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원하는 기업들은 저임금으로 계약을 재개한다.¹⁶⁾ 매년 새로운 업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노동자들의 정원을 줄이고, 현장을 다른 직원들로 교체시킨다. 이는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전근과

한편 1980년대 이후 호텔 분야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지점들의 오픈과 함께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들은 종종 모회사의 규약 밖에 머물러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코르 호텔그룹 안에는 6개의 별도 체인이 있으며, 체인지부와 체인에 의존적인 호텔의 청소는 하청 상태에 있다. 프랑스로용연구센터(CEREQ)연구에 따르면, 방청소의 용역화는 프랑스호텔의 1/3을 차지한다. 아코르 그룹의 인력자원부서는 2002년에 이 그룹 호텔의 1/4이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파악했고 파리 지역의 호텔 대부분은 하청업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표했다.

이런 호텔과 대규모 기업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업체에서 노동력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합병이 성사되면서, 청소업체 한 곳에서만 근로자가 22,000명을 상회하고, 노동자들은 부문별 근로자의 94%를 차지하고, 그 중 여성이 65%에 달한다. 근로자들의 32%는 이주민이며, 69%는 학위미소지자이다. 일드프랑스 지역의 경우 프랑스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근로자의 69%가 이주민이며, 임원급 직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봉급자들은 해외 출신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민 가족 출신자들의 20%를 상회한다.¹⁷⁾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자의 2/3가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다. 2003년 말에 이 분야는 375,000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이를 환산하면 정규직 전일제 근무자 234,000명에 맞먹는 숫자이다. 일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는 시간은 하루에 단지 15%이다. 그들은 평균 8시간에서 18시간 일을 하는 데에 비해, 근로자들이

16) *Ibid.*, pp. 168-169

17) *Ibid.*, p. 172.

평균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이다.¹⁸⁾

청소업체의 CNT조합의 노동관리를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청소 분야에서 이주여성의 참여는 현저하다. 그들은 주로 산업체보다는 호텔업체와 병원 근무, 철도객실청소가 많다. 파리버스업체나 기차에서는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많았는데 최근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TGV 객실 청소 부문에서 그룹 P 지부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3451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 중 64%가 여성이고, 전일제 정원은 708명이며, 762명의 특정기간계약직원(CDD)이 있다. 같은 해 채용 89%가 특정기간계약직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3년 미만의 근속연수자가 2700명이며,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반나절 노동자로서 해외 출신의 이주민이 대부분이다. 국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경우 1300명 프랑스인, 유럽연합 출신 외 지역이 1100명, 유럽연합 출신이 300명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 80%가 귀화한 자들로서 대부분은 마그레브인이거나 블랙아프리카 출신이다.

호텔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 문맹이다. 직원 승진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근무해야 승진이 이루어진다. 예전에는 20년 정도였는데, 최근에 10년 정도로 많이 단축되었다. 그들의 학력을 조사해보면,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자들이 채용되는데 보통 bac(대학입학자격시험)+ 2이거나 혹은 더 높은 경우가 있으며, 교육받은 이들은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에 여기서부터 노동차별의 갈등이 더욱 배가 된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이 청소업체에서 근무하기는 쉽다. 특히 공공분야나 국가 방위업체에서 일을 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몇몇 고객들이 독단적으로 프랑스 국적자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지시사항들을 읽을 수 있는 자를 요구하며, 여러 형태의 작업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간부가 될 수 있는 자를 선호한다.¹⁹⁾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요통이나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연장자들로서 빈번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업무 중 사고, 특히 낙마와 같은 사고는 종종 빈번하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알레르기나 암 같은 몇몇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물질과의 연관성이

18) *Ibid.*, p. 173.

19) *Ibid.*, pp. 174-175.

다분하여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호텔 형태에 따라 방을 청소하는 여성들의 노동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청용역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노동의 초과착취는 하청업체에 속한 여성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매우 빨리 소진되는 육체적 노동의 희생자 기능을 담당한다. 호텔업의 경우 성수기 같은 계절별 특정기간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주로 관광 성수기에 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용된 성수기노동자의 경우 일요일 노동은 다른 평일 임금처럼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²⁰⁾

게다가 호텔 직영 소속 직원과 용역파견 근로자간의 분리는 아주 강력히 이루어지고 다른 범주의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대부분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 화려한 호텔에서 룸청소 담당자들은 호텔 직원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일부 층에 고립되어 일하게 된다. 특히 작은 체인에서 임금을 받는 여성들은 노동조건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들은 노동업무의 외주화라는 끊임없는 위협에 처해있고,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심받고, 또 스스로 조합설립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문맹이며 이를 악용하여 룸메이드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하청업자 경영진은 테스트를 거치고 보다 덜 교육받은, 즉 읽거나 쓰는 것을 잘 못하는 여성을 선호한다.²¹⁾

이제 이러한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자각, 파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체인호텔인 아코르드 호텔 안에서의 갈등은 아주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녔다. 이 갈등은 아코르드 그룹 내에서 하청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회사는 그 당시에 파리에 있는 그룹의 호텔 청소 3/4을 담당하였다. 이 기업의 35명이 2002년 파업을 하였고 그들 중 20명 정도가 2003년 4월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작업속도 절감을 쟁취하기 위해 근로자의 품위유지의 중요성과 아코르드 호텔 안에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는 파업을 감행했다. 실제로 호텔 직영 직원들이 8시간 일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시간당 3,5에서 4개의 방청소를 강요당했고, 총 6시간 내에 21개 방을 청소했다. 그들은 방

20) *Ibid.*, p. 178.

21) *Ibid.*, p. 179.

전체를 담당했는데, 계약은 하루 5시간으로 청소해야 할 방들이 매일, 매주, 매달 다르게 배치되었다. 청소한 방 하나 당 임금은 2유로였다. 8명의 파업자들은 호텔 앞에서 시위한 파업 한 달 뒤 중대 실수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요된 작업강도는 비합법적 노동시간으로 취급되었고 그렇기에 아주 적은 임금을 받거나 혹은 전혀 급여로 계산되지 않았음을 폭로하였다. 전일제 노동은 거의 반나절 노동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몇몇 호텔 방에서 고객이 주는 봉사료가 오히려 더 높았던 것에 비해 룸메이드 급여는 대조적으로 형편없었다.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적 노동계약은 일상적인 노동시수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르카드는 노동계약의 불법과 조합의 차별성으로 인해 진행된 소송을 통한 법적 압박에 굴복, 결국 2003년 2월 21일 파업이 종결되었고, 파업자들의 모든 계약시간은 월 130시간으로 정해졌다.²²⁾

그러나 또 다시 2004년 5월 초과시간 문제로 인해 SUD 조합대표자들의 해고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근로해고자 대표들은 조합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을 다시 시작했다. 8년 전부터 같은 호텔의 방청소를 담당했던 해고 대표자는 아코르 그룹의 현장(chart)과 파업 종결의 동의사항 적용을 확인하였다.²³⁾ 그 결과 아르카드에 의해 적용된 것은 실제 동의내용의 어떠한 점도 없으며, 이루어진 개선은 파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단지 30명의 여성에게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03년 말부터 매달 지급되지 않은 노동시간과 연말 수당 등 새로운 문제들이 떠올랐다. 게다가 회사의 사주가 파업 이전과 같은 조건 속에서 여성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다른 명칭의 회사를 새롭게 설립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기업은 조합대표자의 해고에 대한 많은 서류상 법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노동감독기관과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파업지시위원회는 호텔 내의 조합권리를 승인해주지 않는 호텔의 비합법적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1년 동안 활동을 재개했다. 아코르 그룹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함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지시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파업은 아코르 그룹의 정식 근로자정원에 아르카드 파업자들이 통합되어야함을 주장하는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22) *Ibid.*, pp. 184-185.

23) *Ibid.*, p. 185.

결론이 났다. 결국 그룹 인력자원부는 2004년 6월 4일 언론 앞에서 그룹이 방청소 담당근로자들을 정식직원에 편입할 것이란 점을 공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전에 파업했던 자들이 아코르 그룹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용되어야 했지만, 이는 결코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하청업체들이 이런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아코르 그룹 지도부는 또 다른 하청을 알아보고 파업 이전의 하청관행을 그대로 재개하였다. 단지 일부 특급 호텔만이 방 청소 담당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이 이후에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시행하는 하청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6년 12월에 바뇰레(Bagnolet)의 노보텔에서는 새로운 파업이 15일간 지속되었으며, 파업자들은 여기서 승리를 거두었다. 파업자들은 시간당 2.5개 방을 청소하는 등 약간의 휴식과 함께 여러 수당들의 혜택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그룹 경영진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장기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⁴⁾

2. 식품유통업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주민들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파리와 마르세이유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도 상점의 규모에 따라서 노동행태가 다르게 진행된다. 대규모 상점들은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수여하며, 비유럽계 프랑스인이거나 귀화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상점과 도심 속에 정착한 할인 상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대규모 유통업체, 특히 슈퍼마켓이 많은 분규를 겪고 있다. 이런 유통업체 중에 카르푸(Carrefour) 그룹은 50개 이상의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고, 혜택이 많은 근로자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조항들은 10년 전부터 감소되고 있다. 2004년 마르세이유 북쪽 지역의 슈퍼에서의 파업을 시작으로, 2005년 3월부터 5월 파업의 물결이 지속되었다. 2006년에는 로지스틱(창고관리, 배달) 분야가 900명의 해고를 단행하였다. 파업의 전개와 함께 결국 ‘에스푸와르 방리유(espoir banlieue)’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업체들은 민감한 지역의 젊은이들을 전문직 또는 직업 인턴 계약으로

24) *Ibid.*, p. 187.

참여시키기로 하고, 익명의 후보자 서류에 바탕을 둔 고용을 실시, 민감한 지역의 디플로마를 갖춘 젊은이들을 고용하였다.²⁵⁾

최근에 많은 체인점을 갖춘 파리의 슈퍼 중에서 모노프리(Monoprix) 근로자들은 200유로의 확실화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시간의 통합지급과 불안정한 시간제 고용계약자 중에 자질있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새롭게 채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전일제 근무가능성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관리방법을 이유로 파업을 단행,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과 이야기할 것들을 거부한 디렉터의 교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²⁶⁾ 이러한 유통업계에서도 이주여성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대규모 유통업계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기초노동자들의 2/3을 차지한다. 근로자들은 다소 젊은 편이고 (평균 37세), 9년 정도 복무했다. 시간제 일을 하는 근로자의 34% 중에 여성이 54%를 차지한다. 그들 중 80%는 아침 7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38%는 저녁에 근무를 수행한다. 체인에 따라 수납직원들은 분 당 20개의 품목을 계산대에서 통과시켜야 한다.²⁷⁾ 이들은 수적으로 1980년대 이후 급상승하여 상업 분야에서 이주민 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 분야에서 이주민 여성 13%가 일을 하고 있고, 일드프랑스 지역에는 16%의 여성이 이주민이다. 그들은 기본 학습을 받은 자들로, 프랑스어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말을 할 수 있는 프랑스어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지만, 때때로 훨씬 높은 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있다. 슈퍼에서 지배적인 여성 노동직종은 특히 수납직과 판매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 90%를 차지한다. 여성 비율이 체인에 따라 50에서 90%까지 다양하다. 상점 내에서 진열을 담당하는 이주여성들은 내내 감시의 대상이다. 지도부는 늘 계약직 시간제들을 고용한다. 인턴사원, 임시직 혹은 보조계약의 젊은이들 같은 특정기간계약직원들은 여름과 연말, 세일 기간에 증가하지만, 이마저도 2008년에는 없었다. 퇴직을 하면 대신할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그만큼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25) Odile Merckling, *Parcours professionnels de femmes immigrés et de filles d'immigrés* (L'Harmattan, 2012), p. 197.

26) *Ibid.*

27) *Ibid.*, p. 199.

노동강도가 강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수납이 자동화되면서, 직원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²⁸⁾

한편 노동의 불평등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 부문이다. 노동 조건은 종종 지리적 이동의 수락을 조건으로 승진을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여성들이 슈퍼에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일터가 바로 그들 집 근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은 여성에게 거의 접근 불가이며, 이주자 출신 근로자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²⁹⁾ 게다가 지도부는 각 지역에 위치한 진열상점으로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이동은 근로자의 일상적 삶의 구조를 변형, 왜해시키며, 종종 해고 혹은 사임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주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하고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mère isolée) 2세의 정서적 불안감을 키운다. 입법은 이런 점에서 근로자에게 차라리 불리하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³⁰⁾

에스원(S1) 그룹의 경우 중간관리자격인 진열팀장이 더 나은 자리로의 승진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할 때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 휴식은 15분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적 모독과 인격적 모독이 행해진다. 에스투(S2)에서는 그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형편을 잘 아는 한 이사가 3명의 결혼한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주민 여성들을 성폭행하였다.³¹⁾ 이러한 유통업체에 최근 근로자들의 해고가 줄을 잇는다. 소매치기, 수납실수 혹은 개인적인 물품 구입을 위해 고객이 남긴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수납실수는 반복적으로 근로자해고에 유용한 구실이 된다. 종종 이민자 출신들은 의심받으며 탓에 빠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잔돈을 일부러 요구하는 가짜 고객을 보내기도 하며, 그곳에서는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28) *Ibid.*, p. 201.

29) *Ibid.*, p. 213.

30) *Ibid.*

31) *Ibid.*, p. 215.

행동을 감시한다.³²⁾ 특히 할인쿠폰과 관련한 해고활동은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 특히 전일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어난다. 노동총연맹(CGT)의 대표자였던 하시바(Hassiba)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에스원에 22살부터 근무했던 49세 알제리 가족의 어머니인 그녀는 2008년 2월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 판매물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결국 무죄가 증명되었지만, 이러한 씩씩한 행태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³³⁾

3. 레스토랑-패스트푸드 업계

이제 위의 이주민 여성들의 후손인 2.3세대의 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자. 특히 프랑스 제도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60년대 이후 출생한 이민자 2.3세대는 실업자 처지와 함께 고용불안정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적 소외대상이 되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등 사회통합정책의 결핍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3세대가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 레스토랑, 그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업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가 극히 적은 아르바이트 같은 작은 일의 총칭을 뜻하는 맥잡(Mcjob)이라는 신조어가 2000년 이후 나타나면서 고용불안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스믹(SMIC-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며,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은 1000유로 세대(milleuriste)³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기업에서의 근속연수와 함께 별로 승진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도 근로자들의 훨씬 높은 학위수준은 조합활동과 쟁의 발전에 우호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³⁵⁾ 이러한 맥잡은 지난 20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해왔는데, 근로자의 평균 60%가 여성이다. 파리 지역에서는 이주민 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2) *Ibid.*, p. 217.

33) *Ibid.*, p. 218.

34) 학위가 있는 근로자들로서 임금이 전일제 일을 해도 1000유로 정도 밖에 못 받는 근로자들을 지칭.

35) Odile Merckling, *Femmes de l'immigration*, p. 225.

2008년 출신별 이민자 아버지의 딸들의 사회직업별 그룹

범주	독립직업	임원	중간전문직	고용인	숙련고용인	노동자
이민자의 딸들	3	9	22	55	26	11
알제리	3	7	17	58	25	14
모로코와 튀니지	2	10	22	57	28	10
사하라아프리카	0	5	27	62	34	7
터키	2	1	10	57	25	31
포르투갈	5	9	18	59	29	9
스페인	6	7	24	54	26	9
DOM(해외도)	3	10	29	52	33	6
대다수 국민	4	13	24	49	26	10
총계	4	12	23	50	24	11

출처- INED와 INSEE, Enquête Trajectoires et origine, 2008.

2000년 초 갈등 이후 그룹 경영진은 채용방식을 변경하여 레스토랑에서 직업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는 학위가 부족한 젊은이들의 채용보다는 학생들의 채용과 외국인 대학생을 그만큼 선호하게 되었다.³⁶⁾ 그러나 외국인들 중에는 체류증 문제가 있고 보통 3개월의 노동 허가를 받고 있다 보니 기업은 짧은 기간의 계약을 하게 된다. 노동법상 그들은 17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5시간의 계약을 진행한다. 그들이 17시간 일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업은 그렇게 해서 사회적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러나 2008년의 불법체류자들의 파업에 의해 전통적 레스토랑들이 타격을 받은 이후 파리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인이거나 정기적인 상태의 이주민들이고, 많은 이들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 가정 출신의 젊은이들이다. 파리의 스트라스부르생드니(Strasbourg Saint-Denis) 맥도날드 지부의 파업근로자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디플로마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최근 변화로 적어도 Bac+2 이상의 학위소지자 이주민 채용이 급증했다. 레스토랑의 한 지배인은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디플로마를 갖고 있지만 1600유로를 받는다. 몇 년 전부터 이주자 출신의 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고, 근속연수도 인정받게 되었지만 매니저가 된 팀원은

36) *Ibid.*, pp. 228-229.

회사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관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곧이어 그들의 동료들과 훨씬 어려운 갈등관계에 부딪히게 된다.³⁷⁾

이런 레스토랑 분야에서 2000년대 급성장한 빙(Bip) 레스토랑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주민들의 면모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업체의 정원 상승은 이주 노동력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고용인들 중에 이주민의 몫이 20~2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시간과 노동관리는 어떠한가? 시간측면에서 연장근무가 빈번하고, 하루 중 근로자에게 두 번의 교대시간이 있으며, 각 팀들은 근무의 시간으로 정상 시간의 20%까지 잔업을 시행한다. 호텔업무와 레스토랑 업무에서는 35시간의 입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주당 기간은 39시간까지 협약을 이유로 남아 있다. 시간은 빙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보다 약간 상위이고 근로자는 600 유로를 받는다. 근로자 대부분은 시간제 일을 수행하며, 빙 레스토랑 근로자의 10%만을 차지하는 간부들에게만 전일제 근무가 적용된다.

레스토랑에서 여성들은 주로 홀, 계산대 그리고 고객부서 혹은 안내부서에서 일을 한다. 간부는 법정 최고시간인 48시간을 넘어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 없이 종종 60에서 70시간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직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들 대부분은 승진을 기다리기 이전에 떠난다. 매니저의 대부분은 간부가 아니고 단지 1600 유로를 벌 뿐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불평등은 몇 년 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2000년 초에는 간부급이거나 마스터 급에 여성이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³⁸⁾

근로자의 성별 정원변화율(%)

	2000년 말		2003년 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용인	42,2	57,8	49,3	50,7
숙련직원(마스터)	67,0	33,0	57,1	42,9
간부	75,3	24,7	73,2	26,8
총계	45,1	54,9	50,6	49,4

출처: 일드프랑스 Bip de restauration rapide 기업

37) *Ibid.*, p. 231.

38) *Ibid.*, p. 2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다양한 시간상의 이유와 늦은 시간의 노동배정을 강요하여 이주여성정원은 감소했다. 게다가 이들은 종종 차별적 이유로 일부 레스토랑에서 배제된다. 레스토랑의 경영진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근로자의 압력에 덜 저항하기에 승진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가 책임감을 지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육아를 보살펴야 하는 여성의 육아시간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나가며

위의 세 가지 직종별 분석을 통해 다소나마 현장에서 이주여성들이 차별받는 여러 행태들을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적응을 하는 데는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 결과 빈곤의 여성화가 표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주 여성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지위의 부재라는 이중적 정체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자기 문화 공동체의 고립과 소외로 빈곤층의 일원이 되기 쉽고, 인종차별, 성차별, 교육과 훈련의 기회부족으로 인한 사회참여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한다.³⁹⁾ 현실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또 하나의 사회균열의 원인과 함께 사회통합에 커다란 장애역할을 하고 있다.⁴⁰⁾ 물론 이 문제가 비단 이주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늘날 취업활동에 나서는 노동인구 전체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라는, 또 한편 그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개혁 그리고 실제적인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의 여성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차원으로 새롭게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39)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19-20쪽.

40) 같은 논문, 24쪽.

프랑스 기업 내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평등 실태

경주대학교, cliobleu@naver.com)

주제어(Key Words):

하청업체(Subcontractor), 마그레브 이주여성노동자(Maghreb Female Migrant Workers), 노동불평등(Labor Inequality), 맥잡(Mac-Job), 여성의 빈곤화(Impoverishment of Woman)

(투고일: 2016. 05. 06, 심사일: 2016. 05. 06, 게재확정일: 2016. 05. 17)

<국문초록>

프랑스 기업 내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평등 실태

최 향 란

본고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마그레브계 출신 이주 여성노동의 불평등상황을 전 세대를 아울러 점검해보았다. 사회적 통합보다는 2000년대 이후 기업 안에서 행해지는 직접적 불평등 실태와 장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았다. 주요 분석대상은 호텔과 연관된 청소하청업체, 식품유통업계와 일부 레스토랑 부문이다. 이 직종들은 이주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행해지는 고용불안정과 젠더와 연결된 불평등 취업분석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적응을 하는 데는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 결과 빈곤의 여성화가 표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할 수 있다.

<Abstract>

Title: Employment Inequality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the French enterprises

CHOI Hyang-Lan

This article examined inequality of maghreb female migrant workers in France through first generation to third one. It focused on the direct inequality conditions and obstacles occurred into the enterprises after 2000 years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 The main analysis points are the cleaning subcontractor enterprises related with hotels, food distributors and a few restaurants fields. Because these areas are ones in which most of female migrant workers easily spread and participate. Through this job analysis related gender and employment instability conducted in these fields, we can take note it exists private and social-structural limit for women to socio-culturally adapt, and consequently that impoverishment of women turns up and accelerates.

■ 특집 ■

광기와 통제: 20세기 초 미국의 정신이상 이민자 여성 추방 사례

신지혜

I. 서론

1908년 5월,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인 22세의 로잘은 뉴욕의 엘리스 섬에서 고향으로 추방되었다. 추방의 이유는 정신병이었다. 로잘은 입국 시인 1907년 3월 아무런 문제없이 의료 검사를 통과했으나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렌튼의 뉴저지 주립 정신병원에 보호대상자-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정부에 의존하는 환자-로 수용되었고, 병원 측은 이민국에 로잘의 사례를 보고했다. 추방 수속을 밟기 위해 로잘을 진찰한 엘리스 섬 이민국의 의료 검사관은 “정신이상으로 진단하기에는 현재 병세가 보이지 않으며 정신이 또렷”하나, “항상 신경질적이고 흥분하기 쉬웠으며, 남자 형제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로잘 본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정신병이 “이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던 점, 병원 기록, 그리고 가족력을 바탕으로, 로잘의 정신병이 14개월 전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녀를 추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통역사의 부재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의료 검사관의 보고는 로잘을 추방하기에 충분했다. 콜로라도에 거주하던 오빠도 추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로잘은 결국 옷 몇 점과 함께 헝가리의 아버지에게로 보내졌다.¹⁾

1) File 51967/181, Entry 9, RG 85, NARA, DC. 로잘의 인종(race)은 “Magyar”로 기록되었다.

로잘이 추방되기 1년 전인 1907년, 엘리스 섬 공중보건국 해사병원부(U.S. Public Health and Marine Hospital Service) 의무관보인 토머스 W. 새먼은 “이민과 정신병 만연의 관계”라는 글에서 동유럽과 남유럽 출신 ‘새 이민자’와 정신병 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새먼은 “정신병환자 비율의 증가와 병원 수용자 중 외국인 태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는 명백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 미국에 도착하고 있는 정신이상 이민자와 가장 최근 공공 기관에 수용된 외국 태생 환자 수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²⁾ 그는 여성 이민자가 남성보다 더 미치기 쉽다는 짧은 설명을 덧붙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932년 노르웨이의 정신과 의사 O. 오데가르드는 미국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이민자의 정신병원 수용률과 이주하지 않고 본국에 머무르고 있는 노르웨이인의 수용률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타고난 기질로 인해 정신병을 앓게 된 남성과 달리 노르웨이 이민자 여성의 정신병은 이민 과정과 경험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강조했다. 오데가르드는 여성의 정신병 발병률이 남성보다 낮긴 하지만, 이민자 여성의 경우 정신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나 남자 가족을 따라 원치 않는 이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³⁾ 1983년, 역사학자 헤시아 R. 다이너(Hasia R. Diner)는 저서 *Erin's Daughters in America* 중 아일랜드 여성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관한 장에서 이들의 정신병에 대해 살폈다. 다이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내 상당수의 여성 정신병환자가 아일랜드 출신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여성은 형제들보다 이민자로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향수병에 더 시달렸다. 실제로 1908년까지도 아일랜드 총 정신병환자의 2/3가 여성이었으며, 여전히 아일랜드 출신이 미국 정신병원의 외국 태생 환자 중 가장 큰 그룹을 형성했다.”⁴⁾ 다이너는 아일랜드 여성을 억압한 특수한 상황—가족과의 이별, 가난으로 점철된

2) Thomas W. Salmon, “The Relation of Immigration to the Prevalence of Insanity”, *American Journal of Insanity*, (1907), p. 54.

3) O. Odegaard, “Emigration and Insanity,” *Acta Psychiatrica et Neurologica*, supp. 4 (1932): pp. 1-205. 미국에도 잘 알려진 오데가르드의 연구는 이민과 정신병에 대한 후속 연구에 자주 인용되었다.

4) Hasia R. Diner, *Erin's Daughters in America: Irish Immigrant Women in the Nineteenth Centu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p. 110.

결혼생활,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사별 등—으로 인해 이들이 공공 기관 수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이너에 의하면, 고향과 계속 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들에게 정신적인 짐을 지웠다.⁵⁾

새먼, 오테가르드, 다이너의 연구에 따르면, 로잘은 여성이 겪게 되는 이민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성과 정신병이라고 하면 히스테리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중, 상류층 백인 여성의 질병이었던 히스테리는 이민자 여성에게 해당되지 않았다.⁶⁾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 만연했던 여성과 정신병의 관계를 보여주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 여성의 광기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과 정신병에 대한 논의와 달랐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민자 여성은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이민자 남성의 부수적인 존재로 그려졌고, 이들의 정신병 또한 여성이라는 내재적 특징과 경제적 의존성을 통해 정의되었다. 이 외에도 새먼, 오테가르드, 다이너의 연구는 이민자 여성의 정신병이 포착되어 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로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 여성의 정신병은 이민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예를 넘어서, 미국 정부가 이민 제한 및 추방 정책으로 통제해야 할 국가적 문제였던 것이다.

5) Maureen Perkins, “Thoroughly Modern Mulatta: Rethinking ”Old World“ Stereotypes in a ”New World“ Setting”, *Biology* 28, no. 1 (Winter 2005): pp. 104-16. 퍼킨스는 혼혈이 “두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력과, 이들이 소설이나 대중적인 생각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정형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민자에게도 해당된다.

6) 병원 기록이나 추방 사례를 통해 당시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민자 여성 중 히스테리 진단을 받은 이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스테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Laura Briggs, “The Race of Hysteria: “Overcivilization” and the “Savage” Woman in Late Nineteenth-Century Obstetrics and Gynecology,” *American Quarterly*, 52, no. 2 (June 2000), pp. 246-273; Andrew Scull, *Hysteria: The Disturbing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이민국의 이민 정책과 의료 검사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⁷⁾ 그러나 이민 제한 담론과 정신병 담론의 수렴을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정신병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이민국에서 추방된 이민자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국경 이민국의 이민 통제와 제한이 부각되긴 했지만 전체 추방자 중 오직 소수만이 의료 관련으로 추방되었고 대부분은 입국 심사를 통과하여 미국에 정착했다. “입국이 보통이고 거부하는 예외”였던 것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과 이민의 관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당시 미국에 팽배했던 공포와 우려를 반영하며 이민국은 물론 미국 대중의 관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로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병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통제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보호대상자가 된 이민자 환자의 추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이민자의 정신병은 미국 모든 주에 깊숙이 침투한 원치 않는(undesirable) 외국인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미국 정부에 지운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정신병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민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성역할이 정신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병은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었다.⁹⁾ 이민자 여성의 경우, 노동 및 경제적 능력의 유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편이나 남자 가족 없이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여성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민의 자유와 정착의 기회를

7) Alan M. Kraut, *Silent Travelers: Germs, Genes, and the “Immigrant Mena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Howard Markel, *When Germs Travel: Six Major Epidemics that Have Invaded America and the Fears They Have Unleashed* (New York: Pantheon Books, 2004); Amy Fairchild, *Science at the Borders: Immigrant Medical Inspection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Industrial Labor For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Nayan Shah, *Contagious Divides: Epidemics and Race in San Francisco’s Chinatow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Deidre M. Moloney, *National Insecurities: Immigrants and U.S. Deportation Policy Since 1882*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8) Alan M. Kraut, *The Huddled Masses: The Immigrant in American Society, 1880–1921* (Wheeling, IL: Harlan Davidson, Inc., 1982), p. 59.

9) 역사적으로 매춘은 “내재적 광기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다. Sander Gilman, *Difference and Pathology: Stereotypes of Sexuality, Race, and Madnes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 71.

박탈당하곤 했다.¹⁰⁾ 남성 이민자 또한 다양한 통제 기제의 영향을 받았다. 정신적, 신체적 결합은 입국 금지의 이유였고, 범죄나 무정부주의 활동, 일부다처제 등도 여성 이민자보다는 남성 이민자에게 더 큰 문제였다. 이렇듯 남성 이민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민과 정신병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성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당시 젠더와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이들의 이민 및 추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 내 여성의 정신병과 재생산 능력의 관계, 엘리스 섬 이민국의 정신병 검사, 그리고 유럽 출신 이민자 여성의 이민 제한 및 추방 사례를 통해 이민 담론과 정신병 담론이 수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당시 정신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우생학이 인기를 얻었지만, 이민자 여성이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민국의 정신병 관련 의료 검사와 추방은 이민자 여성이 처한 현실이 아닌, 이들에 대한 미국의 편견과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민법은 젠더 중립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이민 제한이나 추방에 있어서 “성(性)적 도덕성,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공중보건”이라는 조항은 여성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¹¹⁾ 이민자 여성의 정신병은 후대의 퇴행과 관련된 재생산 능력, 그리고 여성의 경제 및 노동 능력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수렴되는 좋은 주제였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여성의 광기를 통제함으로써 이민 제한과 추방의 편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II.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정신병과 그 정의

반(反)정신과의사(anti-psychiatrist)로도 불리는 토머스 사스(Thomas Szasz)는 1994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A Lexicon of Lunacy*에서 “영어권

10) Donna Gabaccia, *From the Other Side: Women, Gender, and the Immigrant Life in the U.S., 1820-199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Deirdre M. Moloney, “Women, Sexual Morality, and Economic Dependency in Early U.S. Deportation Policy”, *Journal of Women’s History*, 18, no. 2 (2006), pp. 95-122.

11) Moloney, *National Insecurities*, p. 33.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사실상 모든 종류의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행동,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자는 누구든 “미쳤다”고 규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¹²⁾ 정신병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스의 주장은 정신병을 앓았던 개개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여겨진 이민자 여성이 실제로 의학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신과의사나 의료 검사관의 의학적 자질이나 인도주의적 의도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¹³⁾ 따라서 여기서는 정신병의 실체에 대한 논의를 떠나 정신병의 정의가 당시 이민 문제와 어떻게 결부되었으며, 특히 이민자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정신결함(mental defect)은 흔히 백치, 정신이상(insanity), 그리고 정신박약을 칭했다. 정신이상 혹은 정신병(insanity)¹⁴⁾이란 단어가 지칭하는 정신결함의 범위는 매우 넓었다. 1898년 뉴저지의 변호사 에드윈 로버트 위커는 ‘광기어린(lunatic)’과 ‘정신이 이상(insane)’하다는 두 용어가 “정신이상(insanity)의 모든 종류를 포함하며, 백치를 제외한 정상이 아니고 건강치 못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기가 어리고(lunatic) 정신이 이상한(insane), 그리고 건강치 못한 마음을 지닌 자는 모두 “정신이상자(insane persons)”라는 명칭 하에 정신병원에 수용될 것”

12) Thomas Szasz, *A Lexicon of Lunacy: Metaphoric Malady, Moral Responsibilities, and Psychiat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3), p. 46.

13) 뉴저지 주립병원의 헨리 코튼(Henry Cotton) 같은 정신과의사-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들의 이를 뽑았다-도 당시 기준으로 환자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노력한 인도주의자였다. 코튼과 그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ndrew Scull, *Madhouse: A Tragic Tale of Megalomania and Modern Medic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Mary de Young, *Madness: An American History of Mental Illness and Its Treatment* (Jefferson, NC: McFarland, 2010).

14) 이 문단에서는 각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insanity를 ‘정신병’이 아닌 ‘정신이상’이라고 번역했다.

이라고 덧붙였다.¹⁵⁾ 법률 상 정신병(lunacy), 광기(madness), 정신이상(insanity), 정신질환(mental illness), 정신장애(mental disorder) 등은 혼용되었다. 일례로 매사추세츠 이혼 법에서 정신병은 “정신이상의 정도나 특징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신적 문제를 가리켰다.¹⁶⁾ 이민국도 법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민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면 정확하고 과학적인 병명을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정신병인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었다.¹⁷⁾

이와 달리, 정신의학 분야를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려던 미국 정신과의사 및 정신병원장은 모든 단어와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분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립 병원의 1910년 연간 보고서가 기록한 정신질환(mental disease)은 뇌장애(brain disorder), 알코올 중독(alcoholic intoxication), 약물성 정신병(drug psychosis), 섬망증(delirium), 조울증(manic depressive insanity), 기타 우울증, 편집증(paranoic condition/paranoia), 조발성 치매(dementia praecox), 신경쇠약(neurasthenia),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기질적 열등함(constitutional inferiority), 저능(imbecility), 정신쇠약(psychasthenia), 백치(idiocy), 히스테리성 정신병(hysterical psychosis) 등을 포함했다.¹⁸⁾ 이 보고서는 입원 환자들의 정신 질환을 야기한 원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분했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었다.¹⁹⁾ 여자 환자의 35퍼센트가 정신적 문제를 가진 반면, 남자 환자는 오직 16퍼센트만이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 수용되었다. 남자

15) Edwin Robert Walker, *Forms Concerning the Commitment of Patients to the New Jersey State Hospitals at the Authority and Direction of the Boards of Managers of the State Hospitals* (Trenton, NJ: The Brandt Press, 1898), p. ix. Rutgers Library Special Collections.

16) Alfred Gordon, “Insanity and Divorce”,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5, no. 4 (November 1914), pp. 544-554, p. 549.

17) U.S. Public Health Service, *Manual of the Mental Examination of Alien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8), p. 42.

18) *The New Jersey State Hospital Annual Report, 1910*, pp. 43-44. New Jersey State Archives.

19) Elaine Showalter, *The Female Malady: Women, Madness, and English Culture, 1830-1980* (New York: Pantheon Books, 1985).

환자의 경우, 알코올 및 관련 원인이 35퍼센트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기질적 열등함과 매독 등이 열거되었다. 여자의 경우, 알코올, 뇌장애, 출산, 폐경, 기질적 열등함, 건강 악화, 집안 문제, 그리고 걱정이 정신병의 원인으로 나타났다.²⁰⁾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원인은 정신병에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는 대중적 믿음을 반영했다. 남자가 폭력적이 되고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보이는 반면, 여자는 정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겪었으며 재생산 능력—출산, 폐경—으로 인해 정신병을 앓기 쉽다는 주장도 여전했다.²¹⁾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나 자살 충동 외에도 짜증, 신경쇠약, 흥분, 심지어는 조용함까지 여성의 정신병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다. 주변 환경이나 옷 입는 방법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도 정신적 문제를 암시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에서 여성의 정신병은 “중산층의 생활 기준을 따르는” 지 아닌 지로 결정되었다.²²⁾ 기존 사회의 규범을 강요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이민자의 이질성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정신병’ 자체의 정의 또한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인의 규범에서 어긋나는 이상행동을 보이는 이민자의 경우, 정신병 의심을 받기가 쉬웠다. 일례로 미국의 이민자 여성은 미국 중산층의 단정함과 청결함의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당시 엘리스 섬은 하루에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입국자에게 샤워를 강제했다. 이민자는 입국과 동시에 중산층이 열정적으로 장려한 청결함이 미국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²³⁾ 청결함의 중요성은 혁신주의 개혁운동과 균(germ)이론의

20) U.S. PHS, *Manual*, pp. 40-41.

21) Nancy M. Theriot, “Women’s Voices in 19th-Century Medical Discourse: A Step toward Deconstructing Sci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9, no. 11 (Autumn 1993): pp. 1-30. 1880-9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관 제거를 지지했다. 한편, 여의사들을 남자 의사가 여성의 정신병을 너무 쉽게 “자궁과 난소”와 연결 짓는다고 불평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신병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시의 믿음과 달리 여성이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22) Showalter, *Female Malady*, p. 84.

23) Suellen Hoy, *Chasing Dirt: The American Pursuit of Cleanli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87-121.

등장과도 연계되었는데,²⁴⁾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청결치 못하거나 단정치 못하다는 것은 이민자 여성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

III. 정신병, 이민, 이민통제

혁신주의 시대의 사회학자 케이트 홀러데이 클래그혼(Kate Holladay Claghorn)은 1923년의 연구에서 미국 이민법의 입국 금지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외국의 노동력이 기존의 노동력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선택적인 절차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²⁵⁾ 이 두 가지 이유는 이미 19세기부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원치 않는’ 이민자에 대한 우려는 이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위세를 떨쳤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의료 검사관과 이민관료는 정신병과 이민의 관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공공 기관 개혁이 처음 시작된 장소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주립 정신병원에 외국인 수용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불만이 대두했다.²⁶⁾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정신요법(moral treatment)—의학에 의존하지 않는 인도적인 방법²⁷⁾—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라 외국인 정신병환자의 치료 가능여부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1892년 뉴저지 주 트렌트 주립병원의 호레스 G. 웨더릴은 유럽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국에서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이 나라[미국]로 보내는 게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럽의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이 더해져” 정신병환자

24) Nancy Tomes, *The Gospel of Germs: Men, Women, and the Microbe in American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25) Kate Holladay Claghorn, *The Immigrant's Day in Court* (New York: Harper & Bros., 1923), p. 306.

26) Mary Ann Jimenez, *Changing Face of Madness: Early American Attitudes and Treatment of the Insane*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7), p. 133.

27) *Ibid.*, p. 116. 그러나 사혈을 하거나 구토를 시키는 등 신체적 치료법이 같이 사용되었고 진정제와 약물류도 처방되었다.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²⁸⁾ 외국인 정신병환자는 엘리스 섬이 자리한 뉴욕 주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한 신문 기사는 뉴욕 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만 별만큼 벌고 곧 돌아가 버리는” 외국인 정신병환자를 돌보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이민자 정신병환자는 노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와 연방정부에 장기적인 짐을 지운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우생학 또한 이민으로 인해 미국이 퇴행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했다. 필라델피아의 정신과의사이자 신경학자 알프레드 고든(Alfred Gordon)은 정신병과 이혼에 대한 1914년의 연구에서 이혼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방어이자,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자들의 출산에 맞서 사회와 인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³⁰⁾ 고든은 정신병과 관련된 경우 이혼을 허용해야 하며, 배우자가 미쳤다는 것이 밝혀지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혼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고든이 퇴행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옹호한 것과 달리, 20세기 초의 여성운동가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는 이민자, 흑인, 그리고 정신박약자의 산아제한과 단종(sterilization)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1919년 생어는 “적격자로부터는 더 많은, 부적격자로부터는 더 적은 아이를—이것이 산아제한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³¹⁾ 1930년대에도 생어는 이민 제한, 강제 단종, 일생동안 농장 일을 하도록 분리하는 방안 등, 정신박약자를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정책을 옹호했다.³²⁾ 1903년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인종자살’에 대한 연설은 차치하고라도³³⁾ 특정 인종적, 국가적 특징이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이민 제한으로 이어졌다. 혁신주의 시대를 맞아 과학적 관리를 추구하던 주립

28) Horace G. Wetherill, *The Insane and the Asylums* (Trenton, NJ: MacCrellish & Quigley, Book and Job Printers, 1892), p. 5. Rutgers Library Special Collections.

29) “Hope to Lessen Our Big Burden of Insane Aliens” (n.d.) File 52424/1, Entry 9, RG 85, NARA.

30) Gordon, “Insanity and Divorce”, p. 553.

31) Margaret Sanger, *Birth Control Review* (May 1919).

32) Dorothy Roberts, *Killing the Black Body: Race, Reproduction, and the Meaning of Liberty* (New York: Vintage, 1999), pp. 79–81.

33) *Ibid.*, p. 60.

기관은 수용 환자의 인종과 국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³⁴⁾ 이민자 환자 수용률이 높았던 주립병원들은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력에 정신병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엘리스 섬의 이민조사관과 관료 또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가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주의를 기울였다. 1920년대에는 이민과 정신병의 연관성이 널리 받아들여져 이민배척주의자 선전문, 정부 보고서, 정신과의사 논문, 그리고 공청회에 이 두 단어가 한데 묶여 쓰였다.³⁵⁾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정의이다. 유럽인이 중심이 되었던 20세기 초반의 이민사를 보면 ‘인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 모른다. 실제 피부색이 어땠든 간에³⁶⁾ 유럽의 이민자는 법적으로 ‘백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백인성 연구(whiteness studies)’를 바탕으로 유럽인들 사이의 ‘인종’적 차이를 고려한다.³⁷⁾ 앞서 언급했던 루즈벨트의 인종자살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의 ‘인종’은 오늘날 흑, 백 중심의 인종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여전히 차별과 차이를 내포했다. 미국의 기반을 닦은 서유럽, 북유럽 출신 이민자와 달리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남유럽이나 동유럽 출신-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이민자 등-은 인종적으로 다르며 열등하다는 편견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병을 앓는 ‘이민자’ 여성이 미국 인종의 적이 된 것은 당연했다. 이들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34) Elizabeth Lunbeck, *The Psychiatric Persuasion: Knowledge, Gender, and Power in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122-24. 당시의 ‘인종’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인종’의 개념과 다르다.

35) *Ibid.*, p. 122.

36) 이태리나 그리스, 러시아 이민자들도 당시에는 ‘dark’나 ‘swarthy’라고 묘사되었다.

37) 백인성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David Roediger,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 Verso, 1991); Noel Ignatiev,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 Routledge, 1995); Ian Haney-Lopez, *White by Law: The Legal Construction of Ra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6); Karen Brodtkin, *How Jews Became White Folks and What That Says about Race in America*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Peter Kolchin, “Whiteness Studies: The New History of Race in Americ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9, no. 1 (June 2002), pp. 154-173.

우려와 인종자살에 대한 공포는 정신이상 이민자 여성의 입국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합의로 이어졌다.

엘리스 섬 이민국에서의 의료 검사는 당시 공중보건에 대한 담론을 반영했다. 엘리스 섬은 유럽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항구였다. 미국 전역에 70여개의 이민 항구가 있었지만, 1892년에서 1924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90퍼센트는 엘리스 섬에서 입국 수속을 밟았다.³⁸⁾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한 혁신주의 시대 정부 관료는 엘리스 섬을 ““과학적 관리”라는 원칙의 귀감”이라고 칭송했다.³⁹⁾ 원치 않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고안된 많은 규율과 규칙 또한 20세기 초 미국의 이민자 통제와 규제정책을 확립했다.⁴⁰⁾ 이민자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시민이 되기에 부적합한 이민자의 입국을 처음부터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 추방은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민 제한과 추방 조항은 이민법의 개정과 함께 발전했으며 더 많은 이민자를 제한하고 추방하기 위해 더 까다롭고 엄격한 이민법이 소개되었다. 1891년에는 부랑자, 일부다처론자, 정신병자, 그리고 전염성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민자가 입국을 거부당했고, 1903년에는 간질병자, 입국한 지 5년 안에 정신병 발작을 한 번 일으킨 자, 거지, 무정부주의자, 매춘부를 데려오는 자, 그리고 “입국 전 5년 동안 미친 적이 있거나 입국 전 언제라도 두 번 혹은 그 이상 정신병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이 제외되었다. 추방 공소시효도 3년으로 늘어나 입국 시에 무사히 이민국을 통과했다더라도 3년 안에 범법 사실이 발견되면 추방 영장을 받았다.⁴¹⁾ 1907년 이민법은 저능, 정신박약자, 결핵환자, 범죄자, 그리고 “입국 시에 미쳤는지 아닌지

38) Alan M. Kraut,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Series A: Subject Correspondence Files”,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5.

39) Howard Markel, ““The Eyes Have It”: Trachoma, the Perception of Disease, the 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and the American Jewish Immigration Experience, 1897-1924.” *Bulletin of History of Medicine*, 74 (2000), pp. 525-560, p. 549.

40) 한편, 추방, 입국 통제, 의료 시설 미비 등과 관련해 엘리스 섬 이민국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이민자들은 이민국장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대변인을 고용해 엘리스 섬 이민국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다음을 참고. File 51462/4; File 52424/1, Entry 9, RG 85, NARA, DC.

41) 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2년이었다.

관계없이 전에 언제라도 정신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했다.⁴²⁾ 1917년에는 문맹테스트가 도입되었고 보호대상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민국에서의 간단한 검사로는 이런 제외된 계층,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이민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이민자가 미국까지의 긴 여정을 거쳐 결국 추방되고야 마는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민자를 제외하기 위해, 엘리스 섬의 이민청장 윌리엄 윌리엄스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항구에서 의료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국이 무능하다는 비판에 맞서, 미국 공중보건국 및 이민국 의료 담당자가 이민자의 정신질환을 문제없이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⁴³⁾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엘리스 섬의 의무관보 토머스 새먼은 당시 엘리스 섬에서 정신지체와 정신병을 진단했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동이 지나치게 활발하거나, 무심하거나, 거만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표정이 멍하거나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 경우, 그 이민자는 지체되어 자세히 조사를 받는다. 눈꺼풀을 들어 올려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입술이 떨린다거나, 정신지체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옷이 이상하다거나, 동공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옷에 특이한 장식을 달았거나—이 중 어떤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눈에 띄는 퇴행의 징표가 있는 경우 그 이민자는 더 자세한 조사를 받기 위해 구금된다... 나이든 사람은 예외 없이 조사하여 현재 정신지체가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데, 그 결과 때로 치매가 발견된다.⁴⁴⁾

이 글을 인용한 역사학자 앨런 M. 크라우트는 안구 분석법이 정신질환을 찾아내는 데 가장 자주 이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이민자의 얼굴 표정을 통해 정신병 유무를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국의 검사로 정신병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검사 과정에는 이민자의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도 반영되지 않았다.

42) Claghorn, *Immigrant's Day*, p. 307.

43) Letter dated October 8, 1923 to U.S. Department of Labor, File 54951/Gen, Entry 9, RG 85, NARA, DC.

44) 다음에서 재인용. *Kraut, Silent Travelers*, p. 71.

1907년에서 1910년까지 엘리스 섬의 이민 통역관으로 일했던 피오렐로 H. 라 구아디아(Fiorello H. La Guardia)⁴⁵⁾ 또한 이민국 의료 검사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온 10대 소녀의 예를 들며, 이 소녀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엘리스 섬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북부 이탈리아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고, 질문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찰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결국 진짜로 미쳐버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라 구아디아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언어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신적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추방된 경우의 50퍼센트 이상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신병 사례로 분류된 이민자의 상당수가 이민자와 의사의 무지로 인해, 그리고 의사가 특정 이민자의 규범이나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따라서 주립병원의 정신과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입국하는 이민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곳은 공중보건국이나 이민국만이 아니었다. 정신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항상 신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병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잘못된 진단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이민자 상당수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정신병 증상을 보였으나 이를 숨긴 채 기본 의료 검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민자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추방은 이민국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민자가 추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신보호영장이 필요했고, 이 과정은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요했다. 정신병의 포착에서 추방에 이르는 여러 단계 동안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주립병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연방정부의 이민관료와 다를 바 없는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 둘 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민자 정신병환자를 추방한다고 주장했지만, 추방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인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45) 라 구아디아는 이탈리아 출신 아버지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934년에 뉴욕의 시장이 되었다.

46) Fiorello H. La Guardia, *The Making of an Insurgent: An Autobiography, 1882-1919*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948), p. 65.

그렇다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민자 여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사회복지사인 그레이스 애벗(Grace Abbot)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이민자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벗은 1917년에 출판된 이민에 대한 연구에서 1910년의 미국 인구 조사를 인용했다. “총 백인 외국인 100,000명 당 405.3명이 이 나라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반면, 미국 태생 백인 비율은 168.7명에 지나지 않는다.”⁴⁷⁾ 애벗은 이 통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나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중에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정신병 발병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인구 조사가 간과한 것은 나이뿐만이 아니었다. 정신병원에서는 성별 차이가 부각된 반면, 이민국의 의료 검사나 추방 기록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우선 정신병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정신병의 정의도 분명치 않아 의료 진단 외에 보호자 유무나 경제 능력 등을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으로 추방된 이민자 여성의 경험과 추방 결정에 대한 대응은 당시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이민자 여성과 정신병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IV. 엘리스 섬의 정신이상 이민자 여성 추방 사례

엘리스 섬 이민국의 추방 사례는 이민자 여성이 이민과 정신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정신병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담론이 주립병원, 이민국, 그리고 추방당사자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준다. 미국 이민국 연간 보고서가 추방 기록과 최종 추방자 수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이민자의 추방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⁴⁸⁾ 다만 미국 내에서 여성과 정신병에 대한 연관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이민자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을 통해 이민자 여성의 이민 및 정착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민자 여성은 다양한 형태의 감시와 통제의

47) Grace Abbot, *The Immigrant and the Community* (New York: The Century Co., 1917), p. 188.

48) Moloney, “Women, Sexual Morality”, p. 117.

대상이 되었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이민자 여성이 매춘에 빠지거나 미혼모가 될지 모른다는 편견이 이들의 움직임을 통제했다. 아일랜드 이민자를 위한 로자리오의 성모회(The Mission of Our Lady of the Rosary), 성 요셉 폴란드인 보호소(St. Joseph's Polish Home), 히브리 이민 자선협회(Hebrew Immigration Aid Society) 같은 이민단체나 자선기관은 이민자, 특히 여성의 보호에 힘을 쏟았다. 이들은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이민자 여성을 돌보았고 이들이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착취의 위협도 있었다. 1910년 엘리스 섬 이민청장 윌리엄 윌리엄스는 이런 단체 중 숙박비를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거나, 보호자가 이민자를 데려가는 것을 고의로 늦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⁴⁹⁾ 더구나 이민자 여성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자립을 도모한다 해도 이들이 미래에 보호대상자가 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민자 로잘의 사례가 보여주듯, 정신병으로 추방당한 이민자 다수는 주립 정신병원에서 보호대상자가 된 후에야 이민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1903년의 이민법은 입국 후 2년 안에 보호대상자가 된 이민자에게 추방영장을 발부했다. 1907년에는 이 공소시효가 3년으로, 1917년에는 5년으로 늘어났고, 보호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현재 상태가 '이전'이 아닌 미국에 도착한 후 발생했다는 것을 이민자 본인이 증명해야 했다. 정신이상 이민자는 더 철저한 통제 하에 놓였다. 1929년에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방된 이민자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으나,⁵⁰⁾ 정신병으로 보호대상자가 되어 추방된 경우는 이미 1903년부터 재입국이 불가능했다. 입국 이전 5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던 이민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정신병으로 인해 추방대상이 된 이민자는 추방에 저항할 경제적, 법적, 정치적 자원이 부족했고, 이민과 추방을 둘러싼 관료적 절차를 알고 있다 해도 추방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이민자 여성은 미국의 정신병 담론의 영향을 받은 동시에 이민자로서의 노동가치가 없다는 편견에 시달렸으므로

49) William Williams, File 52516/1, Entry 9, RG 85, NARA, DC.

50) Jane Perry Clark Carey, *Deportation of Alien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New York: Arno Press, 1969).

정신병으로 인해 보호대상자가 되면 더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정신병으로 주립 기관에서 보호대상자가 된 이민자 여성의 사례가 이민국에 보고되면, 이민조사관은 이 여성의 정신병이 미국 도착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이민 생활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꼼꼼히 조사했다. 전자일 경우 이민자 여성은 추방대상이 되었고, 후자일 경우에는 주립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민조사관은 의사의 정신병 진단서와 가족이나 고용주의 인터뷰를 취합하여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인터뷰는 의사의 진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질환의 증명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민자 여성은 흥분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단정치 못하거나,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보내졌는데, 이 증상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임신 등의 외적 요인이나 개인의 기질 등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후대의 퇴행에 대한 염려는 정신병의 유전적 형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가족력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다.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가족력만큼 중요했다. 이민자 여성의 경제적 능력, 특히 노동 능력은 정신병원 수용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정신병원 수용은 추방으로 이어졌다. 1908년 4월 맨해튼 주립병원에서 보호대상자가 된 33세의 헝가리 여성 베르타의 사례는 가족력과 경제력 능력의 부재 둘 다 추방을 야기했음을 보여준다. 이민조사관은 베르타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았고, 베르타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될까봐 걱정했으며 지난 10년간 신경과민으로 인해 고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것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결국 베르타는 1908년 10월 미국에서 추방되었다.⁵¹⁾ 즉, 정신병의 유무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은 일을 했다는 경력 및 의지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족 부양의 부담이 적었으나, 의지할 데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노동 능력이나 의지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사용되었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논리였다. 1905

51)File 51967/205, Entry 9, RG 85, NARA, DC.

년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온 38세의 영국 출신 마리는 뉴욕에 도착한 후 성 마리아 보호소에 머물렀는데, 보호소 측은 마리가 울며 소리를 질러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07년 그녀를 뉴욕의 센트럴 이슬립 주립병원에 보냈다. 마리는 곧 보호대상자로 추방 영장을 받았다. 마리의 추방 기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호소 측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했지만 매번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니 일을 할 수가 없다는니 하면서 자리를 잡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민조사관은 마리가 자메이카에 있을 때부터 두통, 요통, 소화불량 등에 시달렸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했다고 기록했으나, 그녀가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는 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결국 마리는 1908년 5월 자메이카로 추방되었다.⁵²⁾

나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의존 또한 이민자의 운명을 결정했다. 1908년 3월 70세의 스코틀랜드인 세실리아는 딸 플로라와 함께 엘리스 섬에 도착했고, 기본 검사를 통과해 미국에 입국했다. 한 달쯤 후, 그녀는 만성 정신병으로 뉴욕 주 푸킵시의 허드슨 강 주립병원에 수용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던 세실리아는 입국 이전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은 이민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추방대상이 되었다. 뉴욕에 거주하던 세실리아의 두 딸은 추방을 막기 위해 병원비를 지불하고 천 달러의 보석금을 냈으며 이민국에 세실리아가 다시는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뉴욕 주립 정신병위원회는 세실리아가 이민법 하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보석이 취소되었다. 세실리아의 두 딸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분노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딸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지원 없이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로 질병의 치료가 어렵다는 점과 언젠가 또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실리아는 다시 추방 명령을 받았다.⁵³⁾ 당시 미국 내에서도 고령 이민자의 추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1911년 5월 「뉴욕 이브닝 저널」은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예로 나이 든 여성을 꼽았다. “한 명이든, 열 명이든, 혹은 만

52)File 51967/204.

53)File 51967/219.

명이든 가난한 늙은 여인이 아들이나 딸을 만나 떠칠만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이 나라에 왔다고 치자. 만약 이들 중 몇몇이 미국의 행진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들 그게 미국을 망치겠는가?”⁵⁴⁾ 실제로 이들은 미국의 혈통이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추방을 피할 수 없었다. 세실리아의 추방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딸의 문제이기도 했다. 세실리아의 딸들은 자산은 없었지만 각각 가정교사와 재봉사로 꾸준히 일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머니의 추방을 막을 만큼 미국 사회에 대한 지식도 있었다. 그러나 이민자 여성의 불안정한 경제적, 법적 지위로는 계속된 추방 명령에 맞서기 어려웠다. 둘 다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으나, 이민국은 이들의 직업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둘 다 미혼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미혼 이민자 여성은 보호자가 필요했고, 친지의 개입을 통해서야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1907년 5월 미국에 도착한 러시아인 루헬은 재봉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12달러를 버는 “검소하고 근면한” 여성이었다.⁵⁵⁾ 그러나 유태인 명절이 너무 많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걱정하던 루헬은 신경과민을 앓았고, “세심한 관심과 완벽한 조용함”을 위해 뉴욕의 센트럴 이슬립 주립병원으로 보내졌다. 병원으로부터 그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민국은 추방 영장을 발부한 후 루헬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루헬의 오빠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문을 받았고 뉴욕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삼촌과 함께 보석금 천 달러와 병원비를 지불했다. 루헬은 얼마 후 병원에서 나와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루헬을 담당했던 이민조사관은 “병원비가 다 처리되었고 그녀가 센트럴 이슬립 주립병원에서 삼촌의 보호 하에 퇴원하게 된 것을 볼 때, 조사를 계속하면 친지가 의심스러워할 것이고 원래의 영장을 수속해야만 할 경우 그녀가 수감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⁵⁶⁾라고 보고하며 감시를 거두지 않았다. 루헬의 삼촌이 적절한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54) “Brutality in Ellis Island”, *New York Evening Journal*, May 24, 1911. Entry 9, RG 85, NARA.

55) 루헬의 친지 및 친구들의 증언과는 달리, 이민조사관은 루헬이 일주일에 3달러를 벌였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고당한 적도 있다고 보고했다.

56) File 51967/210, Entry 9, RG 85, NARA, DC.

이민조사관은 그녀가 다시 보호대상자가 되거나 미쳐버릴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추방 사례는 이민자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낸다. 추방대상이 된 이민자 여성 대부분은 결국 추방을 면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남긴 자료를 통해 추방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이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나 정신병원의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나름의 방법으로 추방 결정에 대응했다. 물론 루헬의 예처럼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민국은 추방이나 체포 영장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변호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추방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대부분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방 영장을 받은 이민자 여성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별다른 저항 없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랐다. 맨해튼 주립병원에서 정신병으로 보호대상자가 된 26세의 이탈리아 이민자 마리아는 추방 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민조사관의 질문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만족”한다고 답했다. 마리아의 대답은 이민조사관의 추방 수속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뉴욕에서 함께 살던 마리아의 삼촌 부부는 그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증언했고, 마리아는 고향으로 보내졌다.⁵⁷⁾ 오빠인 휴(Hugh)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아일랜드 이민자 레이첼도 이민조사관에게 고향인 런던테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빠와 새언니에게 학대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성당 미사에 가지 못하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길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한 레이첼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녀의 뜻은 지극히 이성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⁸⁾ 즉,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추방을 또 다른 기회-추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나 증기선 회사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여비를 들이지 않고도 고향에

57) File 51967/211. 마리아의 추방은 1) 이전의 이유로 보호대상자가 되었고 2) 입국 5년 전에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두 가지 사유에 기인했다. 마리아는 1908년 6월에 추방되었다.

58) File 51967/214. 한편으로는 이 증언이 레이첼의 정신적 문제—본인이 핍박 받고 있다는 과대망상증—를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레이첼은 미국에 도착하기 4년 전인 1903년에 아일랜드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이는 추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돌아갈 수 있었다-로 삼았던 것이다.

보다 논리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이민자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906년 헝가리 출신 마자르인 리디아는 맨해튼 주립 정신병원에서 보호대상자가 되어 이민국의 추방영장을 받았다. 추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냐는 이민조사관의 질문에 그녀는 “지금은 안 아파요. 하녀로 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돌아가야 하죠?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했다. 당시 미국에 있던 리디아의 형제자매가 추방에 동의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디아는 미국에서 추방되었다.⁵⁹⁾ 1908년 리디아와 같은 병원에서 보호대상자가 된 26세의 영국인 엘런은 이민조사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난 건강해요.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쨌든 이건 [정신병] 이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나는 여기 머물면서 살고 싶어요. 나 일할 수 있어요.”⁶⁰⁾ 엘런이 정신병과 관련된 추방 절차와 공소시효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리디아와 엘런 둘 다 그들의 정신 건강과 노동 능력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미국에 계속 머물 기회를 얻으려 했다.

추방 영장을 받은 이민자 여성 중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도 있었다. 1908년 세실리아의 딸 플로라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으로 인해 추방 영장을 받았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정신병을 앓았다는 이유였다.⁶¹⁾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코틀랜드의 정신병원에

59)File 51967/207.

60)File 51967/208. 엘런은 1902년에 미국을 방문했었고, 1907년에 재입국 시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엘런은 입국 후에 정신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1)플로라는 기본 의료 검사를 통과했으며 보호대상자가 된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민국이 그녀를 어떻게 추방대상으로 지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이 입국한 어머니 세실리아가 푸킵시에서 정신병으로 보호대상자가 되었고 병원 검사 중 가족력을 밝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세실리아의 입원이 플로라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자가 되어 추방 영장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병원 측에서 해당 이민자를 보호했지만, 플로라는 보호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엘리스 섬의 병원에서 두 달을 보내야 했다.

여러 차례 입원했던 플로라는 적법한 추방대상이었고, 추방이 확정될 때까지 엘리스 섬의 병원에 수용되었다. 그녀는 이민조사관에게 항의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보석으로 엘리스 섬 병원에서 잠시 풀려나자 숨어버렸던 것이다. 그녀의 두 자매는 플로라가 미국에 도착한 후로 건강상태가 좋았고 일자리를 얻어서 잘 살고 있었으며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서류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풀려난 후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밝히려 하지 않았다. 추방대상자를 찾을 수 없었던 이민관료는 결국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⁶²⁾ 플로라는 1930년 미국 인구 조사에 뉴욕 주 더치스의 푸킵시에 거주하는 ‘환자’(아마도 정신병환자)로 기록되었다. 1908년에 추방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플로라와 같은 예는 흔치 않았다. 엘리스 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이민조사관이 밝혔듯이, “대부분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추방은 외국인에게 큰 어려움”이었다.⁶³⁾ 이민관료는 추방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민자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보다 나은 대우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인도주의적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앞서 등장했던 마리의 사례는 추방의 실제 목적이 이민관료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방영장 발부 후 이민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마리는 자메이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메이카에서 여러 의사가 [두통 관련으로] 나를 치료했는데 다들 나오려면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왔고 여기서 많이 나아졌어요. 다시 자메이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끔찍할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여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리는 이에 답하는 대신 “자메이카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마리의 의사를 염두에 두었지만, 그녀의 증언과 의료증명서를 고려해 볼 때 마리에게 추방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할 법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했다.⁶⁴⁾ 건강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리의 바람은 그녀의 경제적 의존성에 가려져 묵살되었다. 인도주의적 대의를 추구한다는 이민국의 입장 또한 이민자 여성이 마주한 통제와 규제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다.

62)File 51967/217.

63)“Put up the Bars on Immigrants”, File 52516/1, Entry 9, RG 85, NARA, DC.

64)File 51967/204, Entry 9, RG 85, NARA, DC.

이민자 여성은 이민자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통제를 받았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이 절실했으나, 단신으로 미국에 도착했거나 친지나 친구로부터 불확실한 약속만을 받고 고향을 떠난 가난한 이민자 여성은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들 중에는 미국에 있는 친지의 가계에 보탬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가족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은 이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민 담론 하에서 이 여성들 대부분은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졌고 추방의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정신병과 연계되면 이민자 여성이 추방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지만, 정신병으로 추방된 이민자 여성들 간의 인종적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정 ‘인종,’ 특히 서유럽이나 북유럽 출신의 ‘백인’이 아닌 이민자에게서 정신병 발병률이 높다는 고정 관념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추방은 인종적 편견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이민자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보호대상자가 되고, 그 결과 이민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면 인종과 관계없이 추방 명령이 이행되곤 했기 때문이다.⁶⁵⁾ 그러나 서유럽 출신 이민자 여성, 특히 영어구사자의 추방 기록이 더 길고 자세하다는 것은, 비서유럽 이민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추방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이들의 정신병 진단이나 추방이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V. 결론

이민자 여성은 여성이자 소수 그룹의 일원이라는 이중의 짐을 졌다. 이들은 미국 사회의 보건과 복지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타자로,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보이는 경우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는 물론 거주 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미국에서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

65) 추방의 인종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 서술된 추방 과정뿐만 아니라 이민자가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시점, 혹은 미국 입국 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때로는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이민자의 운명은 이민관료의 통제 하에 놓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민자 여성은 이민국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자선단체 등 여러 국가 및 사회 기관의 감시를 받았다. 정신병으로 추방대상자가 된 이민자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당시 이민과 질병에 대한 담론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이민자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낸다. 여성 이민자들은 엘리스 섬 이민국과 주립 정신병원이 주도한 광기의 통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민과 이주를 둘러싼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추방 명령과 의료증명서의 진단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왜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혔고, 본인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1920년대 제한적인 이민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이민자 여성의 광기에 대한 통제와 경제적 능력에 대한 우려는 명맥을 유지해 나갔고, 이민자 여성은 이민 기회와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학교, jhyshin@gmail.com

주제어(Key words):

이민여성(immigrant women), 정신병(insanity), 재생산(reproduction), 추방(deportation), 엘리스 섬 이민국(Ellis Island Immigration Station)

(투고일: 2016. 04. 20, 심사일: 2016. 04. 26, 게재확정일: 2016. 05. 16)

<국문 초록>

광기와 통제: 20세기 초 미국의 정신이상 이민자 여성 추방 사례

신 지 혜

본 논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내 여성의 정신병과 재생산 능력의 관계, 엘리스 섬 이민국의 정신병 검사, 그리고 유럽 출신 이민자 여성의 이민 제한 및 정신병 관련 추방 사례를 통해 이민 담론과 정신병 담론이 수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당시 이민국의 의료 검사와 추방—특히 정신병과 관련된 경우—은 미국 사회에 팽배했던 이민자 여성의 재생산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경제 및 노동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여성의 광기를 통제함으로써 이민 제한과 추방의 편리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엘리스 섬의 정신병 관련 추방 사례는 이민자 여성이 광기의 통제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록 추방을 피하지 못했어도 이민과 이주를 둘러싼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Madness and Control: Deportation of Insane Immigrant Women from the U.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Shin Ji-Hye

Examining links between female insanity and reproductive power, mental examinations at the Ellis Island Immigration Station, and insanity-related deportation cases of European immigrant women, this essay delineates the ways in which the discourses of immigration and insanity converged in the U.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Immigration Bureau's medical inspection and deportation, particularly for insanity, revealed that American society feared immigrant women's reproductive power and doubted their ability to work and make a living. In controlling female immigrants and their alleged madness, the U.S. government found a convenient means to restrict immigration and facilitate deportation. At the same time, Ellis Island deportation cases involving insanity demonstrate that immigrant women were aware of the control over their mental conditions and, even when they failed to escape deportation, continued to fight the constraints upon their migration and mobility.

■ 논문 ■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권은혜

서론

2014년 11월 20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깨져버린 이민체계를 고치는데” 것이 이민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확인했다.¹⁾ 1970년대 이후 소위 “불법” 이민, 혹은 이민행정상 공식 용어로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undocumented)” 이민의 증가는 미국 이민법과 행정 체계의 결함으로 지적되어 왔다.²⁾ 오늘날 미국에 승인받지 않은 채로 들어와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는 일천일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의해 4백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불법 이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이전의 대통령들도 서류로

1) “Remark by the President in Address to the Nation on Immigration”, November 20, 2014.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20/remarks-president-address-nation-immigration> (검색일: 2015년 3월 5일).

2) “불법 이민(illegal immigration)”은 비공식적 경로로 들어온 이주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불법”에 해당하는 행정적 공식 용어는 “승인받지 않은(unauthorized)”,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undocumented)” 등이 있다. “불법 이민”이라는 표현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를 행정용어와 함께 섞어서 사용한다. 공식 행정용어가 이 용어를 대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마 이것이 “불법 이민”이라는 용어가 공식 행정용어만큼이나 보도와 정책보고서 등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증명되지 않는 이민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명령을 실행하거나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³⁾ 그 대표적인 예가 1986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민개혁과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하 1986년 이민개혁법)이다. 1986년 당시 불법이민자의 규모는 약 5백만 명에 이르렀고 이민개혁법은 5년 이상 미국 체류와 기타 구비여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했다. 1986년 법으로 2백 7십만 명이 불법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국의 합법적 노동력으로 편입되었다.⁴⁾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1986년 이민개혁법의 일반 사면 항목을 사실상 그대로 채택한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의 선례를 1986년 이민개혁법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즉각적으로 사면되는 대상자의 수가 4백만 명에 이르며 전례없이 규모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1986년 이민개혁법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들의 골격을 유지하되 그 시행에서 드러난 결함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86년 법과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공통적으로 일반적 사면의 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적 공방에서 드러나듯이 일부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자의 일반적 사면 정책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들의 불편함에는 불법 이민자의 존재를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사면 대상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멕시코인에 대한 편견이 뒤엉켜있다. 오늘날 이민 개혁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법 이민을 범죄나 위협과 연관시키는 시각의 등장과 멕시코인을 불법 이민의 대표적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문의 첫 번째 절에서는 1920년대에서 1964년 사이의 시기에 이민과 추방과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사면 정책에 의해 멕시코인이 서류가 없는 이민자를 대표하게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3) Drew Desilver,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Have Long History”, Pew Research Center, November 21, 2014,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11/21/executive-actions-on-immigration-have-long-history/> (검색일: 2015년 2월 15일).

4) Amanda Sakuma, “Ronald Reagan Amnesty Haunts Immigration Action”, msnbc, August 4, 2014, <http://www.msnbc.com/msnbc/reagan-amnesty-haunts-immigration-action>, February 28, 2015.

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본문의 두 번째 절에서는 1965년 이민법, 1986년 이민개혁법이 각각 불법 외국인 혹은 불법 이민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적 합법화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불법 이민의 지속적 증가—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을 소개한다.

이민제한 시기 멕시코 이민 정책

미국은 애초부터 자유 이민의 나라였음을 표방하지만 19세기 말부터 1940년대까지는 이민제한의 시기라고 불린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전에도 미국은 유럽의 백인들에게만 자유로운 이민의 나라였다. 건국 초기의 귀화법은 “자유로운 백인”에게만 미국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했다.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속한 집단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은 19세기 말에 등장했다. 아시아 여성이 “부도덕한” 목적으로—매춘을 유향적으로 표현한 말—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1875년의 페이지법, 중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금지한 1882년의 중국인 배제법이 바로 인종, 계급, 젠더의 잣대로 이민자격을 제한한 예였다. 이민제한주의 원칙은 국적에 따라 이민 상한선을 차별적으로 설정한 1921년과 1924년 이민법에서 보다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1924년 이민법은 일 년치 이민상한선을 155,000명으로 잡았고 북유럽과 서유럽의 국가에 대부분의 이민 할당이 돌아갔고 남유럽과 동유럽에는 전체 할당의 15퍼센트만 돌아가게 했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민 상한 할당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1920년대 이민법은 남유럽과 동유럽의 이민을 제한하고 아시아의 이민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백인 우월주의적 이민제한주의자들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1920년대 제한주의 이민법은 카리브해를 제외한 서반구 지역의 이민은 전체 상한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에 문을 열어 두었다. 1965년에 1924년의 이민법이 채택했던 국적별 이민 상한 원칙이 철폐될 때까지 멕시코를 포함한 서반구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1965년 이전에는 멕시코인들이 유럽인처럼 이민제한의 대상도 아니었고

아시아인처럼 배제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 점을 들어 아비바 촘스키(Aviva Chomsky)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이민](illegality)은 1965년 이후에 존재”했고 1965년 이전에는 미국인들이나 의회도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촘스키는 또한 “멕시코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에 대한 저주와 ‘불법 이민’ 이슈의 확산”은 1970년대에 일어난다고 본다.⁵⁾ 촘스키가 1965년 이후에 멕시코 이민의 불법성이 형성된다고 보는 이유는 1965년 이전에는 멕시코인들이 “비이민자(nonimmigrant)”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⁶⁾ 즉, 미국 이민국에서 멕시코인을 미국에 정착할 의도를 가진 이민자라기보다는 절기에 따라 이동하고 일이 끝나면 멕시코로 돌아갈 일시 체류자(sojourner)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 이후 멕시코인을 둘러싼 불법 이민 논쟁의 쟁점은 1920년대부터 1965년 사이의 기간에 실시된 멕시코인 이민 정책 및 미국과 멕시코 국경 통제 과정에서 이미 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역사가 메이 나이(Mae M. Ngai)는 “1924년 이민법 아래 대거 불법이민과 추방이 도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국가 구성체 안에서 창출했다”고 주장한다. 나이의 개념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을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현실인 동시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이 불법 외국인이 야기하는 “모순”이 국경 통제를 통해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개념, 그리고 “불법 이민자 중 구제될 만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당한 추방과 부당한 추방을 상상하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담론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⁷⁾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민, 추방 및 불법 체류자 사면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시행 과정에서 멕시코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민자와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으로 지목되었다. 1920년대 초 국적에 따른

5)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oston: Beacon Press, 2014), pp. 1-2.

6) *Ibid.*, p. 8.

7) Mae M. Ngai, *Impossible Subjects: Illegal Aliens and the Making of Moder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57.

이민상한선 설정을 논할 때 멕시코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의 이민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서반구 지역의 이민에 대해 의회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거나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이민법 논의 당시 일부 의원들은 멕시코인의 “무지, 더러움, 게으름, 범죄성향”을 언급하며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며 멕시코인 이민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⁸⁾

심지어 아시아 이민을 배제했던 근거로 사용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멕시코인에도 적용하여 이들의 귀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⁹⁾ 그러나 1920년대 초 일본인 오자와와 인도인 신드의 귀화 신청을 기각하는 데 사용되었던 시민권의 인종적 근거를 멕시코인에게 적용한 대법원의 사례는 없었다.¹⁰⁾ 당시 대법원은 외국인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면 “자유로운 백인”이어야 하며 일본인과 인도인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1897년에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전쟁 이후에 체결된 조약들 및 관행들에 근거해 멕시코 이민자는 어떤 인종에 속하던 미국인으로의 귀화가 가능하다고 판결내렸다.¹¹⁾

아시아인 이민 배제처럼 멕시코인 이민 배제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1920년대 말 국무부는 국경 통제 및 이민 행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멕시코인 이민의 규모를 제한했다. 국무부는 계약노동자,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것 같은(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관행을 멕시코인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적용했다. 그 결과 1930-31년 사이에 만 3천명의 멕시코인에게 비자가 발급되었다. 1925-1930년 사이에 멕시코인 미국 비자 연평균 발급 규모가 58,747명이었다는

8) *Ibid.*, pp. 52-53.

9) *Ibid.*, pp. 53-54.

10) *Takao Ozawa v. United States* (160 U.S. 178, 1922); *United States v. Bhagat Singh Thind* (261 U.S. 204, 1923).

11) *In re Rodriguez* (81 Fed., 337, W.D. Texas, 1897).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이민자 비율이 76.7퍼센트가 줄어든 것이다.¹²⁾ 이민 행정 및 국경 통제 강화가 미국 내 멕시코인 수를 줄이지는 못했다. 19세기 말부터 1차 대전 사이 멕시코인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1924년 이후에도 많은 멕시코인들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길을 선택했다.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운 것도 있었지만 1917년 이후부터 인두세가 증가했던 것도 멕시코인들이 합법적 이민 절차를 회피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1924년 이민법 시행 이후 불법 이민자로 들어왔다가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증가했다. 1920년에는 2,762명이던 추방자의 수는 1925년에는 9,495명, 1929년에는 38,796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이민자 추적과 추방을 처리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자 1927년에 이민국은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추방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대개 비자 관련 조항을 어긴 사람들이었다.¹³⁾

1924년 이민법 아래서 국경통제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두 개의 국경이 1차 대전 이전 시기까지는 통제 수위가 낮은 편이었지만 1924년 이후로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려던 이민자들을 주로 유럽인들이었고 유럽인 이민자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비율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은 1925년에 20퍼센트였으나 1930년대 초에는 50퍼센트를 넘는다. 이와 달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적하는 수위는 해마다 높아졌다. 1925년에는 1,751명이 추방되었으나 1929년에는 15,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추방 사유는 대개 비자의 미비나 위반이었다. 인두세와 비자 발급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공식 절차가 아닌 경로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멕시코인들이 늘어난

12) Ngai, *Impossible Subjects*, p. 55.

13) *Ibid.*, pp. 60-61.

것이다.¹⁴⁾

한 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은 1920년대 중반 들어 통제되기 시작한다.¹⁵⁾ 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인들은 모욕적인 입국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민국 관리들은 이민 심사 대상자들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깎은 후 목욕을 시키고 그들의 옷과 소지품을 소독했다. 그리고 이민 심사 대상자들의 문자해독능력을 심사했다. 불법 외국인, 밀수범, 범죄자가 미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한 국경 순찰대 역시 국경의 담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초기 국경 순찰대로 고용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백인우월주의 집단인 KKK 단과 연관이 있는 전투경험자였다.¹⁶⁾

20세기 전반기 이민국의 멕시코 이민 정책은 미국 남서부 농업 지대의 멕시코인에 대한 계절적 노동 수요에 부응해 형성되었다. 이민국은 멕시코인 계절 이주노동자에게 두 가지 합법적 경로를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불법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이고 불안정한 합법적 허가” 아래 일이나 주 단위로 국경을 넘어 통근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이민자로 간주되었다. 통근가능한 이민자가 되려면 국경을 통과할 때 인두세를 납부했으며 목욕을 했다는 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했다. 통근하는 이민자 자격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많은 멕시코인들은 합법적인 “일시적 방문자”로 농번기에 일하러 미국에 들어왔다가 멕시코로 돌아갔고 이들은 비이민자(nonimmigrant)의 길을 선택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멕시코인의 20-30 퍼센트는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온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이자 비이민자에 속했고 이들이 국경을 넘는 데 여권이나 비자는 필요하지 않았다. 일시적 방문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긴 후에도 떠나지

14) *Ibid.*, pp. 66-67.

15) 미국 국경 통제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Kelly Lytle Hernández, *Migra! A History of the US Border Patro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Rachel St. John, *Line in the Sand: A History of the Western U.S.-Mexico B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6) Ngai, *Impossible Subjects*, p. 68.

않을 경우 불법 외국인이 되는 것이었다.¹⁷⁾

1930년대에는 멕시코 이민이 감소했고 그 원인으로는 대공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추방정책의 엄격한 시행을 들 수 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 미국인 사이에서 “값싼” 멕시코인 노동이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여론이 널리 확산되었고 미국 내 멕시코인 이민자의 추방이나 멕시코계 미국인의 송환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여론에 부응해 이민국은 추방의 위협을 들먹이며 자발적 송환을 끌어냈다. 멕시코인 이민자와 멕시코계 미국인의 송환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 집단은 대규모 농업의 사업적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대공황 초기에 미국 내 거주하는 140만 멕시코인 인구의 약 20퍼센트가 멕시코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다 내몰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도 남서부의 농장, 광산, 철도유지보수에 이들의 노동은 필수불가결했다.

일방적인 추방이나 송환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사면 정책은 멕시코인에게는 요원했다. 추방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인도주의적 주장이 등장했다.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품행이 바르며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해 그의 가족을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추방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나이에 따르면 미국 개혁가 집단 사이에서 “부당한 추방에 관한 담론이 지칭하는 것은 대개 유럽인 이민자들이었고 아주 가끔 멕시코인을 지목했다.”¹⁹⁾

1929년 의회는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 외국인 중 일부를 선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록법(the Registry Act)을 처음 도입했지만 멕시코인은 이

17) *Ibid.*, pp. 70-71.

18) 대공황시기 로스앤젤레스의 공중보건정책과 멕시코인 추방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도 있다. Natalia Molina, *Fit to Be Citizens?: Public Health and Race in Los Angeles, 187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p. 116-157.

19) Ngai, *Impossible Subjects*, p. 82.

법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1929년의 등록법은 1921년 6월 3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추방된 적이 없거나 시민권 자격이 없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20불을 내면 영주권을 주었다.²⁰⁾ 비록 1929년 등록법은 의도적으로 유럽인을 선호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했다. 1930년과 1940년 사이 등록법에 의거해 등록된 이민자의 80퍼센트가 유럽인이거나 캐나다인이었다. 연구에 의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멕시코인들 중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모르거나 돈을 낼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²¹⁾

1940년에 외국인 등록법(the Alien Registration Act)이 시행되던 시점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이민국은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진 외국인과의 가족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추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서도 멕시코인은 추방명령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²²⁾ 1940년과 1950년대 후반에 추방 중지령으로 보호받은 이민자의 75퍼센트는 유럽인으로 주로 독일인이거나 이탈리아인이었다. 이 중 8퍼센트만이 멕시코인이었다.

1924년 이민법 아래서 유럽인 이민 제한과 아시아인 이민 배제의 시기에 멕시코인들은 이론상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무수한 행정적 장벽을 넘어야 했다. 멕시코인에게 합법 이민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고 비싸고 힘들었다. 비이민 임시 방문자나 통근하는 이민자 등의 지위는 불안정했고 이 범주에 속하는 멕시코인들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언제든지 불법외국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대공황 시기의 반 이민 정서에 의해 멕시코 이민자는 불법 외국인의 낙인을 받고 강제 추방되었다. 추방의 위협에 놓인 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합법화 정책에서도 멕시코인은 주변화되었다. 나이가 지적하듯이,

20) Donald Kerwin, “More than IRCA: US Legalization Programs and the Current Policy Debate”, *MPI (Migration Policy Institute) Policy Briefs, December 2010*: 4. <http://www.migrationpolicy.org/research/policy-briefs> (검색일: 2015년 3월 10일).

21) Ngai, *Impossible Subjects*, p. 82.

22) 무정부자나 마약거래자나 매춘부 및 정신박약자는 추방명령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불법 행위로 등장”했고 “멕시코인의 불법 입국 방법은 ‘범죄’로, 멕시코 이민자는 구제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었다.”²³⁾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멕시코가 연합국의 동맹국이 되면서 1942년 미국정부와 멕시코정부는 일종의 계약노동자 체제인 브라세로 프로그램(The bracero program, 브라세로란 스페인어로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을 도입했다. 1964년까지 시행된 이 정책의 목표는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적 월경을 방지하고 미국 남서부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멕시코 정부는 노동자들의 출국심사를 담당했고 미국 정부는 일자리를 배치했으며 미국의 사용자들이 임금 이외에도 브라세로의 주거, 섭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대하던 효과인 불법 이민의 물결을 멈추지 못했다. 브라세로 1인의 연 소득이 5백 불도 채 안 되는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미국인 사용자들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브라세로보다 비용이 싼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기 때문이었다. 브라세로가 되고 싶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난한 멕시코인들 역시 불법 이민자 고용관행을 적극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불법이민자는 5백만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이전에 멕시코인 노동 이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합법 이민의 길을 좁힘으로서 오히려 불법 이민을 양산했다. 그나마 열린 합법적 이민의 길이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1965년 이민법이 시행되면서 갑자기 폐지되었다. 지속적인 멕시코인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지만 브라세로프로그램이 수용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를 허용했다. 이 모든

23) *Ibid.*, 89.

상황은 많은 멕시코인을 불법의 상태로 몰아넣었다.²⁴⁾

불법 이민의 가시화와 합법화의 양가성:
1965년 이민법과 1986년 이민개혁법

1920년대부터 1950년대 미국의 이민법은 서반구 이민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아 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서류상으로는 자유롭게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통제했다. 멕시코인 노동력에 대한 미국 남서부의 지속적인 노동 수요는 불법 입국을 유도했고 멕시코인은 불안정하거나 불법적인 상태에서 추방과 송환의 위협에 시달렸다. 1965년에 도입되고 1968년에 완전히 시행된 이민법은 1924년 이민법의 국적별 차등 상한선 설정 정책을 철폐했다. 그 대신에 동반구 전체에 한 해 17만명, 서반구 지역 전체에 한 해 12만명의 상한선을 도입한다. 이후에는 서반구 전체가 아닌 국가별로 비자발급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1965년 이민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관계 초청 이민은 이민 연간 상한선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가족의 통합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1965년 이후 미국 이민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1965년 이후 멕시코를 포함한 남아메리카로부터의 합법과 불법 이민이 모두 증가했다. 1950년대 남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의 합법적 이민자 수는 459,000명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4백 2십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이민자 중 44퍼센트에 해당한다. 1990년대에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전체의 29퍼센트, 유럽지역이 14퍼센트, 아프리카가 6퍼센트, 기타 지역이 7퍼센트를 차지했다. 1965년 당시 남미에서 미국에 불법 상태로 입국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8년에는 9백 6

24)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불법이민을 양산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Hiroshi Motomura, *Americans In Waiting: The Lost Story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78-179. 브라세로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멕시코정부 사이의 갈등, 고용주와 멕시코인 노동자들의 반응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Ngai, *Impossible Subjects*, pp. 138-166. 브라세로 프로그램 중단 이후 멕시코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불법이민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Chomsky, *Undocumented*, p. 60.

십만 명의 남미 출신 외국인들이 승인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은 3/4에 달하며 멕시코인 불법 이민은 전체 불법 이민의 2/3에 해당한다고 한다.²⁵⁾ 보다 최근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불법 이민자 중 멕시코인의 비중은 49%로 내려갔고 2007년에 절정을 달했다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²⁶⁾

이민법학자 히로시 모토무라(Hiroshi Motomura)는 1965년 이후 남미, 특히 멕시코 이민이 증가한 이유를 “합법과 비합법 멕시코 이민 세대들의 존재”에서 찾는다. 1965년에 이미 멕시코인 이주자, 고용주, 멕시코 사이에서 불법적 경로로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가 창출되고 제도화”되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 예로 모토무라는 “1968년 새 서반구 이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초청노동자로 들어올 수 없었던 많은 멕시코인들이 합법이민자가 되었다”고 밝힌 사회학자 더글라스 매시(Douglas Massey)의 연구를 언급한다. 모토무라는 멕시코 경제 상황과 정책, 인구의 변화도 멕시코인 이주 규모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멕시코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이 멕시코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결합”했으며 “멕시코 정부의 개발 자금이 멕시코-미국 국경 도시에 집중되자 이는 이주자들을 북쪽으로 이끌었고 많은 이들이 국경을 계속 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곧 멕시코 이민자 수는 서반구에 설정했던 할당을 채우게 되고 이에 미국정부는 1976년 이민비자의 발행을 국가별로 2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보다 더 엄격한 제한정책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6년이면 “이미 거점 공동체들이 미국에 형성되었고 가족과 취업 범주에 근거해 이민을 허용하는 새로운 체계로 인해 [멕시코] 동포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가족과 취업에 근거한 이민] 범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법외적 수단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⁷⁾

25) Douglass Massey and Karen Pren,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Immigration Policy: Explaining the Post-1965 Surge from Latin Americ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2012), pp. 1-29.

26) Jens Manuel Krogstad and Jeffrey S. Passel, “5 facts about illegal immigration in the U.S.,” November 19, 2014,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11/19/5-facts-about-illegal-immigration-in-the-u-s/>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27) Motomura, *Americans In Waiting*, pp. 134-135.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발의로 통과된 1986년의 이민개혁과 통제법 (IRCA, 혹은 심슨-마졸리법 (Simpson-Mazzoli Act), 이하 1986년 이민개혁법)은 당시 불법 체류 상태였던 삼백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에게 합법화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행정용어로 합법화란 “미국에 ‘승인받지 않은’ 상태로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영주권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과정”을 말한다.²⁸⁾ 신청자는 수속비용 185불과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었다. 즉, 1982년 1월 1일 이래로 미국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할 것, 범죄기록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의무병역제도에 등록된 증거를 제공할 것, 미국의 역사와 정부, 그리고 영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승인한 과정을 수료할 것 등이 그 조건이었다.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986년이 전례없이 새롭게 채택한 것은 국경통제 및 서류가 없는 이민자를 알면서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²⁹⁾

정책적 차원에서 1986년 이민개혁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민정책의 역사상 처음으로 서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합법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점이다.³⁰⁾ 1986년 법은 1982년 1월 1일 이래로 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을 합법화 대상으로 삼았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도날드 커윈(Donald Kerwin)에 따르면, 1986년 이전에는 특정 입국일자와 다른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법화시켜주는 등록 프로그램(registry program, 1929년 등록법이 그 예), 난민 등과 같이 정치적 현안이나 미국 내 노동력 수요 등에 부응하는 특정 인구 프로그램, 이 두 가지 합법화 프로그램만 있었다. 참고로 1986년 이민개혁법에는

28) Kerwin, “More than IRCA”, p. 1.

29) 1986년 이민개혁법에 대한 요약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했다. http://library.uwb.edu/guides/usimmigration/1986_immigration_reform_and_control_act.html (검색일: 2015년 2월 10일).

30) Kerwin, “More than IRCA,” p. 3.

등록프로그램과 특정인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³¹⁾ 즉, 1986년 이민개혁법은 특정하게 멕시코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와 경로로 인해 불법적으로 체류하게 된 다른 이민자들도 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1986년 이민개혁법은 의도했던 결과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상 가능했던 결과를 모두 드러냈다. 당시로서는 저렴한 신청비용과 신속한 서류 처리로 270만 명이상의 서류가 없던 이민자들이 불법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국 노동력으로 편입되었다.³²⁾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노력과 고용주 처벌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비승인 이민자의 수는 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86년 직후 비승인 인구는 18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유지되다가 1990년대와 2005년 사이 비승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해 2007년에 1,200만 명에 이른다.³³⁾ 비승인 인구의 증가는 강경한 추방정책 시행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토 안보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적게는 17만에서 많게는 4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추방했으며 특히 오바마가 집권한 2008년 이후 추방자 규모가 극적으로 증가했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미국 내 서류가 없는 이민자의 수는 1,100만 명에 달한다.

1986년 이민개혁법이 불법 이민 감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는 이민자를 막는 데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그 일차적 원인을 고용주 처벌 조항의 실효성이 약했다는 데서 찾는다. 고용주 처벌 조항을 시행하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고용인들에게 합법 이민자를

31) 기존 등록법에서 정한 입국 일자를 1948년 6월 30일에서 1972년 1월 1일로 변경했다. 특정인구 프로그램은 쿠바와 아이티 국민 및 특별 농업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다.

32) Sakuma, “Ronald Reagan Amnesty Haunts Immigration Action”, *msnbc*, August 4, 2014.

33) Kerwin, “More than IRCA”, p. 8.

34) Anna Gonzalez-Barrera and Jeans Manuel Krogstad, “U.S. Deportation of Immigrants Reach Record High in 2013”, *Pew Research Center*, October 2, 2014,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10/02/u-s-deportations-of-immigrants-reach-record-high-in-2013/> (검색일: 2015년 3월 5일).

고용한다는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강제해야 했고 이는 개별 미국인들의 사업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다.³⁵⁾ 게다가 이미 외국인 등록카드와 사회보장카드 모두 위조가 쉬웠다고 한다. 피고용인의 신원을 고용주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고용주들을 대개 비협조적이었고 서류가 없는 이민자를 추적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었다. 1986년 법을 썼던 심슨의원은 자기선이 들어간 사회보장카드의 전면 도입을 통해 불법 노동자의 신원 사기를 어렵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가 ‘나치 독일’같다는 이유로 좌우 양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회고했다.³⁶⁾ 결과적으로 서류 및 신청서의 위조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류가 없는 이민자 고용 시장의 규모도 함께 커졌다.

서류가 없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은 1986년 법이 약속한 합법화의 혜택이 신청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즉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민개혁법의 수혜자는 영주권자가 되고 가족을 위해 탄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는 “가족관련 이민 범주 처리 대기 건수”의 증가로 이어져 “수백만 명이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관계를 주장하는) 소송을 신청하고 비승인 외국인 상태로 대기 중”인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³⁷⁾

1990년대 이후 불법 혹은 비승인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는 미국 사회 내 반 이민 정서의 확산과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 통제 및 대거 추방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사실 심슨과 마줄리의 법안을 반대했던 히스패닉계 대표 국회의원들이 이미 1986년 당시 예견했던 일이었다. 이들은 고용주 처벌 조항으로 인해 히스패닉 이민자와 멕시코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³⁸⁾ 고용주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극단적

35) Artistide R. Zolberg, *A Nation by Design: Immigration Policy in the Fashioning of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6), p. 373.

36) 심슨의원의 인터뷰는 다음 기사의 오디오 버전에서 나온 것임, “A Reagan Legacy: Amnesty for All Immigrants”, *NPR*, July 4, 2010,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128303672> (검색일: 2015년 2월 20일).

37) Kerwin, “More than IRCA”, p. 8.

38) Zolberg, *A Nation by Design*, p. 363.

이민제한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들도 회의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민개혁연합(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의 로저 코너(Roger Conner)는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 사면과 불법 이민자 고용 처벌이라는 양면적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경 통제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거나 아니면 이민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³⁹⁾

오바마는 2008년에 집권한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추방 기록을 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수의 서류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합법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⁴⁰⁾ 이미 2012년에 오바마는 “아동 이주자의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아동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했다가 2012년 당시 추방 위기에 놓였던 백오십만명의 추방을 유예한 바 있다. 2014년 11월의 행정명령으로 약 4백만 명이 추방을 면하게 된다. 이 중에는 부모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 그리고 미국시민이나 영구거주자의 부모들도 그들이 미국에 적어도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결론

1990년대 이후 불법 이민의 증가를 이유로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진영에서는 합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개혁안에 대한 반대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1986년의 이민개혁법과 사면 정책이 불법 이민을 장려했다고 주장하며 “제거, 축소, 억제”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39)FAIR/*Immigration Report* 7, no. 2 (November 1986), quoted from Zolberg, *A Nation by Design*, p. 370.

40)Desilver,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Have Long History.”

줄이는 방향으로 이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외친다.⁴¹⁾ 이들의 합법화 반대 의견에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결여되어 있고 20세기 초 반 멕시코 이민 정서의 색채를 강하게 띠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201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밋 롬니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 스스로 추방하기(self-deportation)”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1930년대 멕시코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위협해 스스로 멕시코로의 송환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2천 년대 들어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단호한 국경 통제 정책을 시행해 왔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국경선에서 체포율 감소 및 불법이민자 고용 추적 증가, 추방 및 이민 관련 범죄행위 기소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추방만으로는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미국인으로 교육을 받은 자녀들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2014년 11월 오바마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 발표 이후 공화당 주도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도 강한 반대가 강한 지지보다 높은 편이다. 공화당의 극단적 보수화 및 공화당 주도 의회의 일방적 반 오바마 정서가 불법 외국인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월간지 아틀랜틱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만 들었을 때와 오바마의 이름을 함께 언급할 때 선호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⁴²⁾ 이는 공화당 지지자조차 불법 이민 합법화와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41) Kerwin, “More than IRCA”, 8. 조슈아 린더(Joshua Linder)는 1986년의 전면 프로그램은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며 1986년의 법과 불법이민 증가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Joshua Linder, “The Amnesty Effect: Evidence from the 1986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Public Purpose (Spring 2011), <http://www.american.edu/spa/publicpurpose/upload/2011-Public-Purpose-Amnesty-Effect.pdf> (검색일: 2015년 1월 10일 검색).

42) Robert Jones, “Even Republicans Love Obama’s Immigration Policies”, The Atlantic, Feb. 12, 2015,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5/02/republicans-love-obamas-immigration-policiesuntil-they-find-out-theyre-his/385451/> (검색일: 2015년 3월 10일).

증거이기도 하지만 미국사회의 당파적 이분법이 이민정책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이 글은 현 정국의 당파적 이해관계와 논리를 떠나서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자 시도했다. 현재의 불법 이민과 불법 외국인 문제는 1920년대의 이민법에서 출발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이민제한 상한선이 없었던 멕시코 이민은 엄격한 이민행정규정에 따라 제한과 추방의 대상이 되었고 합법화의 혜택은 이들에게 불균등하게 돌아갔다. 1965년 이민법 아래서 멕시코이민은 수적으로 규제받는 대상이 되고 다수의 불법 이민자를 양산하게 된다.

1986년의 이민개혁법은 미국의 이민정책에 의해 불법 외국인이 되어버린 멕시코인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합법화의 손길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합법 이민, 불법 이민, 합법화의 번덕스럽고 복잡한 미국의 정책 아래서 미국으로 남게 된 멕시코인과 라티노 인구는 현재 미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986년 이민개혁법의 뒤를 이어 미국의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멕시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불법의 낙인을 벗기고 미국사회의 합법적 구성원인 시민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오바마를 비롯해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목표는 불법 이민의 합법화가 불법 상태의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통로가 되는 “포괄적 이민 개혁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포함해 근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민법은 장차 국가의 시민이 되기에 적합한 이민자를 걸러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시민들의 공동체 안에서 외국인은 비시민이자 이질적 존재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법학자 린다 보스니아크(Linda Bosniak)이 지적하듯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영토 안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외국인은 시민과 마찬가지로 공민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들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외국인의 지위를

시민의 지위와 거의 구별하기 힘들다.”⁴³⁾ 보스니아에 따르면, 이민보호 혹은 제한주의와 이민자권익옹호 사이의 갈등은 “시민권의 외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민권의 주체”일 수 있다는 외국인의 “이중적 소재”에 기인한다.⁴⁴⁾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민 제한과 국경 통제,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당연시 해왔고 외국인과 시민의 권리를 구분했다. 오바마와 2016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포괄적 이민 개혁”이 시행된다면 국경과 시민권에 대한 배타적 정의를 수정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앙대학교, lucydiamond@naver.com

주제어(Key Words):

1986년 이민개혁안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Obama's immigration reform executive order), 등록법 (Registry Acts), 불법이민(illegal immigration), 멕시코 이민자(Mexican immigrants).

(투고일: 2016. 04. 27, 심사일: 2016. 04. 28, 게재확정일: 2016. 05. 18)

43)Linda Bosniak, *The Citizen and the Alien: Dilemmas of Contemporary Membership*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34.

44) *Ibid.*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국문초록>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서:
1920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권은혜

본 논문은 2014년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방에서 출발해 불법 이민의 해결책의 역사를 검토한다. 현재의 이민 개혁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법 이민을 범죄나 위협과 연관시키는 시각의 등장과 멕시코인을 불법 이민의 대표적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의 1절에서는 1920년대에서 1964년 사이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과 추방 사면 정책 모두 멕시코인 이민자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후자의 범주로 들어가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정책과 정책 시행과정에서 멕시코인 불법이민을 양산했음을 보여준다. 본문의 2번째 절에서는 1965년 이민법, 1986년 이민개혁법이 각각 불법 외국인 혹은 불법 이민자의 존재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과 의도하지 결과—불법 이민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을 소개한다.

<Abstract>

Between the Formation of Illegal Immigration and
Legalization in Modern America:
Focusing on the Policies of Mexican Immigration since
1920c

Kwon Eunhye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U. S. government policies on unauthorized immigration from the 1920s to the present. In 2014, President Obama received both support for and opposition to his executive action to legalize the status of undocumented immigrants.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s mostly from Mexico and other South American countries since 1920s, Mexicans have been equated with illegal immigrants. American opposition to immigration reform, which centers the legalization of unauthoriz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comes from negative stereotypes of Mexicans as illegals and criminals. The second chapter of this article explores how pre-1965 U. S. immigration policies on Mexican have made their status vulnerable to illegality and created the problem of illegal immigration. In the third chapter, it notes what made post-1965 U. S. immigration policies on undocumented immigrants, especially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fail to meet their goal of reducing illegal immigration.

■ 논문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허 부 문

I. 들어가며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문학·예술 작품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대중가요¹⁾야말로 절실하게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도 큰 이견은 없을 터이다. 우리의 대중가요 또한 탄생 이래 그 시대의 갖가지 모습을 표출해 왔다.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의 영원한 소재와 주제는 실연· 짝사랑· 이별을 포함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가요에는 망향(望鄉), 달리 말하면 고향 생각이 이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현대사의 한 시기에 대중들은 고국과 고향을 떠난 애환을 대중가요란 그릇에 담아 나타내었던 것이다.

망향은 이주와 이산²⁾을 전제로 한다. 망향과 이주·이산은 떼어놓고

1) 대중가요란 유행가, 재즈 송, 신민요, 만요(漫謠)를 모두 일컫는 용어이다. 이 영미·이준희 편 『사의 찬미(외)』 (범우사, 2006), 279쪽. 이 글에서는 ‘대중가요’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세분하기로 한다.

2) 이주(移住)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이란 의미이고, 이산(離散)이란 “전쟁이나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서로 소식을 모름”이란 의미이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이주」, 「이산」 항목. 이 글에서는 내용에 따라 함께 쓰거나 구분해 사용했다.

생각하기 힘들다. 이주와 이산 이후에 고향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망향’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 대중가요의 특색이다. 망향은 굴곡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와 걸음을 같이하면서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대중가요의 큰 줄기를 이룬 소재이자 주제였다.

이 글은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상 및 시대별로 달리 나타나는 이주와 이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 대중가요 속의 망향가에 담겨있는 근현대 이주와 이산의 흐름과 특색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작업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중가요를 자료로 하는 연구는 가요사(歌謠史) 그 자체의 연구에 치중해 왔다.³⁾ 가요를 매개로 한 역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제까지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자료로 삼아 역사상을 더듬어 보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⁴⁾ 그러나 기왕에 나온 연구들도 대중가요를 통해 근현대의 풍경과 시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의 심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⁵⁾ 필자는 이를 문학이나 음악 전공자들이 가요 연구를 주도해 온 한계이자, 역사 연구자들의 대중가요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⁶⁾

3) 이영미의 일련의 저술인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및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2002)를 우선 들 수 있다. 박찬호 지음, 안동림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및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한국가요사 2』 (미지북스, 2009)는 가요사를 개관한 노작이다. 이밖에 최창호 지음, 강현 해설 『민족 수난기의 대중가요사』 (일월서각, 2000)는 자료집에 가깝다고 하겠다.

4) 이동순, 『번지 없는 주막』 (선, 2007).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in, 2006) 등이 그러하다.

5) 이영미, 『광화문 연가』 (예담, 2008)는 대중가요를 소재로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더듬어 본 책이다.

6) 이 글에서 제목은 발표 당시대로 표기하고, 노랫말은 모두 지금의 맞춤법으로 바꾸었다. 노랫말 앞의 숫자는 절(節) 표시이며, 숫자가 없으면 1절을 가리킨다. 제목 다음의 괄호 속에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의 이름과 발표 연도를 차례대로 표기했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대중가요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중가요가 근현대라는 시대가 빚어낸 소산물이라면 가요 연구의 지평 확대와 근현대사 연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역사 전공자에 의한 가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일제의 식민 지배와 전시체제

1. 대중가요의 등장과 방랑가요

1902년 12월, 121명의 조선인이 제물포 항구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근대적 의미에서 이민의 효시이다. 근현대사 최초의 해외 이주였다. 미주(美洲) 지역은, 1905년의 멕시코 이민과 1921년의 쿠바 이민이 뒤를 이었다.

만주의 경우, 조선 중기 이래 조금씩 월경민(越境民)이 늘어나기 시작해 1860년 대에 들어와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일본 쪽을 살펴보면, 개항과 동시에 교류가 시작되면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다. 이들과 그 후손이 이주와 이산을 노래하는 주체이자 화자(話者)가 되는 것이다.

대중가요가 나오기 이전인 이 시기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주 지역 동포들이 조국으로 들어가 항일운동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부른 「귀국가」⁷⁾와 안창호가 신민회(新民會) 사건 이후 미국으로 떠나면서 지었다는 「거국가」⁸⁾가 그것이다. 망국 이전의 일이다. 시기와 지역, 그리고 단순한 망향과 이향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는 널리 불리지는 않은 듯하다.⁹⁾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식민 지배체제 초기인

7) 『신한민보』 1909. 4. 14.

8) 『대한매일신보』 1910. 5. 12.

9) 「귀국가」는 실제 불렸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종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일제 강점기 거리의 노래사-』 (해안, 서울, 1998), 245쪽.

1923년에 최초의 번안가요 「탕자자탄가(蕩子自嘆歌)」(미상, 잉갈스, 박채선·이류색, 1920)¹⁰⁾가, 1926년에는 윤심덕이 일본에서 취입한 「사의 찬미」(미상, 이바노비치, 윤심덕, 1926)가 나왔다. 「사의 찬미」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유행가이지만, 유행가가 본격적으로 유행·보급되는 시기는 1930년대의 일이다. 레코드 회사의 등장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1930년대 초에 들어오면 일본 레코드 회사의 영업소가 속속 조선으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일본 축음기상회·빅타·콜럼비아·시에론 레코드사는 앞을 다투어 조선에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섰다. 또한 이철(李哲)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레코드사인 오케 레코드사를 설립했다.¹¹⁾ 음반 시대와 함께 가요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들 레코드사에 의해 조선에도 본격적인 유행가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며 신세를 한탄하는 비탄조의 노래가 유행했다. 「방랑가」(이규송, 강윤석 편곡, 강석연, 1931)가 효시이며, 「황성옛터」(왕평, 전수린, 이애리수, 1932)와 「타향살이」(김능인, 손목인, 고복수, 1934)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방랑가요 혹은 유랑가요라고 부른다.¹²⁾ 넓은 의미에서 망향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망향가와 구별해야 하는 노래들이다.

이주와 이산이 의미를 지니려면 개인적 체험에서 벗어나 집단 이주와 이산을 전제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띤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초창기의 방랑가요는 넓은 의미에서 망향을 노래하고 있지만 개인적 한(恨)의 표출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다. 노래 속의 이주나 이산의 공간도

10)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의 본래 제목이다.

11)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1』, 181-189쪽.

12) 방랑가요가 다수 등장한 배경을 망국(1910)과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한 미곡수탈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사업의 영향으로 조선의 농민은 토지로부터 유리되었으며, 소작인이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대도시와 만주 등지로 떠났다. 소작쟁의가 빈발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명확하지 않다. 이산의 아픔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유행가가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랑가요 속의 관념적인 방랑 공간¹³⁾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나 간도 등지로 구체성을 띠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망향가의 등장은 15년 전쟁¹⁴⁾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도 전시체제로 접어들었다.

2. 만주에서 부르는 망향가

1931년에 단행된 일제의 만주 침략 결과로 이듬해에 꼭두각시 만주국(滿洲國)이 들어섰다. 신생국가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일제의 이민 정책이 실시되었고, 조선인의 만주 이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¹⁵⁾ 이민의 증가와 함께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망향가가 대거 만들어졌다.¹⁶⁾ 망향가의 유행은 시기상으로 만주국의 수립과 궤적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오대강 타령

2. 동쪽은 두만강 간도살이 가는 곳

고향을 떠나갈 때 눈물은 핏빛

(김능인, 문호월, 이난영, 1934)

13) 심지어 「방랑가」는 오로라가 보이는 북극, 「사막의 한」(김능인, 손목인, 고복수, 1935)은 사막을 방랑의 공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4) 1931년의 만주사변에서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1945년 항복(일본의 표현으로는 종전) 시점까지 이어진 전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15) 만주 지역의 한인인구는 1910년에 20여 만 명, 1930년에는 60여 만 명으로 늘어났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만주 개발을 위한 이주 정책에 따라 만주로 간 이주민 수효는 더욱 증가해 1939년에 100만 명을 헤아렸으며, 광복 직전인 1945년에는 170만 명이 넘는 한인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기훈, 「조선인은 왜 만주로 갔을까」,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고구려연구재단, 2005), 188쪽.

16) 한석정은 만주를 소재로 한 유행가의 숫자를 조선에서 110곡, 일본의 경우는 400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석정, 「만주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고구려연구재단, 2005), 174쪽.

만주로의 이주를 다룬 최초의 대중가요는 유행가가 아니라 신민요¹⁷⁾ 「오대강 타령」이다. ‘살이’란 무엇에 종사하거나 기거해 살아감을 나타낼 때 쓰는 의존명사이다.¹⁸⁾ 유행가 「타향살이」도 있지만 ‘시집살이’, ‘처가살이’, ‘머슴살이’, ‘셋방살이’, ‘피난살이’에서 보듯 어느 것 하나 편하고 여유로운 삶은 아니다. 서민의 삶이다. 핏빛 눈물로 두만강을 건너가는 조선 농민의 앞길에 간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간도살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조선에서 만주로 가는 이민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수탈의 상징인 열차에 의존해야만 했다. 「우리는 만주선」(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38)에서 열차에 몸을 실은 화자는,

고향에서 못 살 바엔 타향이 좋다
찾아가는 그 세상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모른다 모른다.

고 절규하듯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다.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만주로 가는 길은 이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길이였다.

뒤져본 사진첩

2. 이것은 누구더라 이것은 누구더라
옳지 옳지 알았다 바로 그 여자로군
스무 살 적 처음 만난 잊지 못할 고이비토¹⁹⁾
회사원 처음 되어 월급 타던 토요일
백화점 식당에서 생긱 웃던 아가씨
부끄러워 말 못 하고 우물쭈물 하던 아가씨
저 멀리 북간도로 울며울며 갔다지
(강해인, 김해송, 김정구, 1939)

17) 신민요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존의 민요와 달리 민요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지만 작사가와 작곡자 및 이를 노래한 가수가 알려진 민요를 가리킨다. 김세레나가 부른 일련의 노래들이 대표적이다.

1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살이」 항목.

19) 고이비토(こいびと)란 일본어로 연인이라는 뜻이다.

어느 한가한 시간에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며문다. 사진 속에서 첫사랑의 젊은 여인이 방긋 웃고 있다. 당시로서는 최고 멋쟁이들의 데이트 코스였던 백화점²⁰⁾ 식당에서 식사하던 추억을 떠올리던 나의 마음은 우울해진다. 울면서 북간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팍팍한 삶이 기다리는 북간도로 가야만 했던 여인의 심정을 생각하니 다시 한 번 가슴이 막막해진다.²¹⁾

찔레꽃

1.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림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 주던 못 잊을 동무야

2.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세 동무

천리 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삼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던 즐거운 시절아

3.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피꼬리는 중천에 떠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김영일, 김교성, 백난아, 1942)

「찔레꽃」은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인 대상의 가요 프로그램 ‘가요무대’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반야월, 김교성,

20) 1906년에 미스고시(三越), 21년에 조지야(丁字屋), 22년에 미나카이(三井), 26년에 히라다(平田) 백화점이 각각 충무로에 세워져 조선 중소상인들의 자본을 잠식해 나갔다. 1937년에는 박흥식이 화신 백화점을 열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으로 종로의 명물이 되었다.

21) 「뒤져 본 사진첩」은 만요(漫謠)이다. 만요란 해학과 풍자로 현실을 꼬집는 노래이다. 유행가보다 만요가 오히려 시대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학과 풍자’라는 표현 방식 때문에 총독부 당국의 사전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았을까.

박재홍, 1950)와 함께 가장 많이 전파를 탄 노래이다.²²⁾ 1942년에 발표되었지만 만주 지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끊어진 해방 직후에 크게 유행했으며, 작곡가가 월북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때 금지곡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가사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렸던 노래이기도 하다.²³⁾ 「쫄레꽃」은 김정일(金正日)의 애창곡 중의 하나라고 한다.²⁴⁾

3절이 없으면 단순한 망향가로 오인하기 쉬운 노래이다. 노랫말 속에서 ‘남쪽 나라 초가삼간’과 ‘천리 객창 복두성’은 선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초가삼간을 떠올리는 순간, 그리움은 풍경으로 치환(置換)되면서 떠 나온 고향과 동무들과 놀던 시절이 모두 그리워 3년 전에 찍은 사진을 꺼내어 하염없이 바라본다. 따뜻한 바람 부는 봄이 돌아와 쫄레꽃이 다시 피어난 북간도에 피꼬리가 중천에서 지저귀고 범나비가 춤을 추어도 고향은 더욱 그림다.

기회와 약속의 땅, 만주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현실은 힘들기만 했다.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왕도낙토(王道樂土)라고 떠들어댄 총독부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던가?²⁵⁾ 두고 온 고향을 떠올리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는 수 없이 망향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래었던 것이다.

3. 관부연락선에 얽힌 비애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병합 직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간도로 대표되는 만주뿐만 아니라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 일본 땅에는 1940년에 124만 1천 명, 해방 직전에는 200만 명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22) 『영남일보』 2007. 12. 27.

23) 쫄레꽃의 색깔은 보통 흰색이지만 노래에 나오는 쫄레꽃은 장미과에 속하는 덩굴장미를 가리킨다. 덩굴장미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6~7월에 주로 붉은 꽃이 피고 줄기·잎자루·주맥에 가시가 돋는다.

24) 『아시아경제』 2011, 12. 21.

25) 만주국의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못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2등 국(공)민이었다. 윤휘탁, 「만주국의 2등국(공)민 : 그 실상과 허상」 (『歷史學報』 169집, 2001).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거주하고 있었다.²⁶⁾ 숫자상으로 보아 만주의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나 만주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의 무대가 되기 어려웠다. 이른바 천황이 거주하는 대일본제국의 심장부이자 내지(內地)와 반도(半島),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 등으로 항일 운동이 크게 제약 받았던 상황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이주와 이산 상황을 알려주는 노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아 짙는 색시의 노래」(김수경, 홍난파, 최명숙/이경숙/서금영, 1931)는 북해도(北海道) 탄광에 일하러 간 남편의 금의환향을 기원하는 신민요이다.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 전시체제로 접어들어 징용령이 공포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보다 아래의 유행가들을 주목해 보자.

연락선은 떠난다

연락선 고동소리 울어울어 주는데
잘 가소 잘 있소 이별 슬픈 밤 부두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울지를 말아요
(박영호, 김송규, 장세정, 1937)

눈물의 금강환

2. 천만층 물굽이에 운명을 띄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닐 몸이라
가기는 간다만은 가기는 간다만은
꿈은 차마 두고 간다
(박영호, 전기현, 박향림, 1938)

여기에서 연락선은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금강환(金剛丸)은

26) 總理府統計局, 『國勢調査』 1940년 판 및 후생성 원호국, 『원호 50년사』.

연락선의 이름을 가리킨다. 관부연락선은 한국의 부산(釜山)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 사이를 항해하던 정기연락선이었다. 일본 철도성 소속으로 1905년에 처녀 취항해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동시에 운항을 멈추었다.

‘관부연락선’이라는 말 속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한과 피눈물이 흥건히 배어있다. 토지를 빼앗기고 절박한 생존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간 무수한 한국인의 상처와 슬픔이 관부연락선에 깃들여 있었다. 그 당시 조선인 선객은 '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를 가진 사람만 연락선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도 좋다는 서류였다.

관부연락선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떠난 한국인들은 구주탄광, 북해도탄광, 군함도 등지에서 민족차별과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았다. 심지어 학살까지 당했다. 1923년에 일어났던 관동대지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인 학살사건의 희생양이 되기에 이르렀다. 관부연락선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한반도 강점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축소판이었다.

「연락선은 떠난다」의 가사를 겉으로 보면 연인과의 평범한 이별 장면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별과 눈물의 의미가 범상치 않다. 식민지의 고통과 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²⁷⁾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산 설고 물 설은 일본 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다.²⁸⁾

4. 징병과 징용

일제는 1910~20년대에 농토와 토지를 빼앗는 물적 수탈로 조선인들을 대거 만주로 내몰았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 수탈까지 자행하기에

27) 징용에 강제동원된 우리 동포들은 「연락선은 떠난다」의 구슬픈 곡조에다 ‘연락선은 지옥선’이라고 가사를 바꾸어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28) 「울며 헤진 부산항」,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40)도 관부연락선에 얽힌 비애를 노래한 유행가이다.

이른다.²⁹⁾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지원병, 징용, 징병,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일제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극한의 삶을 견뎌야만 했다. 장소는 중국, 일본, 동남아, 남태평양, 사할린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중가요의 공간적 범위는 이들 지역으로 확대되었다.³⁰⁾

이 시기에 이산을 다룬 노래로는 북해도에 징용 간 동포들이 불렀다는 「뺨아도 아리랑」이 있었다.³¹⁾ 「아리랑」을 개사한 이른바 ‘노가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상세한 가사가 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징병과 징용, 그리고 학도병과 일본군 위안부의 현장이었던 중국과 남태평양 전선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고향과 고국은 무엇보다도 그리운 대상이었다. 이들이 자유로이 망향가를 만들어 부르고 퍼뜨리기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남쪽의 달밤」(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42)³²⁾처럼 군국주의 일본의 전시 시책에 맹종한 무수한 친일가요가 그러했다. 우리 가요사에 친일가요와 군국가요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노래한 조선인들의 정서는 더 이상 지원병, 징병, 학도병, 징용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해방 이후에 표출되었다.

고향만리

29)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2월에 육군특별지원령을 공포했다. 39년 10월에는 국민징용령 실시, 43년 3월에는 징병제 공포, 그해 10월에는 학병제 실시, 44년 8월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해 차례차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 징용의 경우,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45만 명이 동원되었다.

30) 태평양전쟁 초기에 전선이 남태평양까지 이동하면서 대중가요의 공간적 무대도 확대되었다.

31) 이중연, 『앞의 책』, 435쪽.

32) 2절의 가사 일부를 소개한다. “남쪽의 항구 쌍돛대 화륜선 위에/고향을 찾아 가는 내 마음이 흐른다/어머니 불러보는 어머니 불러보는 진중의 달밤”.

1.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얼굴
눈에 익은 너의 모습 꿈속에 보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바다가 저편에
고향 산천 가는 길이 고향 산천 가는 길이 절로 보인다
2. 보르네오 깊은 밤에 우는 저 새는
이역 땅에 홀로 남은 외로운 몸을
알아주어 우는 거냐 몰라서 우는 거냐
기다리는 가슴 속에 기다리는 가슴 속에 고통이 운다
(유호, 박시춘, 현인, 1949)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제도의 중앙에 있는 보르네오(Borneo) 섬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한다. 고온 다습하며 대부분이 밀림으로 덮여 있는데, 금·은·석유·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일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보르네오 등 남태평양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³³⁾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인력이 모자라자 조선인을 강제 징용·징병으로 내몰았다. 조선인들은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의 온갖 명목으로 인력 공출을 당하면서 중국대륙 오지와 이름조차 생소한 남양(南洋)의 섬 등, 요컨대 일본군이 진주(進駐)·점령한 거의 모든 지역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열대·아열대의 찌는 듯한 태양 아래 혹독한 노동과 성적 수탈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다.

「고향만리」는 그 자신 징용을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현인(玄仁)이 해방이 되자 상해(上海)에서 귀국한 후 부른 노래이다. 일제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밤하늘에 빛나는 남십자성을 바라보거나, 새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있다.

33) 일본군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보르네오 함락에 나서 이듬해 4월에 점령했으며, 연합군의 탈환전은 1945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그러나 이 노래에는 보르네오를 비롯한 남태평양에서 조선인들이 겪었던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운 인간 이하의 고통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고 있다. 어느 망향가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쉽다. 「고향만리」가 해방 몇 년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온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Ⅲ.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1. 해방과 귀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다. 살길을 찾아, 조선 독립을 위해, 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타지로 이주해 이산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던 동포들은 하나둘씩 귀국길에 올랐다. 일제 패망 당시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조선인 중 일본에서 140만 명, 만주에서 100만 명, 중국에서 10만 명, 동남아 등지에서 10만 명 정도로 모두 300만 명을 헤아렸다.³⁴⁾

귀국선

1.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2.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 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크다

34) 송찬섭·김남윤·윤대원 공저,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431쪽.

(손로원, 이재호, 이인권, 1946)

이들은 꿈에서도 그리던 고국을 향해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귀국선」은 바로 작사가와 작곡가가 부산(釜山) 부두에서 귀환동포가 물밀듯 밀려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만든 노래이다.³⁵⁾ 「귀국선」을 일관하고 있는 정조는 ‘감격과 희망’이다. 해방을 맞이한 벅찬 감격과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부푼 희망이 전편에 넘쳐나고 있다. 무궁화, 태극 깃발, 건설 등의 단어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감격과 희망은 잠시 뿐, 현실은 노랫말과 너무나 달랐다. 고국산천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에 찬 새나라 건설이 아니라 실업과 기아의 괴로움이었다. 그들이 바라던 새나라는 강대국에 의해 허리가 잘렸다. 삼팔선이 들어선 것이다. 민족 분단이 시작되었다.

2. 남북 분단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한 이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태어났다. 미국이 미·소 사이의 한반도 육상작전과 일본의 항복 접수를 위해 구상한 경계선이 삼팔선이다. 소련도 미국의 제안을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전쟁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내재된 미·소의 국제정치적 흥정과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이다. 6·25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으로 바뀌었지만 삼팔선은 남한과 북한을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분열·대립시키는 민족분단선의 기원이 되었다.

가거라 삼팔선

1.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35)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앞의 책』, 12쪽.

남북이 가로 막혀 원한 천리 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맨다

2. 아아 어느 때나 오시려나
아~아 눈 올 때나 오시려나
보따리 등에 메고 넘던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부풍, 박시춘, 남인수, 1948)

애당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설정한 삼팔선은 남북의 왕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고, 초기에는 통제가 느슨한 편이었다. 마침내 삼팔선은 남북의 강고한 체제 구축으로 가는 영구분단선으로 바뀌었다. 삼팔선을 경계로 나뉜 남과 북에서는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을 내세워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념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주와 분묘(墳墓)의 땅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가거라 삼팔선」은 이 무렵에 나왔다. 삼팔선 획정에 대한 원망과 목숨을 걸고 삼팔선을 넘어 온 고생담을 그리고 있다. 오래 동안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가족과 헤어져 남으로 내려 온 월남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이다. 분단 현실에 대한 원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엮여 있다.³⁶⁾ 「가거라 삼팔선」은 구전으로 전해져 북에서도 널리 불렸다고 한다.³⁷⁾

삼팔선을 넘어 남쪽 땅을 선택한 월남민들은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종교인 탄압 등 북측의 체제 안정 작업의 여파로 대량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 온 이주민들의 수효는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다.

36) 「달도 하나 해도 하나」(김건, 이부풍, 남인수, 1949)는 민족의 분단이 굳어져 가던 무렵에 나온 노래로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37)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한국가요사 1』, 61쪽.

남에서 북으로 향한 월북민들의 숫자는 제대로 된 통계마저 나와 있지 않다.³⁸⁾

삼팔선이 들어선 후, 민간에서 삼팔선 철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통일을 갈망하는 분위기와는 아랑곳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분단의 고착을 향해 가고 있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도 같은 해 8월 25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 남과 북의 분단이 완벽하게 현실화 된 것이다.

3. 전쟁

남북의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은 이 전쟁은 3년여에 걸쳐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주와 이산이 발생했다. 첫째는 북한의 남침 직후 부산과 대구 지역으로의 피난이다. 다음은 1·4 후퇴로 총칭되는 피난 사태 시기의 대거 남하였다.³⁹⁾

북한군의 기습으로 낙동강까지 밀리던 풍전등화의 첫째 시기에는 이산의 아픔을 노래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1·4 후퇴 이후 평택-삼척선까지 밀렸던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다시 탈환한 후에 비로소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선이 한반도의 중부에서 고착화되면서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때였다. 개전 직후부터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3개월 동안 남한을 통치했으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보급선이 끊어졌다. 뒤 이은 서울 수복으로 북한군은 북으로 퇴각하기에 이른다. 후퇴하는 북한군은 술한 남한 인사들을 북으로 끌고 갔다. 남북자의 발생이다.

38) 김보영, 「분단과 전쟁의 유산, 남북 이산(분단 디아스포라)의 역사」 (『歷史學報』 212집, 2011), 97~100쪽.

39)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행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82,959명에 달하는 납북자⁴⁰⁾와 그 가족의 이산을 다룬 노래에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반야월, 이재호, 이해연, 1956)가 대표한다. 전쟁 중에 딸을 잃은 작사가의 실제 체험이 담겨 있는 이 노래에는 납북당한 남편을 그리며 어린 자식을 힘들게 키우는 여인의 창자를 끊는 아픔이 배어있다.⁴¹⁾

1·4 후퇴로 임시수도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 몰려든 피난민들은 부산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어렵사리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살아갈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고 온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절로 나왔다.

함경도 사나이

1. 흥남 부두 울며 찾던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내 자식 내 아내 잃고 나만 외로이
한이 맺혀 설움에 맺혀 남한 땅에 왔건만
부산 항구 갈매기의 노래조차 슬프구나
영도다리 난간에서 누구를 찾아보나
2. 동아극장 그림 같은 피눈물 젖은 고향 꿈
내 동리 물방아도는 마을 언덕에
양떼 몰며 송아지 몰며 버들피리 붙였소
농토까지 빼앗기고 이 천리 길 배를 굶고
남포동을 헤매 도는 이 밤도 비가 온다
(손로원, 나화랑, 손인호, 1953)

필설로 나타낼 수 없는 흥남 부두의 혼란 중에 처자와 생이별하고 부산 항구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영도다리에서

40)宋政勳 編輯, 『寫眞で見る韓國戰亂三年史』(國際報道聯盟, 東京, 1953), 20쪽.

41)동요 「꽃밭에서」(어효선 요, 권길상 곡, 1952)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이의 슬픈 마음을 담아내었다.

서성이기도 해보지만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우연히 동아극장⁴²⁾ 앞을 지나가다 간판 그림을 보고 고향생각을 떠올린다. 북한의 토지개혁 정책으로 빼앗긴 농토, 그 속에서 뛰놀던 유소년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비오는 남포동의 밤거리를 헤맨다.

1950년 12월 말에 흥남 철수작전⁴³⁾이 전개되었다. 흥남 부두에서 벌어진 이별의 아픔을 다룬 유행가로는 「굳세어라 금순아」(박시춘, 박시춘, 현인, 1953)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함경도 사나이」야말로 전쟁 시기 임시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월남 피난민들의 애환과 전체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겠다.

경상도 아가씨

1. 사십 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자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2. 고향 길이 틀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
담배장사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던 정든 산천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 젖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손로현, 이재호, 박재홍, 1955)

42) 동아극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현장인 극장거리에서 한 블록 떨어진 남포동에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TV에 밀려 영화산업이 사양길을 걸을 때 문을 닫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43)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는 UN군측에 불리해졌다.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동부전선의 미군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흥남 항구에서 피난민과 함께 선박편으로 빠져나온 작전이 흥남철수작전이다. 이때 남으로 내려 온 북한 동포는 10만 명에 달했다.

「경상도 아가씨」도 월남한 피난민이 부산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담배장사⁴⁴⁾라도 하며 팍팍한 피난살이를 버티다가 40계단⁴⁵⁾ 층층대 위 판자촌⁴⁶⁾에 앉아 쉬면서 눈물을 쏟아낸다. 그 새 정(情)이 든 경상도 아가씨가 부산 항구에 정을 붙이고 고향처럼 여기며 견뎌보라고 위로하지만 두고 온 이북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호동아, 박시춘, 남인수, 1954)

지루하게 끌어온 휴전협정이 타결되면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끝이 났다. 그해 8월 15일 정부는 환도를 선포했다. 남으로 내려 온 피난민의 일부는 부산에 계속 등지를 틀었고, 휴전선 이남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서울이나 연고지를 향해 떠났다. 부산역은 환도하려는 인파로 넘쳐났다. 전쟁 초기와 1·4 후퇴

44) 여기에서 말하는 담배장사는 번듯한 점포에서 운영하는 담배 소매업이 아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소량의 양담배를 목판 위에 얹어놓고 좌판을 벌이거나, 그도 아니면 목판을 목에 걸고 거리를 오가며 행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다. 뒤에 나오는 「어린 결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양담배 소지, 판매, 흡연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45) 40계단은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동광동과 영주동으로 올라가는 통로이다. 40계단을 오르면 동광동과 영주동 산언덕에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판자촌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었다. 현재 40계단 하단에는 「경상도 아가씨」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46) 차철욱, 류지석, 손은하,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民族文化論叢』 45,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0)은 한국전쟁 시기 부산으로 남하한 피난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과 그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고찰한 글이다.

시기에 부산으로 향했던 이주의 물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 남인수가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당시의 풍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전쟁은 수많은 이주와 이산을 낳았고, 이주와 이산⁴⁷⁾의 슬픈 사연은 바로 대중가요에 반영되었다. 떠나온 북쪽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술하게 등장했다. 「꿈에 본 내 고향」(박두환, 김기태, 한정무, 1954), 「한 많은 대동강」(야인초, 한복남, 손인호, 1959), 「꿈에 본 대동강」(박대립, 전오승, 박재홍, 1955), 「평안도 사나이」(이철수, 전오승, 최갑석, 1958) 등이 대표적이다. 「꿈에 본 내 고향」은 평양(平壤) 출신의 한정무가, 「한 많은 대동강」은 평북 창성(昌城) 출신의 손인호가 노래했다. 그 자신 실향민인 가수들이 불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유행가들이다.

어린 결심

한청빌딩 골목길 전봇대 옆에
나는야 구두땀이 슈우샤인 보이
나이는 열네 살 내 고향은 황해도
피난 올 때 부모 잃은 신세이지만
구두 땀아 고향하는 학생이래요

(반야월, 이재호, 남인수, 1957)

전쟁은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의 이산을 가져왔다. 「어린 결심」은 황해도에서 월남한 14세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랫말 속의 화자는 피난 도중에 부모를 잃고 월남해 종로 한청빌딩⁴⁸⁾ 골목에서

47) 「눈물의 자장가」(강사랑, 박춘석, 백일회, 1958)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의 삶을 담고 있다.

48) 한청빌딩은 옛 화신백화점(지금의 국제청) 맞은 편 보신각 부근에 있었다. 1935년에 세워졌는데 일제 시기에는 냉면 식당으로 유명했다. 해방 직후에는 좌익문학가동맹이 입주해 있었던 까닭에 좌익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곤 했다.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까지는 사상계사가 입주해 있었다.

구두담이하면서 고향하는 어린 학생이다.⁴⁹⁾ 일견 곳곳하고 씩씩하게 보이지만 모든 월남소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⁵⁰⁾ 현실은 훨씬 비참했다. 많은 수의 소년들이 고아원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부는 걸인이나 양아치 혹은 폭력조직의 뜰마니 노릇을 하며 모진 세상의 풍파와 싸워나가야 했다.⁵¹⁾

4. 재일교포 복송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국행을 선택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중국·만주 등지에 남아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동포들도 많았다. 이들이 해외교포로 불리게 된다. 남북 분단으로 적성(敵性) 지역이 되어 버린 중국과 만주의 동포들은 왕래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그러나 일본에 남은 재일교포들은 이방인이 되어 일본 사회의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또는 귀화(歸化)의 유혹에 시달리며 생존과 싸워야 했다.

1955년 2월, 북한 외무상 남일(南日)은 6·25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교포의 귀환을 추진했다. 나아가 남일은 이들이 귀환했을 때의 생활을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대내외에 공식 천명했다. 당시의 일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했다. 재일교포 복송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건국부터 당시까지 대한민국의 재일교포 대책은 무대책이었다고

49) 2절과 3절에서는 담배장수와 신문팔이로 그리고 있다.

50) 「생일 없는 소년」 (최치수, 김성근, 김용만, 1958).

51)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가요는 현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가요야말로 사회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내고 있다는 주장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짧은 분량이라는 형식상의 제약도 있기는 하다. 일제 치하부터 권위주의 시절까지는 당국의 검열도 거쳐야 했다. 일제 치하에 탄생해 성장한 우리의 대중가요가 출발부터 체제순응적이었고 지배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영미의 주장은 음미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영미·이준희 편, 『한국가요사 2』, 292쪽.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야 대한민국 국회는 재일교포복송반대전국위원회를 구성해 거국적인 반대 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연대해 재일교포 복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했다.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 정부는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지금의 콜카타)에서 '재일교포복송에 관한 협정'에 정식 조인했다.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복송 재일교포 1진이 니가타(新潟) 항구를 출발해 함경북도 청진(淸津)을 향해 떠난 게 복송의 시작이었다. 복송선을 탄 재일교포는 출신 지역은 남한이지만 조총련(朝總聯) 계열이 대부분이었다. 협정의 만료시한인 1962년 11월 12일까지 복송된 재일교포의 수는 7만 7,288명에 달했다. 양측은 협정 연장에 합의해 재일교포 복송을 계속 추진했다.⁵²⁾

눈물의 복송선

바람도 차가운 부두 이 밤도 깊어 가는데
내일이면 떠나간다 한 많은 복송선
부모형제 타국 땅에 버리고
가슴 아픈 두 번 이별에 아~아 목이 메인다
속아서 떠나가는 떠나가는 눈물의 복송선
(박춘석. 박춘석, 문주란, 1976)

「눈물의 복송선」에서는 재일교포 복송을 북으로 떠나는 교포가 아닌 제3자가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노랫말 속의 화자가 복송 당사자라면 ‘속아서 떠나가는’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초창기 복송선에 몸을 실은 재일교포들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속과 기회의 땅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52) 그러나 복송 교포의 비참한 생활상이 알려지자 그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복송을 희망하는 재일교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송 사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복송의 상징인 복송선 만경봉호(萬景峰號) 역시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교포들은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조선에서 징용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 이주한 사람들이다. 해방이 되기까지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해방이 된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한 출신이 대부분인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은 북한에 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선전을 처음에는 굳게 믿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 2의 고향이었던 일본에서 부모형제와 다시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눈물의 북송선」 속의 ‘가슴 아픈 두 번 이별’이라는 구절의 심장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노래는 1976년에 발표되었으나, 1959년에 시작된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송 개시로부터 정권이 3번 바뀐 1976년은 재일교포들이 대거 모국 방문에 나선 해이다. 「눈물의 북송선」은 바로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일교포의 모국방문을 직접 다룬 유행가는 4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IV. 산업화와 이촌향도, 기타

1. 산업화와 이촌향도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집권 세력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은 조금씩 실적을 올려 나갔다. 한국도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곳곳에 공업단지가 들어섰으며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시작된 것이다. ‘잘 살아 보세’라고 외치면서 도시로 향하는 이주 행렬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물레방아 도는데

1. 돌담 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2. 두 손을 마주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 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정두수, 박춘석, 나훈아, 1972)

「물레방아 도는데」는 각 절의 전반부에서 고향 풍경 및 고향 사람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서울로 떠나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⁵³⁾서울에서의 힘든 삶에 시달리는, 남자로 추측되는 떠난 사람은 고향에 남은 여인에게 소식조차 전할 여유가 없다. 고향의 물레방아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도시에 왔으나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었다. 전태일(全泰壹)로 상징되는 근로자들은 청계천 피복 공장이나 구로공단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팍팍한 삶을 꾸려가야만 했다. 그들에게 서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 생각은 자연스런 현상이었고 이를 노래한 대중가요가 속속 나왔다.

고향무정

1.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53) 같은 해에 나온 「서울로 가는 길」(김민기, 양희은, 1972)는 서울로 가는 모습을 훨씬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농(離農)한다는 내용이다. 운동권에서 즐겨 불렀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
2.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 소리 멎은 지 오래일세
(무인도, 서영은, 오기택, 1966)

산업화와 궤적을 함께하면서 전개된 이촌향도의 초창기에 나온 노래이다. 산촌이든 어촌이든 떠나 온 고향, 가기 힘든 고향을 그리는 심정이 담겨 있다. 서울로 대표되는 대도시의 생활이 고달플수록 타향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고향 생각은 더해 간다. 이향민의 마음은 스산하기 짝이 없다. 「고향무정」이 발표된 1966년은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해이다. 이 무렵에 이미 고향은 무정(無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고향이 좋아

타향도 정이 들면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 하는 말이야
아아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고향, 남국인, 김상진, 1971)

아무리 무정한 서울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을 붙이고 살아보려 하지만 타향은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 타향도 정 들면 고향이라는 말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고향이 좋다고 울부짖는다.

이정표 없는 거리

이리가면 고향이요 저리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박대림, 정민섭, 김상진, 1970)

타향이 고향으로 생각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서울을 떠나 귀향하는 게 어떨까. 그렇지만 고향 사람들도 모두 서울로 떠났고 남아 있는 부모님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를 반가워 할 것 같지 않다. 이래저래 스산한 마음은 이정표조차 없는 삼거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다.

고향 아줌마

1. 술잔을 들다 말고 우는 사람아
두고 온 님 생각에 눈물 뿌리며
망향가 불러 주는 고향 아줌마
동동주 술타령에 밤이 싫구나 밤이 싫구나
2. 들어 찬 목로주점 나그네마다
넋두리 하소연에 푸념도 많아
내 고향 사투리에 고향 아줌마
나그네 인생길에 불빛만 싫다 불빛만 싫다

(김진영, 정민섭, 김상진, 1971)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에 대량 발생한 이주의 당사자들은 이처럼 방황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신산스런 도회의 삶에서 동향인(同鄉人)을 만나 향수를 달래어 보기도 했다.⁵⁴⁾ 「고향 아줌마」는 서울로 추정되는 타향의 주점에서 만난 고향 사람끼리

54) 「충청도 아줌마」 (김운하, 서영은, 오기택, 1966).

이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광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모의 고향 노래와 고향 사투리를 들어도 한때 뿐, 여전히 서울의 밤과 밤거리의 불빛이 낯설기만 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고향 역

1.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 역

이뿐이 곱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 역

2. 코스모스 반겨 주는 정든 고향 역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 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 역
(임종수, 임종수, 나훈아, 1972)

견디기 어려운 도시 생활 속에 명절이 가까워 오면 망설이게 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귀성(歸省)을 결심하고 나서도 고향 가는 길은 힘들기만 하다. 사흘 연휴에 교통 사정이 크게 나아진 지금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게 귀성 길이다. 정말이지 그 시절의 명절 귀향은 말 그대로 ‘귀성전쟁’이었다. 그래도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떠날 때 백발의 어머니가 달려와 배웅한 곳. 돌아갈 때는 여자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곳. 그곳이 바로 코스모스초차 반겨주는 나의 고향이다.

유목사회가 아닌 농경사회에서 고향 떠나기를 싫어하는 안토중천(安土重遷)⁵⁵⁾의 심정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한 오래된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망향을 노래한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예술 작품들은 아직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이 농토와

55) 『한서(漢書)』 9 「원제기(元帝紀)」 “고향을 편안히 여기고 옮기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며, 골육끼리 의지함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라는 바이다(安土重遷 黎民之性 骨肉相附 人情所願也)”.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농촌 해체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이촌향도가 이루어진 시기가 1960년대 중반~1970년대였다. 이 시기는 농업사회가 해체되면서 산업사회로 이행한 과도기였다. 이른바 압축성장(壓縮成長)의 결과,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 이주와 이산이 가져다 준 힘든 삶에 시달리던 시골 출신자들에게 극변(劇變)한 고향의 모습이 수많은 망향의 노래를 낳게 했을 것이다.

2. 제일교포 모국방문

1975년 가을, 적성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혹은 조총련계 제일교포의 모국방문을 추진해 온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또는 공산권 등 국교관계가 없는 탓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해외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인도적 차원의 일시 귀국을 허용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였다.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통치와 태평양전쟁의 산물로 일본에는 8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조총련계 동포들은 출신이 대부분 남한 지역이면서도 북한을 지상천국으로, 남한을 생지옥으로 선전하는 등 극단적인 반한(反韓)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의 허위선전이 조국의 발전상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적 차원의 고향방문을 허용, 조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마침내 1975년 9월 추석을 기해 주일 대사관과 민단(民團)의 주선으로 조총련계 동포 720여 명의 첫 모국방문이 실현되었다. 부산항과 김포공항은 이들의 가족상봉으로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들의 성공적인 모국방문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국을 망설였던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그 뒤 모국방문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⁵⁶⁾

타국에서

어제 같은 지난 일도 아득한 옛날인데
바다 건너 떠나면 타국에 내가 있네
비행기가 날 때마다 가고 싶은 내 마음
다정한 고향의 품속이
꿈속의 일만 같아 두고 온 산천
두 눈에 보이네

(정두수, 박춘석, 이미자, 1976)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수 이미자가 노래한 「타국에서」는 발표 시점으로 보아 조총련계 제일교포의 모국 방문을 소재로 한 노래이다. 노랫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어제 막 일어난 듯한 고국의 추억은 곰곰 생각해 보니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일본 땅에 건너 온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고국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고국 방향인 서쪽 하늘에서 저녁노을이 질 때마다 두고 온 고향 산천의 모습이 두 눈에 또렷이 떠오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1.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 메어 불러 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2. 가고파 목이 메어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메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56) 1975년 추석에 시작된 조총련계 동포의 귀국 행렬은 이듬해인 1976년 한식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 숫자는 겨 6개월 사이에 무려 7,000여 명을 넘어섰다.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은 지리적·정치적 여건상 제일동포로부터 시작했으나, 점차 중국거주 동포와 소련거주 동포들로 확대되어 갔다.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황선우, 황선우, 조용필, 1976)

가왕(歌王) 조용필의 데뷔곡이자 출세곡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시점(時點)과 내용으로 볼 때 「타국에서」에 이어지는 노래이다. 1절에서 화자는 타국으로 떠난 형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동백꽃이 수십 번 피었다 저도 떠난 형제는 소식조차 없다. 오륙도가 바라보이는 산언덕에서 귀향(歸港)하는 연락선에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2절에서는 화자가 이제 막 귀국한 재일교포로 바뀐다. 귀향은 현해탄의 검고 거친 물결만큼이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돌아와 낮익은 부산 거리를 거닐고 있으니 벅찬 가슴을 억누를 길 없다.

3. 해외 이민

나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백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추임새)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길옥윤, 길옥윤, 세샘 트리오, 1978)

나성(羅城)은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의 한자식 표기이다.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교민이 집중 거주하는 인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영어 한 마디 할 줄 몰라도 조금도 불편 없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이다.⁵⁷⁾

「나성에 가면」은 1978년에 발표되었다. 1902년 하와이로 가는 첫 이민자가 나온 지 70여 년이 지난 때였다.

1960년대 초 광복 후 최초로 17세대 92명의 해외이민이 브라질을 향해 떠났다.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었다. 이를 노래한 가요가 「브라질 이민선」(김문용, 나음과, 유인수, 1962)이다. 2절의 “이역만리 낯선 나라 떠나는 내 겨레야. 제2부두 떠나갈 때 아픈 마음 달래며 친척들의 눈물 …”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별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1970년 무렵에는 「김치 깎두기」(김영일, 이봉룡, 김용대, 1970)처럼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음식을 빌어 표현한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⁵⁸⁾

「나성에 가면」은 나성의 교민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망향가가 아니다. 오히려 나성으로 가는 이민자를 떠나보내며 부르는 대중가요이다. 세대가 변했다. 1970년대 후반이 지나면 고국의 입맛을 잊지 못해 LA 갈비⁵⁹⁾를 만들고, 이를 고국에 수출까지 할망정 새로운 망향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의 미주(美洲) 이민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이었다면 이 무렵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이민은 기회와 약속의 땅에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 뿐만 아니라 곡조의 분위기가 경쾌하고 밝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는 대중가요의 정조(情調)를 이처럼 바꾸어버렸다.

57) 『연방 센서스』(2007)에 따르면 2005년의 통계로 미국 124만, 캘리포니아에 40만, 나성에 20만, 오렌지 7,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학생과 불법 장기 체류자를 감안하면 60만 이상으로 추측된다.

58) 「김치 깎두기」의 화자가 있는 곳은 1절이 미국, 2절은 일본, 3절은 대만이다.

59) 「LA 갈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4. 남북 이산가족 찾기와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잔(相殘)의 참극을 겪고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던 남북 관계에도 회미하나마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남측의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와 이듬해에 나온 7□4 남북공동성명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슬픔을 다시 한 번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기에 족했다. 후자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녹 슬은 기차길」(김관현, 홍현걸, 나훈아, 1972) 같은 노래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헤어진 부모를 그리는 유행가는 1980년대 초반에 다시 한 번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1983년 여름, KBS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시작했다. 세계 방송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실황방송으로도 꼽히는 이 프로그램⁶⁰⁾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산의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잃어버린 30년」(박건호, 남국인, 설운도, 1983)이 크게 유행했으며, 영화 「남과 북」의 주제가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한운사, 박춘석, 곽순옥, 1962)가 다시 유행의 바람을 타기도 했다.⁶¹⁾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남측의 제의를 북한의 조선적십자사가 받아들였다. 이후, 남북 양측의 회담은 결렬과 재개를 거듭했다. 마침내 1985년 9월 20~23일의 3박 4일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⁶²⁾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권은 3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바뀌었다.

60) 관련 자료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1) KBS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 열기에 힘입어 이산을 주제로 하는 가요 붐이 일기도 했다. 30여 곡의 가요가 만들어졌다. 『경향신문』 1983. 8. 8.

62)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은 방문지역과 방문단 규모가 제한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직접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가족·친지들과 만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다. 분단과 전쟁이 가져온 이산의 아픔을 달래주는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였다. 「평양 아줌마」(나훈아, 나훈아, 나훈아, 1985)는 바로 당시의 감격을 읊은 노래이다.

평양 아줌마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억
잔주름에 고인 눈물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리운 고향
엮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고향 아~아
오마니 아버지 불러보는 평양 아줌마

평양 아줌마는 전쟁 중에 고향에 두고 남으로 내려 온 우리의 이웃사촌이다. 어느 맑게 갠 날 저녁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보고 있자니 고향 생각이 애타게 떠오른다. 열차를 타면 당장에 닿는, 지척(咫尺)의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러본다.⁶³⁾

V. 나오며

이제는 아무도 이주와 이산을 노래하지 않는다. 고향을 다룬 대중가요가 나온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현실세계에서는 이주와 이산 현상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주와 이산의 공간이 나라 안을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지 오래인데도 그러하다.

우리의 대중가요가 이주와 이산을 소재로 삼게 된 시초는 일제의 수탈 정책이었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물적 수탈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만주를 비롯한 국내 각지로 살길을 찾아

63) 「서울아 평양아」(김병걸, 박현진, 현철, 1985)도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떠났다. 그곳에서, 혹은 그 과정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고향을 노래했다. 물질 수탈은 인력 수탈로 이어진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강제로 조선인을 전장으로 탄광으로 내몰았다. 징병과 징용 등의 외부 요인이 작용해 이주와 이산을 노래한 망향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해방이 찾아들면서 고국을 등진 이주민과 끌려간 사람들의 귀국을 노래한 대중가요의 출현은 당연한 일이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상황은 많은 이주민을 낳았고 이주민은 이산의 슬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한 차례 외부 요인에 의한 이주와 이산이 고향 생각을 소재로 삼는 대중가요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휴전으로 전쟁이 일시 마무리되고 196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일변하기에 이른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국내 요인에 따른 이주와 이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60년대 중후반부터 시골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회 모습을 반영한 대중가요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85년에 나온 「평양 아줌마」와 「서울아 평양아」를 거의 마지막으로 실향민의 처지에서 이주와 이산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유행가는 눈에 띄이지 않는다.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쟁취 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종식을 고했다.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언제든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힘입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 북중(北中) 국경 지대에서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감격을 누리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정치·외교상의 변화가 이주와 이산을 직접적으로 다룬 망향가가 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이다. 교통의 발달은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거리를 단축시켰다. 철도를 이용하든, 자동차를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시간은 빨라졌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남짓한 시간이면 부산 항구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철 노선의 연장은 수도권 외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켰다. 마이 카 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거미줄처럼 늘어났다. 이를 이용해 승용차는 국토를 누비고 있다.

바다는 어떠한가. 웬만한 큰 섬은 육속(陸續)되었으며,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해 해저 터널을 뚫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육속되지 않은 외딴 섬일지라도 최신식 고속 페리가 경쾌하게 물살을 가르며 오간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의 내 고향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이며, 이제는 아무도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전화, 삐삐,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이 시대와 함께 발달해 가면서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화상전화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가족을 눈앞에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해졌다. 통신기기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정보의 습득은 빨라지고 있다. 눈이 부실 정도이다. 고향을 눈앞에 펼쳐지게 만든 첨단 통신기기 덕분에 이주의 체감 온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 풍속도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가요계는 더 이상 이주와 이산을 소재로 삼지 않기에 이르렀다. 상상이 현실로 바뀌면서 상상을 담는 그릇이었던 대중가요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것이다. 초창기로부터 1980년대에 걸쳐 사랑과 망향이 대중가요 주제의 두 축(軸)이었으나, 사랑은 남고 망향은 사라진 것이다. 최근의 인기곡을 살펴보면 사랑이 아닌 인생의 애환을 노래 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⁶⁴⁾ 사랑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4) 이주와 이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사나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소재로 한 노래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지 오래다. 대중가요가 사회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반증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의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황석영이 최근에 나오는 소설들을 두고 “서사는 사라지고 서정만 남았다”라고 개탄하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변화라고 하겠다.

1980년대 말, 국력 신장에 따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민, 어학연수, 조기유학 등의 명목으로 세계 곳곳으로 떠났다. 이 시간에도 국제선 여객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공항 대합실로 모여들고 있다. 이주의 공간적 거리는 훨씬 늘어났다. 대중가요 초창기인 일제 강점기와 1960~70년대까지의 이주가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것이었다면 80년대 말 이후의 이주는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신분상승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주의 사례는 증가하겠지만⁶⁵⁾ 고향과 고국은 더 이상 절박한 느낌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되돌리기 힘들다.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터진 이주나 이산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으로 인해 무수한 망향의 노래가 나왔으나, 이제 대중가요를 통해 이주와 이산의 모습을 살펴보기란 어려운 것이다.⁶⁶⁾

서강대학교, neungyong@naver.com

주제어(Key words):

대중가요(a popular song). 이주(emigration). 이산(dispersion).
망향가(a song of nostalgia)

(투고일: 2016. 04. 05, 심사일: 2016. 04. 23, 게재확정일: 2016. 05. 20)

65)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자, 라이 타이한과 코피노, 조선족과 동남아 등지 출신의 이주자 문제가 새로이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66) 이주와 이산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염원을 담은 대중가요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홀로 아리랑」(한돌, 서유석, 1990), 「라구요」(강산에, 1992), 「서울 평양 만나질」(서관석, 정의송, 김혜연, 1994), 「서울에서 평양까지」(조재형, 윤민석, 신형원, 1995), 「그날에」(정원보, 이승철, 2015) 등이 그러하다.

<국문 초록>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허 부 문

이 글은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이주(移住)와 이산(離散)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중가요 속의 망향가(望鄉歌)에 담겨있는 근·현대 어느 시기의 이주와 이산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1930년대 초에 들어오면 일본 레코드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에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섰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레코드사도 설립되었다. 조선에도 본격적인 유행가 시대가 찾아들었다. 동시에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망향가는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 결과, 이듬해에 꼭두각시 만주국이 들어섰다. 신생국가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일제의 이민 정책이 실시되었고, 살길을 찾아 만주로 떠나는 조선인 이민이 늘어났다. 이민의 증가와 함께 떠난 고향을 그리는 망향가가 대거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찔레꽃」이 대표적이다.

많은 조선인들은 강제 병합 직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징용을 통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항일 운동이 크게 제약 받았던 공간적 상황 때문에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망향가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들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빌어 이산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1910~20년대에 농토와 토지를 수탈해 조선인들을 대거 만주로 내몬 일본은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인력 수탈까지 자행하기에 이른다. 태평양전쟁 말기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제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이주와 이산의 아픔을 노래한 대중가요는 상황의 제약에 따라 나오기 힘들었다. 해방이 되어서야 당시 상황을 그린 가요가 등장한다.

일제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한 감격과 희망을 노래한 대중가요도 보인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팔선이 들어선 것이다. 삼팔선의 확정과 국토분단에 따른 양측 인민들의 비애는 「가거라 삼팔선」 등을 통해 반영되었다.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피난과 피난살이, 부모와 가장을 잃은 이산의 슬픔,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망향의 심정 등은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꾸준히 만들어졌다. 한편, 북한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와 산업시설을 복구하고자 부족한 노동력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를 들여와 충당하려고 했다. 이에 대부분이 남한 출신인 재일교포들의 많은 수가 북한행을 택했고, 그 이산의 슬픔이 대중가요로 표현되기도 했다.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내세워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이에 잘살아 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거대한 물결이 꼬리를 이었다. 농경사회는 해체되어 갔으며 온 나라가 산업화를 향해 치달았다. 산업화와 이촌향도 시기에 대중가요는 갖가지 이주의 상황과 애환을 그려내었다. 향도(向都)와 이별, 떠나온 고향의 극심한 변화, 팍팍하기 만한 대도시의 삶, 지울 수 없는 망향의 감정, 명절의 귀향 등이 그것이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조총련계 재일교포와 적성국가 거주 교포들이 1970년대 중반에 고국을 찾았다.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의 결과였다. 이 상황은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같은 명곡을 낳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기에 건국 후 최초의 이민이 브라질로 떠난 후 해외로 향하는 한국인이 늘어났다. 이를 노래한 가요들도 생겨났다.

1970년대에 들어 남북 사이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1971년 이산가족찾기 남북적십자회담, 이듬해 7·4남북공동성명 등의 정치적 양상을 노래한 대중가요가 등장했다. 1983년에는 KBS의 남북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은 분단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산의 아픔을 다룬 대중가요가 대거 만들어졌다. 1985년에는 미흡하지만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최초로 실현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도 대중가요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주와 이산을 직접 다룬 노래는 보이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분출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이끌어 내었다. 이어서 이루어진 러시아와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는 적성국가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달은 떠나온 고향과의 거리를 단축시켰다. 사실상 이주의 체감온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추세는 되돌리기 힘들다. 앞으로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나오는 일은 힘들 것이다.

<Abstract>

The Themes of Emigration and Dispersion in Korean Popular Songs: the beginnings~1980s

Heo Bu Moon

The present study shows images of the above mentioned period with an analysis of such themes as the emigration and the dispersion within Korean popular songs, especially those of nostalgia.

As Japanese gramophone record companies opened their branch offices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1930s, Korean ones were founded also. With those changes began the heyday of popular songs in Korea, of which main themes were concerned with the emigration and the dispersion of Korean people. Due to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in a series of wars, such as the Manchurian Incident,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Pacific War, appeared songs of nostalgia.

With the increase of Korean emigration into Manchuria, which was to the considerable extent forced by promoting migration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in Korea as well as those of the 'Manchukuo', a Japanese puppet state in Manchuria, came on the stage songs of nostalgia such as 'Jjil-le-kkot' (찹레꽃 White Wild Rose or *Rosa polyantha*).

As far as the Japanese mainland was concerned as a destination of Koreans' emigration, songs of nostalgia could be hardly found.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It was due to Koreans' awareness of the oppression from the part of Japan and the consequent restrictions of expression about their own negative mind and emotion toward Japan. The anguish from dispersion could be only implicitly expressed in those songs about Shimonoseki-Pusan ferry (關釜連絡船).

It was not until the National Liberation of Korea in 1945 and after that popular songs about suffering emigration and tragic dispers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ppeared. Such songs could be hardly composed before the National Liber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n open and free expression, though there had been already the Japanese seize of agrarian lands in 1910s~1920s and the consequent massive emigration of Koreans into Manchuria, and exploitations of human resources in the form of requisition, conscription, even kidnaping of girls for sexual slaves ('comfort women') during the end period of the Pacific War.

The pleasure of the long waited National Liberation was short lived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Koreans' deep sorrow at that time was expressed in popular songs such as 'Ga-Go-Ra-Sam-Pal-Son' (가거라 삼팔선 Go away The 38th Parallel North).

The South and North division led to the Korean War, the greatest tragedy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Grievances from refugees, sorrow of losing family members, homesickness over leaving one's own birthplace lasted in popular songs even after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Furthermore followed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Koreans to the North Korea, although most of their birthplaces were located in the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 which was heavily devastated during the war. Sorrows of dispersions were

expressed in the popular songs of those days also.

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in the South Korea began to be realiz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since 1961 coup. This project gave rise to the tremend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raditional peasant societie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ssive emigrations from villages to cities. Shocks from immense visual changes in birthplaces, stresses from harsh conditions of strange urban life, nostalgia that never calmed down, exciting mind of revisiting birthplaces during traditional holidays, all these consequences of domestic emigrations were described in popular songs.

In the mid-1970s there were massive homecomings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the Pro-Pyongyang Japanese Koreans and other Koreans of the hostile countries owing to special visiting project. This social atmosphere was also the precondition that brought out famous popular songs such as 'Dol -A-Wa-Yo-Bu-San-Hang-E' (돌아와요 부산항에 Come back to Pusan Port).

In 1971, the first Red Cross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held for the reunion of divided families. On July 4, 1972, the North-South Joint Statement was issued. In 1983 KBS hosts a 'Campaign to Reunite Ten Million Divided Families' telethon that attracts millions looking for their divided families. This social atmosphere was also reflected in popular songs of these days.

Since the mid-1980s, however, we can hardly find popular songs concerning emigration and dispersion. Many changes such as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s in Korea, the treaties of amity with the Soviet Union as well as China, dazzling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shortened distances between everyone's present place of residence and one's own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birthplace and also softened feeling of lonesomeness and isolation which caused from emigration. This means almost the end of popular songs about emigration and dispersion.

■ 서평 ■

『8시간 vs 6시간-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벤자민 클라인 허니컷 저, 김승진 역,
서울, 이후, 2011.

김 용 현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을 짓밟아버릴 거대 자본의 착취도 만들어내었다. 자본은 단선적인 성장과 발전만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선언하면서, 이 논리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대에 뒤쳐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질서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의 단선적인 발전 논리를 거부했던 과거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이를 현대 사회에서 다시 재현할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vs 6시간』에서 벤자민 클라인 허니컷(Benjamin Kline Hunnicutt)이 보여주는 켈로그사의 6시간 노동제는 세계화 속 자본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도 중에서도, 켈로그사의 소유주 W.K 켈로그(W.K Kellogg)와 사장 루이스 J.브라운(Lewis J. Brown)에 의해 도입된 이 6시간제 노동은 새로운 노동환경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일종의 거대 실험이었다. 비록 이 장대한 실험은 50여년이 지난 1985년에 완전히 중단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 6시간의 노동과 그에 수반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의 반응은 인식의 전환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인식이 변화해온 역사적인 궤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현대 사회의 모습이 사실은 오랜 투쟁과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불합리가 당연한 결과가 아니며, 인간의 노력에 의해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논의되는 6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파괴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다시 복구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노동자, 기업, 정부를 위시한 수많은 역사적 주체들의 의견이 50년에 달하는 긴 시간동안 6시간제 노동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환경은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에 모순적이고 복잡한 면모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의 역사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급을 희생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획득했다는 사실이다. 6시간제 노동으로 노동자가 획득한 2시간의 자기 시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의 표상이며, 현대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1930년부터 1985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이 노동자들의 2시간이 서서히 축소되고 폐지되어가는 과정은, 결국 노동을 인간 발전과 동일시하며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였던 사회적 인식이 승리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인식이야말로 노동에 대한 복종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물질적 이익을 절대선으로 삼고, 이것에 어긋나는 모든 가치들을 억제하고 파괴하며 오늘날의 노동환경을 침식시켜버린 물질중심주의의 원천이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노동에 소비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노동자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으로 묘사하는 현대 사회의 언어적인 수사들은 켈로그에서 6시간제 노동을 반대했던 자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6시간제 노동 속에서 나타난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 즉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권리가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논제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돌이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가진 담론으로 현대사회에 다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6시간제 노동의 몇 가지 역사적인 성격을 돌이켜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6시간제 노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연속성이다.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의 사상적 근간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주장한, 경제 성장의 정상상태(stationary state)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 외부에서의 인간적 진보에 있었다. 밀은 기업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그 이윤이 한계에 이르고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될 경우, 노동시간이 감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 자본주의의 호황기 속에서, 이 담론은 영속적인 경제성장의 중단과 시장관계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해방적 자본주의’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6시간제 노동은 이렇게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되어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논의되어온, ‘노동 외부의 중요성’이라는 담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수용하였던 노동자들의 담론도 마찬가지다. 허니컷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던 노동자들의 의식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의 노동 쟁의들과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실업 문제 등 노동 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만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투쟁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열망이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과 작업규율에서 벗어난 자신의 시간과 그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가치들, 즉 “비금전적인 진보”(P.92)를 획득하려 했던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6시간제 노동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문화적 가치들로 회귀하고자 했던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노동의 역사를 “단조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서사로 바꿔주는”(P.91)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6시간 노동제의 통시적인 역사성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인 담론으로서의 완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6시간제 노동은 대공황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급조되거나, 기업주인 켈로그 개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었다. 이 정책은 충분한 역사적인 합의를 갖추고 있었고, 노동에서 벗어난 진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외부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담론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6시간제 노동을 20세기 중반이라는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우연적으로 발생한 불완전한 담론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인간의 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8시간 노동제에 결국 자연스럽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6시간제 노동은 결코 그러한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담론은 과거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대안적 담론으로서 충분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을 삶의 중심에 놓는’ 8시간제 노동의 담론과 50년에 걸친 장시간의 대립을 유지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완전성에 주목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현대 경제 질서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p.102)을 부여받게 되며, 6시간제 노동도 ‘죽어버린’ 담론이 아니라 ‘잊혀졌을뿐인’ 담론으로서 현대 사회에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을 부여 받는다.

6시간제 노동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역사적 특징은, 그 안에서 발휘되었던 노동자들의 주체성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은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쟁취된 것도 아니었으며 온전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1930년대의 켈로그가 6시간제 노동을 주장한 이면에는, 작업장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의 활동과 ‘미국 정치에 보이는 사회주의적 경향’들을 민간 기업의 복지를 통한 ‘노동 바깥의 여가’의 실현을 통하여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의도를 뛰어넘어 자신이 얻어낸 시간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허니컷은 6시간제 노동 하에서 여가를 통하여 전통적인 가치를 복원해내던 이 노동자들의 모습이야말로 E.P 톰슨(E.P

Thompson)이 묘사하였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주체적인 노동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통계적인 사실로 분석한다면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2시간은 정원 가꾸기, 병조림 만들기, 아이 돌보기 등 기존 가사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동들은, 기존의 허드렛일들과 달리 노동자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6시간제 노동제가 시행되던 1932년, 미 노동부 여성국은 켈로그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시행한다. 이 인터뷰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가로 얻은 2시간을,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자, ‘~을 할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주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2시간의 여가시간에 행해졌던 노동은 공장에서의 반복적인 단순작업과도, 지겨운 가사일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 하에 행해지면서, 이들에게 자신도 무언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보람을 부여하였다.

노동뿐만이 아니었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통해,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행해왔던 놀이문화와 상호 교류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비록 경영진에 의한 여가시설의 증진이 이것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교류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허니컷은 이러한 주체성을 6시간 노동제 하에서 일했던 은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포착해낸다. 노동자들은 2시간의 여가를 활용하여 피아노를 배우거나, 새를 관찰하거나, 마을의 역사를 쓰는 활동에 매진하는 등, 주어진 업무를 무감각하게 수행할 뿐인 작업장의 노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면에서, 1985년 켈로그의 6시간제가 최종적으로 폐지 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의식인 ‘6시간제 노동의 장례식’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창작해낸 수사적 언어들을 통해 치뤄진 이 마지막 행사는,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를 통해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노동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통해 그 권리의 소멸을 애도하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6시간제가 변화시켰던 노동자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추억하고, 일만을 삶의 중심에 놓는 ‘일돼지같은’ 노동의 질서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과거의 사실을 온전히 현재에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1930년대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가 가져왔던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가 그 모습 그대로 현재에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켈로그에서 6시간제가 사라지는 50년의 역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거대 소비사회가 활성화되어가는 역사이자, 노동자들이 누렸던 전통적인 여가가 ‘시시한’ 소비사회의 대중매체들에 의해 자본 주도적인 여가로 대체되어 가는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다른 형태로 이 담론이 부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21세기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매스미디어와 소비문화의 격렬한 공세 속에서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혹은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자본 논리에서 벗어난 고유한 문화와 담론들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환경과 그를 둘러싼 사회는 계속 변화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와 삶을 되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근대 초기 영국의 방직공장에서부터 30년대 미국의 켈로그를 거쳐 21세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켈로그의 6시간제가 보여주었던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는 그 움직임을 가속시키는 기폭제의 역할로서, 다시금 현대사회에 부활하여 세계화된 자본에 대항할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nh177@naver.com

■ 서평 ■

에번 오스노스,
『야망의 시대-새로운 중국의 부,진실,믿음』

박지혜

중국 현대사에서 ‘십년동란(十年動亂)’ 혹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 문화대혁명의 여파는 중국인들의 개인의 꿈 그리고 삶을 잃게 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개인의 부의 축적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선전과 검열 앞에 무력했다.

1949년 신중국 성립이후 과도한 중공업 정책(일명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최악의 대기근이 겹치면서 중국인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공산당의 내부에서도 등소평과 유소기 등이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자는 ‘실용주의’ 노선이 등장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자신의 권력에 위기를 느끼고 홍위병들을 조직하여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파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용주의’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공격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일시에 중국 사회는 경직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은 홍위병의 통제와 해결되지 않는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광풍(狂風)은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함으로써 끝을 맺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오명처럼 중국사회와 중국인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했던 등소평(鄧小平)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과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라는 뜻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하여 1978년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급속도로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울만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더 나아가 최근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폐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국가의 전망을 9번이나 언급했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길’을 걸으며 ‘중국정신’을 지향하고 ‘중국의 힘’을 응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언급하며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에번 오스노스(Evan Osnos)는 ‘잃어버린 10년’ 이후 이룩한 중국의 경제 성장 시기를 두고 ‘야망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야망’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다. 중국인들은 이제 문화대혁명의 ‘십년동란’ 삶을 딛고 일어나 ‘야망의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인들은 이제 개인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던 자유를 조금이나마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가 확대되는 와중에도 공산당은 완전한 자유를 수용하는데는 줄곧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이 제창한 ‘중국의 꿈’은 ‘야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 ‘개인의 꿈’과 얼마만큼 공존할 수 있을까?

에번 오스노스는 현대 중국에 정통한 미국출신의 『뉴요커』지의 기자이다. 그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번 오스노스는 『뉴요커』지 중국 특파원 시절 이전에는, 「시카고트리뷴」지의 베이징 지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때 쓴 연재 기사로 2008년 동료 기자들과 함께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아시아를 주제로 탁월한 저널리즘을 발휘한 기자에게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오즈번 엘리엇 상, 젊은 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리빙스톤상, 그리고 뛰어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수여하는 미러상 등을 수상했다. 기자로서 화려한 수상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특히 중국과 아시아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오스노스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8년간 『뉴요커』 지 중국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 체류했고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급격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다. 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의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 변화하는 중국 그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였다. 그는 8년 동안 중국에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야망의시대』를 집필하였다. 『야망의시대』는 기존 서구의 중국 분석서와는 다르게 저명한 경제학자에서부터 거리의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온갖 인간 군상의 삶을 마치 그들의 일상 사진을 찍듯 논픽션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는 2014년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야망의시대』는 부·진실·믿음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부(富)’에서는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는 중국인들의 삶을 풀어내고 있다. 타이완의 유망한 군인이었으나 중국으로 전향하여 중국 최고의 경제학자로 성장한 ‘세계은행’ 전 부총재 린이푸(林毅夫)의 이야기, 시골 출신이었지만 우연히 온라인 데이트 사업을 시작하여 나스닥에 상장하기에 이른 공하이옌(龚海燕)의 이야기, 한때 중국의 ‘크레이지 잉글리쉬’ 열풍을 불러일으킨 리양의 삶을 동경하는 중국인 청년 마이클의 이야기 등, 불과 40년 전만해도 허락되지 않았던 개인의 부와 꿈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부 ‘진실’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와 이중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이 책은 야망과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힘의 충돌을 이야기 한다”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다. 중국은 중국인들에게 부와 번영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선전부’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며, 개인의 삶을 통제한다. 중국공산당의 언론통제와 검열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국 유명 여성 언론인 후수리(胡舒立),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중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劉曉波), 예술을 통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 중국공산당 체제에 도전하고 좌절하는 유명인사 이야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예번 오스노스는 서구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중국의 청년 지식인 당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당제는 중국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공산당의 한층 강화된 애국사상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중국의 부와 번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이 젊은 청년은 중국에 대한 서구민주국가의 중국에 대한 왜곡보도와 편견에 대해 분노하며 <중국이며,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애국적 동영상을 올렸다. 온라인에 공개된지 일주일 반 만에 1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중국인들의 열광을 이끌어 냈다. 중국이 부와 번영을 약속하면서 생긴 다양한 중국인들의 행보를 소개함으로써 서구민주주의자 입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려는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3부 ‘믿음’에서는 중산층 말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현재의 중국을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도 이제는 중국공산당이 만든 주어진 현실에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개인의 야망에 초점을 맞춰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며, 한편으론 개인의 도덕성 해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평범히 살아가는 중국인들도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커지고 있다. 최남단 도시의 한 시장에서 일어난 차에 치인 두 살배기 아이를 행인들이 외면했던 사건은 중국인의 도덕성 해이라는 큰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부 중국인은 중국공산당의 검열을 무릅쓰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공자’를 이용한 중국공산당의 대대적인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야망의 시대』는 앞서 언급했지만, 중국의 현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서구민주주의자 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구민주주의자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 중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중립적으로 보려는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면서도 독자에게 다양한 이해의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중국사회에서 간과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농민과 농민공이다. 중국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쩌면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농민 계층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살고 있는 ‘농민공(農民工)’ 계층을 언급하지 않고 과연 중국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 ‘야망의 시대’에서 그들도 중국공산당에게 부와 번영을 약속 받았을까? 야망을 실현했을까? 농민과 농민공에게 있어 ‘중국의 꿈’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 아쉬움이 든다.

중국정부는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강대국의 면모와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공산당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지나친 맹목적인 부의 좇음으로 인한 도덕성의 해이, 인권탄압 등 약점을 극복하지 모습들을 보면 강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이 한편으론 허세로 보이기도 한다. 공산당이 꿈꾸는 중국과 중국인 개인이 꿈꾸는 중국은 확실히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상이몽 때문일까? 우리나라와 중국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들만을 보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두려워하면서도 중국인에 대해서 종종 회화화하고 무시하기 일쑤다. 이러한 우리네 시각에 대하여 『야망의시대』를 통해서 중국공산당 권위주의와 개인의 야망이라는 충돌 속에 격동하는 중국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원대학교, aperion@naver.com

호모미그란스 휘보

I. 연구회 일정

■ 2014년 하반기 콜로키움

-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소회의실
- 발표
발표1. 조원(서울대), 몽골제국시기 色目人들의 중원 이주와 정착
발표2. 야마토 유미코(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일본시민에 의한 조선 인을 위한 추도비건립운동 :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사례로
통역 : 한혜인 (성균관대)
발표3. 김진영(서강대), 프랑스 1927년 국적법을 통해 본 인구증진 담론과 외국인 혐오다

■ 2014년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탈경계 시대의 국민국가와 이주자의 권리

- 일시: 2014년 12월 19-20일
- 장소: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강의실

개회사 (12월 19일 13:00-13:20)

사회: 신동규(창원대)

축사: 이찬규(창원대 총장)

제1부: 국민국가의 경계와 이민자 (12월 19일 13:20-18:20)

사회: 박현숙(서강대)

1. 신동규(창원대) - 국민경제부흥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 '영광의 30년'의 노동력

2. 박단(서강대) -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정의: 알제리인의 유입과 국적법의 변화

3. 문종현(한양대) - 국민국가와 집시: 19-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4. 홍용진(고려대) - 국적과 인권: 1932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인들

☞ 토론: 임승휘(선문대), 김용우(한국기술교대), 이용일(대구교대)

제2부: 이민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평등을 위한 교육모델의 탐색 (12월 20일 09:00-12:00)

사회 문경희(창원대)

1. 윤용선(한성대) - 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서양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2. 박단(서강대) - 신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3. 문종현(한양대) - 탈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4. 홍용진(고려대) - 역사 속 이주를 통한 국제교류 증진 사례 소개의 필요성과 교수법

5. 이찬행(성균관대) - 인종차별 사례 및 처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6. 오영인(성균관대) -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제3부: 이주와 통합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12월 20일 13:30-17:00)

사회: 양재혁(중앙대)

1. 이찬행(성균관대) - 192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귀화 판례에 대한 검토: 담론적 실재로서의 백인성

2. 오영인(성균관대) - 미국 이민 행정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확대와 이민자들

3. 윤용선(한성대) - 이주민 통합에 있어 문화와 경제의 의미: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

☞ 토론: 황혜성(한성대), 권은혜(한양대), 이민경(서강대)

4부 종합토론 (12월 20일 17:00-17:30)

사회: 박지현

폐회사

사회: 신동규(창원대)

폐회사: 박단(이주사학회 회장)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태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 (3) 『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 (4) □ □ (전각기호) : 논문

-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상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

(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 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Controversies

√(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 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

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

ulture,√and√S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12.

-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저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

(예2) 木畑洋一,√『帝□의타そがれ:√冷□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出版□,√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誌』,√3□√(2004).

-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Chicago√University√Press,√1951),√9.

(예2) 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Église-De√la√Raison√à√l'Être√Suprême√(Paris:√Galli-

- mard,√1988),√12-13.
-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des√Kampfes√um√Arbeitszeitverkürzung√in√Deutschland√(Köln:√S uhrkamp,√1984),√15.
-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 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Agrar ians”,√Canadian√Journal√of√Economic√and√Political√Scien ce,√18-3(1952),√287.
- (예2)Sergey√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r ançaise”,√Annales√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 se,√249(1982),√364.
-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und√Gesellschaft,√10(1984),√395-408. z
-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 동,√같은√책,√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 (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 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 ity√Press,√1980), √120.
- Ibid.
- Ibid.,√130.
-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 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 다.
-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
-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 u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 ity√Press,√1980) ,√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122.
-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 하지 않는다.
-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 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
-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 년 11월 14일)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 1장 편집위원회

- 제 1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 제 2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 제 4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 제 5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 제 6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 제 7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 제 8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0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17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